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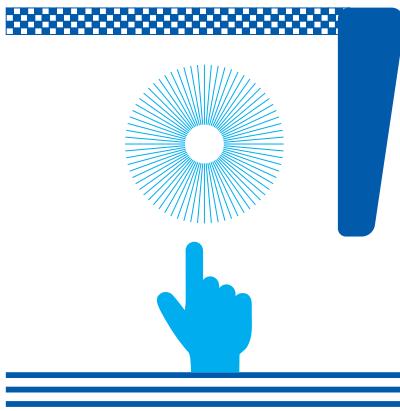
고위공직자범죄

내부 고발 안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이 범한 직권남용, 수뢰, 허위공문서 작성 및 정치자금 부정수수 등의 특정범죄를 척결하고, 공직사회의 특혜와 비리를 근절하여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임으로서, 국민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설치하였다.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

발간사

국민적 기대와 성원 속에 2021년 1월 21일 설립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올해로 출범 2년차를 맞았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반부패 수사기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면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인권친화적 수사기구’를 기관 운영의 목표로 삼아 인권 침해 방지에 유념하면서 품격있고 절제된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격한 사회 환경 변화와 기술 혁신을 등에 업고 각종 범죄는 갈수록 전문화·지능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의 힘만으로는 범죄 적발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는 특성상 조직 밖으로는 그 실체의 단면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외부 수사기관보다 범죄가 발생한 해당 조직 내부 구성원들이 범죄를 먼저 인지하거나 인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의 사전 예방, 적시 적발 및 시정은 이같은 조직 내부의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때 극대화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내부 구성원이 조직 내 고위공직자 범죄를 신고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신고 대상이 고위공직자인 만큼 범죄 신고 후



정보제공자의 신원이 드러날 경우 해당 조직으로부터 불이익이나 보복을 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우려하여 내부 구성원이 신고를 기피하게 되면 범죄는 암장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내부 정보제공자(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의 중요성을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강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고위공직자 범죄를 신고한 내부고발자의 실질적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해 2020년 7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0831호)과 2021년 11월 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수사처고시 제2021-1호)을 제정하여 시행 중입니다.

이 책자는 ‘누구나 안심하고 고위공직자 범죄를 신고’할 수 있도록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 제도의 주요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재정리한 것으로 신고자들의 방패가 되고 항상 신고자들의 지킴이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간하였습니다.

모쪼록 이 책자가 널리 읽혀 국가 투명성 제고와 공직사회 신뢰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바쁜 일과 중에도 책자를 발간해주신 담당 부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7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진욱

I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란?

.....	01
1. 조직 및 연혁	02
2. 고위공직자범죄등 신고, 부패신고, 공익신고 비교	03

II

내부고발(신고) 요령

.....	15
1. 내부고발 필요성	16
2. 고위공직자 및 가족	17
3. 고위공직자범죄등	17
4. 내부고발·내부고발자란?	23
5. 내부고발(신고) 방법	24

III

내부고발자 보호

.....	33
1. 내부고발자 보호 필요성	34
2.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	35

CONTENTS

IV

내부고발·보호 업무처리

.....	55
1. 내부고발(신고) 업무처리.....	56
2. 내부고발자 보호·보상 업무처리.....	92

V

관련 서식·법규

.....	115
1. 내부고발(신고) 관련 서식.....	117
2.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관련 기준·서식.....	133
3. 관련 법규	167

고위공직자범죄

내부 고발

안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란?

1. 조직 및 연혁 2
2. 고위공직자범죄등 신고, 부패신고, 공익신고 비교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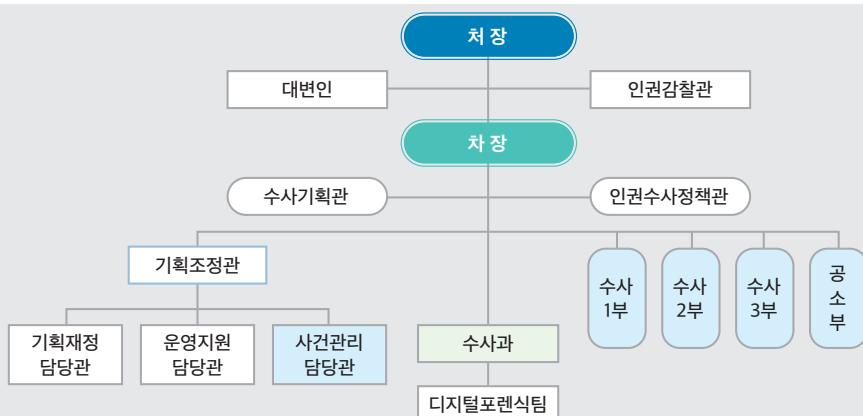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란 ?

1 조직 및 연혁

설치 목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이 범한 직권남용, 수뢰, 허위공문서 작성 및 정치자금 부정수수 등의 특정범죄를 척결하고, 공직사회의 특혜와 비리를 근절하여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국민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설치하였다.

조직



※ 설치근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21.1.1. 시행)

주요연혁

2019

12.3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회 본회의 가결

2020

01.14

공수처법 법률안 공포

02.0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준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발령

02.1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준비단' 출범

07.15

공수처법 시행

2021

01.2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2 고위공직자범죄등 신고, 부패신고, 공익신고 비교

고발(신고) 접수·처리

구분	고위공직자범죄등 신고	부패신고	공익신고
근거법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신고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수처법(제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공직자로재직 중에 본인이나 본인의 가족이 고위공직자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다음의 죄 * 「형법」 제 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파행위(법 제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해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부파행위나 부파행위의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침해행위(법 제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의 건강·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471개 법률에 따라 벌칙에 해당하거나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
신고자	• 누구든지(법 제46조)	• 누구든지(법 제55조)	• 누구든지(법 제6조)
신고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고발자에 한해 보호조치 및 지원행위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익위, 수사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보상은 권리위 신고 건에 한함 • 피신고자 소속 공공기관 및 감독기관 • 감사원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리위, 수사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급 기관에 한 신고건도 보상 대상임(단, 내부 신고만 보상 가능) • 소관 행정·감독기관, 관련 공공단체 - •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 발생 기관·기업의 대표자·사용자
신고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명, 서면신고 원칙 (대통령령 제2조제1항) • 구술신고 예외 인정 (훈령 제3조제2항) •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가능 (대통령령 제2조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명, 서면 신고(법 제58조) - •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가능(권익위에 신고할 때 한정, 법 제58조의2, '22.7.5.부터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명, 서면 신고 원칙(법 제8조) • 구술신고 예외 인정(법 제8조) - •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가능(권익위에 신고할 때 한정, 법 제8조의2)
신고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첩, 송부, 종결 • 공소제기 • 공소제기 요구 • 불기소 • 기소중지·참고인증지 • 재정신청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법 제2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첩, 송부, 종결 • 고발 및 재정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혐의대상자가 고위공직자로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 신고자의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법 제60조④) - • 재조사·재수사 요구(30일) (법 제60조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첩, 송부, 종결 - • 신고자의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법 제9조⑦) - • 재조사·재수사 요구(60일) (법 제9조⑧) • 공익침해행위 확산방지를 위한 의견 제시(법 제9조⑥)

신고자 보호 제도

[비밀보장]

구분	고위공직자범죄등 신고	부패신고	공익신고
대상	• 내부고발자 및 협조자	• 신고자 및 협조자	• 신고자 및 협조자(공익신고자 등)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내부고발자의 인적사항이나 내부고발자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해서는 안 됨 (법 제46조제1항, 제2항, 대통령령 제5조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구든지 신고자, 협조자의 인적사항이나 그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을 신고자, 협조자 등의 없이 알려주거나 공개·보도해서는 안 됨 (법 제64조① : 신고자의 비밀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협조자의 인적사항이나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을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알려주거나 공개·보도해서는 안 됨 (법 제12조① : 공익 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의무)
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고발자의 인적사항이나 내부고발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한 공무원의 징계권자에게 해당사실 통보 가능(대통령령 제5조제3항) * 공수처에 신고한 경우라도 신고내용에 부파행위나 공익침해행위가 포함된 경우 「부패방지권익위원회」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처벌대상이 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익위가징계권자에게 징계요구 가능(법 제64조④ : 신고자의 비밀보장) • 형사처벌(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88조 : 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익위가징계권자에게 징계요구 가능(법 제12조④ :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 형사처벌(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30조①)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고발 관련 협조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은 내부고발 공무원과 같은 보호 및 지원 가능 (공수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 공수처고시 제2021-1호, 제42조) 		

[신변보호]

구분	고위공직자범죄등 신고	부패신고	공익신고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고자 및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고자 및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좌동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부고발자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내부고발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으로 또는 내부고발자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청에 따라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 가능 (대통령령 제6조 : 신변안전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권익위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면 권익위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 (법 제 64조의2 : 신변보호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좌동 (법 제13조 : 신변보호조치)

[책임감면]

구분	고위공직자범죄등 신고	부패신고	공익신고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고자 및 협조자 (대통령령 제12조 : 관련 협조자의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고자 및 협조자 (법 제66조 : 책임의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좌동 (법 제14조 : 책임의 감면 등)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부고발 관련 내부고발자의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행정기관이 내부고발자에게 징계 또는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 내부고발자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그 징계나 행정처분에 대해 의견 제시 가능 (대통령령 제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형 감면 가능(법 제66조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형 감면 가능(법 제14조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처분권자가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 감면 가능(법 제66조②) * 행정처분은 '22.7.5.부터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처분권자가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 감면 가능(법 제14조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징계 또는 불리한 행정처분에 대해 권익위가 처분권자에게 책임감면 요구 가능(법 제66조③) * '22.7.5.부터 시행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징계 또는 불리한 행정처분에 대해 권익위가 처분권자에게 책임감면 요구 가능(법 제14조③)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 배제 (법 제66조④)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 배제 (법 제14조④)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익신고 등을 금지·제한하는 단체협약·고용계약·공급계약 무효 (법 제14조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고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 불가 (법 제14조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권익위는 신고자·협조자의 범죄행위에 관한 형사소송,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 관련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법원에 의견제출 가능 (법 제66조⑤) * '22.7.5.부터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등의 범죄행위에 관한 형사소송,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 관련 행정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하여 법원에 의견제출 가능(법 제14조⑧)

[신분보장(불이익조치 금지)]

구분	고위공직자범죄등 신고	부패신고	공익신고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고자 및 협조자 (법 제46조 : 정보제공자의 보호) 의견제시(대통령령 제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고자 및 협조자 (법 제62조 :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고자 및 협조자 (공익신고자등) (법 제15조 :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누구든지 고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한 정보를 수사처에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받지 아니함(법 제46조①) 내부고발자에게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보호조치 및 지원행위 가능 (법 제46조②) <p>* 현행 「공수처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적용대상은 아니나, 신고내용에 부패행위나 공익침해행위가 포함된 경우에는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분상 불이익조치 부당한 인사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임금 등의 차별지급,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명단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 행위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결과 공개 행정적·경제적 불이익 (법 제2조제7호 :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좌동 (법 제2조제6조 : 정의)
제재	<p>* 공수처에 신고한 경우라도 신고내용에 부패행위나 공익침해행위가 포함된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처벌대상이 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파면, 해임 등 신분상 불이익조치 : 형사처벌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90조 ①제1호) 인사상 불이익조치 : 형사 처벌(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90조②제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금등의 차별지급,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조치 :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90조②제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 밖의 불이익조치 :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90조②제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적·경제적불이익 조치에 대해서는 제재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파면, 해임 등 신분상 불이익조치 :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30조 ②제1호) 인사상 불이익조치 :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30조③제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금등의 차별지급,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조치 :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30조③제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 밖의 불이익조치 :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30조③제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적·경제적불이익 조치에 대해서는 제재 없음
불이익 추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고자가 신고한 뒤 위원회에 신분보장등 조치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 제63조 : 불이익 추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익신고자들을 알아내려고 하거나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 공익신고등의 취소를 강요한 경우 공익신고등이 있은 후 2년 이내에 공익신고자 등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권익위가 불이익 조치를 하려는 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하지 말 것을 권고 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권익위에 보호조치 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 소를 제기한 경우 (법 제23조 : 불이익조치 추정)

[신분보장(보호조치)]

구분	고위공직자범죄등 신고	부패신고	공익신고
내용	• 신고자 및 협조자 (법 제46조 : 정보제공자의 보호)	• 신분보장 등의 조치 결정 (법 제62조3① : 신분보장 등의 조치 결정 등)	• 보호조치 결정 (법 제20조① : 보호조치 결정 등)
	• 내부고발자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조치 및 지원행위 가능 (법 제46조②) * 현행 「공수처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적용대상은 아니나, 신고내용에 부패행위나 공익침해행위가 포함된 경우에는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 가능	- 원상회복 조치 -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된 보수 등 지급 불이익조치에 대한 취소 또는 금지 - 전보, 그 밖에 필요한 조치	- 원상회복 조치 -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된 보수 등 지급 - 그 밖에 불이익조치에 대한 취소 또는 금지
		• 신분보장등 조치 권고 - 인·허가 및 계약 등의 잠정적 효력 유지 등 (행정적·경제적 불이익 조치 대상) (법 제62조3② : 신분보장 등의 조치 결정 등)	• 보호조치 권리 - 좌동 (법 제20조② : 보호조치 결정 등)
		•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 정지 요구 (법 62조의5 :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 신분보장조치 신청 전 권익위원장 직권으로 불이익 처분 절차를 잠정적으로 45일이내 정지시키는 제도	• 특별보호조치 결정 (법 제20조의2 : 특별보호조치) ※ 내부 공익신고자에 한하여 신고당시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믿을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보호 가능
제재	-	• 신분보장등 조치 결정 불이행 -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90조①제2호) - 이행강제금(법 제62조의6)	• 보호조치 결정 불이행 : -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30조②제2호) - 이행강제금(법 제21조의2)
	-	※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조치에 대한 신분보장조치등을 불이행 한 경우에는 제재 없음	※ 좌동
	-	•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요구 불이행자 -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90조③)	• 특별보호조치 결정 불이행 - 과태료(2천만원 이하) (법 제31조②) - 이행강제금(법 제21조의2)
기타	-	• 신분보장조치 신청에 대한 조사 관련 출석, 진술서·자료 제출, 사실·정보의 조회 요구 거부 : - 과태료(3천만원 이하) (법 제91조①)	• 보호조치 신청에 대한 조사사 자료제출, 출석, 진술서 제출 거부 : 과태료(3천만원 이하) (법 제31조①)
	-	-	• 보호조치 사후 점검 (법 제20조⑤)
화해 권고	-	• 권익위의 직권,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 안을 제시할 수 있음 (법 제63조의2·화해권고 등)	• 좌동(법 제24조 : 화해의 권리 등)
인사 조치의 우선적 고려	-	• 공직자인 신분보장신청인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권익위는 인사혁신처장 등 관계기관장에게 필요한 조치 요구 가능 (법 제62조의3⑤) ※ 신고자가 권익위에 전직, 전출·전입 및 파견근무 등을 요청	• 공익신고자등의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사권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법 제16조 :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 신고자등이 인사권자에게 전직, 전출·전입 및 파견근무 등을 요구

[기타]

구분	고위공직자범죄등 신고	부패신고	공익신고
신고 방해, 취소 강요 금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자등에게 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할 수 없음 (법 제62조② :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할 수 없음 (법 제15조② :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반 시 제재 : 형사처벌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90조②제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반 시 제재 : 형사처벌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30조③제2호)

신고자 보상·구조·포상금 제도

[보상금]

구분	고위공직자범죄등 신고	부패신고	공익신고
대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고자(법 제68조②) ※ 법 제55조(권익위에 신고) 및 법 제56조(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제의받은 경우 수사기관·감사원 신고)에 따른 신고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부 공익신고자(법 제26조①) ※ 각급 기관에 한 신고 건도 대상
신청 기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날부터 5년 (법 제68조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좌동(법 제26조③)
지급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수처에 신고한 경우라도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6조에 따른 신고로 볼 수 있는 경우 신고자가 권익위에 보상금 신청 가능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수입증대, 비용절감(법 제68조②) - 몰수·추징금(영 제72조①제1호) - 국세·지방세(영 제72조①제2호) - 손해배상·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영 제72조①제3호) - 계약변경에 따른 비용 절감 (영 제72조①제4호) - 벌금·과료·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와 통고 처분 (영 제72조①제5호) - 그 밖의 처분이나 판결 (영 제72조①제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대 (법 제26조①) - 몰수·추징금(법 제26조①제2호) - 국세·지방세(영 제21조제1호) - 손해배상·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판결(영 제21조제3호) - 손해배상·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영 제21조제4호) - - 벌칙·통고처분(법 제26조①제1호) - 과태료·이행강제금 (법 제26조①제3호) - 과징금(제 26조①제4호) • 부담금·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영 제21조제2호)
금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한 : 30억원(영 제77조③) 하한 : 20만원(영 제77조④)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한 : 30억원(영 제22조②) 하한: 20만원(영 제22조③)) *1인당 연간 10건으로 지급 제한
상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기관 수입회복 등으로 인한 보상금을 공공기관으로부터 상환 (법 제70조의2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자치단체 수입회복 등으로 인한 보상금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상환 (법 제29조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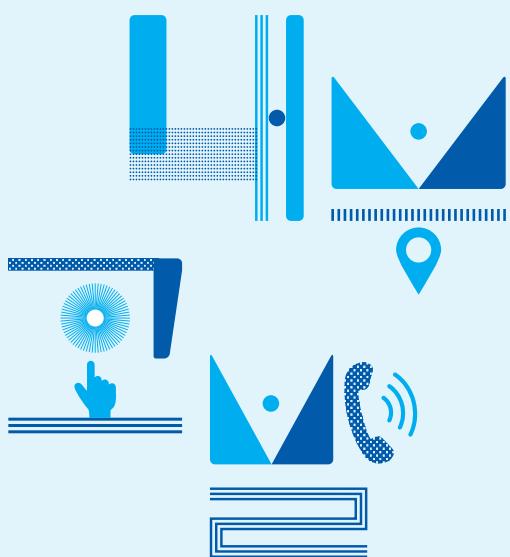
[포상금]

구분	고위공직자범죄등 신고	부패신고	공익신고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부고발자(영 제8조①), 협조자(대통령령 제1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고자(법 제68조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고자, 협조자(법 제26조의2)
지급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부고발로 인하여 기소유예·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을 받으면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포상 추천 가능(대통령령 제8조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 방지, 공익증진을 가져온 경우(법 제68조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 방지, 공익증진을 가져온 경우(법 제26조의2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소제기, 기소유예, 기소중지, 수사중지(피의자 중지로 한정)(영 제71조①제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법 제26조의2①제1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징계처분 및 시정조치(영 제71조①제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법 제26조의2①제2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령의 제·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영 제71조①제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계 법령의 제·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법 제26조의2①제3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 개선 등으로 재산상 손실 방지(영 제71조①제3호)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태료·과징금·부담금·가산금 등의 부과처분(내부공익 신고자 제외) *영 25조의2 제1호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 방지에 기여(영 제25조의2제2호)
지급 절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상심의위원회가 인정한 경우(영 제71조①제5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부고발자구조심의 위원회의 심의(대통령령 제8조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권익위 외 타기관 신고의 경우 해당 기관이 추천한 경우에만 가능(법 제68조①)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법 제6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익신고기관의 추천을 받거나 권익위 직권으로 대상자 선정(영 제25조의3③)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영 제25조의3④)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 (최고 1억원) 당해연도 예산 부족시 다음해 예산에서 지급 (공수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사무 운영지침, 공수처고시 제2021-1호, 제41조①, 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대 2억원(영 제71조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대 2억원(영 제25조의3①)

[구조금]			
구분	고위공직자범죄등 신고	부패신고	공익신고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부고발자 및 그 친족 또는 동거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고자 및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법 제68조③)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좌동(법 제27조①)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고로 인한 중대한 경제적 손실, 정신적 고통, 이사·전직 등으로 비용을 지출했거나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 지급 가능 (대통령령 제9조①) 신고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진찰·입원·투약·수술 등의 비용, 전직·파견근무·신변안전조치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내부고발 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파면·해임·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그 밖에 내부고발로 인해 발생한 중대한 경제적 손해에 대해 지급 가능 (공수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 수사처고시 제2021-1호, 제2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고로 인한 치료, 이사, 쟁송 비용, 임금 손실액 및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에 대해 지급 가능 (법 제68조③)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좌동(법 제27조①)
긴급 구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긴급 구조금 (공수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 공수처고시 제2021-1호, 제23조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이전에 긴급 구조금 지급 가능(법 제68조⑤) * '22.7.5.부터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이전에 긴급 구조금 지급 가능 (법 제27조②)

[기타]

구분	고위공직자범죄등 신고	부패신고	공익신고
대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상금, 포상금, 구조금 (법 제70조의2②) * 포상금 환수는 '22.7.5.부터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상금, 포상금, 구조금 (법 제29조①)
환수 사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긴급 구조금을 지급 받았으나 보상심의위원회가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심의·의결한 경우 지급 받은 긴급 구조금이 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지급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일한 원인으로 중복 지급받은 경우 그 밖에 잘못 지급된 경우 (법 제70조의2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좌동(법 제29조①)
손해 배상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징벌적 손해배상 -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공익신고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3배 이하 배상책임 (법 제29조의2①)



고위공직자범죄

내부 고발

안내서





내부고발(신고) 요령

1. 내부고발 필요성	16
2. 고위공직자 및 가족	17
3. 고위공직자범죄등	17
4. 내부고발·내부고발자란?	23
5. 내부고발(신고) 방법	24

IV 내부고발(신고) 요령

“공수처”는 우리사회 전반의 부패청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고위공직자 등 권력형 부패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국민적 여망 속에, 이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사정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고위공직자 범죄만을 담당하는 수사기구를 별도로 설치하게 된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등은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범죄와 고위공직자가 아닌 자가 고위공직자와 함께 고위공직자 대상범죄를 저지른 관련범죄를 말한다.

내부고발은 누구든지 할 수 있으며, 신고자 보호는 내부고발자 및 그 친족, 동거인을 대상으로 한다.

1 내부고발 필요성

최근 급격한 사회변화와 기술혁신으로 인해 각종 범죄행위도 전문화·지능화 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의 노력만으로는 이를 모두 적발 및 근절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내부에서 일어나는 내밀한 범죄행위에 대해 일반시민이 찾아내어 신고하기가 매우 어려운 만큼, 고위공직자범죄등을 먼저 알 수 있는 내부자의 신고는 이를 적발하는 데 용이할 뿐만 아니라 내부감시기능의 작동을 항상 염두에 둠으로써 사전예방과 함께 적시에 적발 및 시정이 가능하다.

특히 고위공직자범죄등은 공직사회는 물론 우리사회 전반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로서, ‘누구든지 고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하여 알게 된 때에는 이에 대한 정보를 수사처에 제공할 수 있다’고 「공수처법」 제4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국가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는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청렴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자정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공직자 스스로 고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한 내부고발 활성화로 국민생활 안정과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 고위공직자범죄등의 신고(고발) 관련 규정

- ① 「공수처법」 제46조(정보제공자의보호) 제1항에 누구든지 고위공직자범죄등과 관련한 정보를 수사처에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② 그러나, 제46조제2항에서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조치 및 지원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외부고발자에 대한 규정은 특별히 없음
 - * 신고(고발)는 누구나 가능, 보호 및 지원은 내부고발자에 한정

2 고위공직자 및 가족

[고위공직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에 재직 중인 사람 또는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
- 다만, 장성급 장교는 현역을 면한 이후에도 포함

① 대통령 ②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③ 대법원장 및 대법관 ④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⑤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 정무직공무원 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무직공무원
 ⑦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정무직공무원
 ⑧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가정보원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⑨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정무직공무원
 ⑩ 대법원장비서실,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헌법재판소사무처 정무직공무원
 ⑪ 검찰총장 ⑫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교육감
 ⑬ 판사·검사 ⑭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⑮ 장성급 장교 ⑯ 금융감독원 원장·부원장·감사
 ⑰ 감사원·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고위공직자 가족]

-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 다만, 대통령의 경우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3 고위공직자범죄등

[고위공직자 범죄]

-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 가족의 경우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죄

①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제133조(직권남용),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제126조(피의사실공표),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제128조(선거방해),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제130조(제3자뇌물제공),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제132조(알선수뢰), 제133조(뇌물공여등)
 ② 직무와 관련되는 「형법」 제141조, 제225조, 제227조, 제227조의2, 제229조(제225조, 제227조 및 제227조의2의 행사죄에 한정한다),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및 제359조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 되는 경우를 포함)
 ③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의 죄
 ④ 「변호사법」 제111조(벌칙)의 죄
 *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자

- ⑤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의 죄
- ⑥ 「국가정보원법」 제21조(정치 관여죄) 및 제22조(직권남용죄)의 죄
- ⑦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위증 등의 죄)의 죄
- ⑧ ①목부터 ⑤목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범죄수익등과 관련된 같은 법 제3조(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및 제4조(범죄수익등의 수수)의 죄

[관련범죄]

- 고위공직자가 아닌 자가 고위공직자와 함께 고위공직자 대상범죄 등을 저지른 경우

- ① 고위공직자와 「형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가 범한 고위공직자 범죄
 - * 「형법」 제30조(공동정범), 제31조(교사범), 제32조(종범)
- ②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한 자의 「형법」 제133조, 제357조제2항의 죄
 - * 「형법」 제133조(뇌물공여등), 제357조제2항(배임수증재)
- ③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형법」 제151조제1항, 제152조, 제154조부터 제156조까지의 죄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죄
 - * 「형법」 제151조제1항(범인은닉),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제154조(허위의감정, 통역, 번역),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 간의 특례), 제156조(무고)
 -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위증 등의 죄)
- ④ 고위공직자범죄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



Q & A



Q

1. 수사처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공수처법 제2조 제1호)는 누구입니까?

A

- ① 대통령 ②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③ 대법원장 및 대법관 ④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 ⑤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 정무직공무원 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무직공무원
- ⑦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정무직공무원
- ⑧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가정보원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 ⑨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정무직공무원
- ⑩ 대법원장비서실,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헌법재판소사무처 정무직공무원
- ⑪ 검찰총장 ⑫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교육감
- ⑬ 판사·검사 ⑭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⑮ 장성급 장교 ⑯ 금융감독원 원장·부원장·감사
- ⑰ 감사원·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한, 상기 중 어느 하나에 재직 중인 자, 또는 그 직에서 퇴직한 자, 장성급 장교는 현역을 면한 이후도 포함

Q

2.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범위는?

A

- “중앙행정기관”이란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부·처·청과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 각 위원회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함
- 또한, 여기서 “정무직 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제1호에 따라 ①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②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정부조직법 또는 기관설치법)이나 대통령령 직제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한 장·차관 및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Q

3. “고위공직자의 대상”에 포함되는 시장, 도지사 및 교육감의 범위는?

A

- 특별시장은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은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은 세종특별자치 시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고위공직자의 대상”에 해당되며, 그 외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시, 군, 구의 장인시장, 군수, 구청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고위공직자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도지사는 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 지사,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고위공직자의 대상”에 해당
- 교육감은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교육감을 말함





4. 고위공직자 범죄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 정의함
- 고위공직자범죄란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다음 세부사항에 해당하는 죄를 말함. 다만, 가족의 경우 고위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죄에 한정
 - * 가족이란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말함. 다만, 대통령의 경우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을 말함(공수처법 제2조제2호)



- ①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 되는 경우 포함)
 -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제123조(직권남용), 제124조 (불법체포, 불법감금),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제126조(피의사실공표),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제128조(선거방해),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제130조 (제3자뇌물제공), 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제132조(알선수뢰), 제133조(뇌물공여등)
- ② 직무와 관련되는 「형법」 제141조, 제225조, 제227조, 제227조의2, 제229조(제225조, 227조 및 제227조의2의 행사죄에 한정),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및 제359조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 되는 경우 포함)
 - 형법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제227조(허위공문서 작성등),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변작),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355조(횡령, 배임),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제357조(배임수증재), 제359조(횡령, 배임, 배임수증재의 미수)
- ③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의 죄
- ④ 「변호사법」 제111조(벌칙)의 죄
 -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자
- ⑤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의 죄
- ⑥ 「국가정보원법」 제21조(정치 관여죄) 및 제22조(직권남용죄)의 죄
- ⑦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위증 등의 죄)의 죄
- ⑧ ①부터 ⑦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범죄수익등과 관련된 같은 법 제3조 (범죄수익 등의 은닉 및 가장) 및 제4조(범죄수익등의 수수)의 죄



5. 고위공직자가 아닌 자가 고위공직자와 함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고소 및 고발 대상 여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는 “관련범죄”를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서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련범죄”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고위공직자가 아닌 자라 할지라도 고위공직자와 함께 고위공직자 대상범죄 등을 저지른 경우 고소·고발 등 가능

- ① 고위공직자와 「형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가 범한 고위공직자 범죄
 - 「형법」 제30조(공동정범), 제31조(교사범), 제32조(종범)
- ②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한 자의 「형법」 제133조, 제357조 제2항의 죄
 - 「형법」 제133조(뇌물공여등), 제357조제2항(배임수증재)
- ③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된 「형법」 제151조제1항, 제152조, 제154조부터 제156조까지의 죄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죄
 - 「형법」 제151조제1항(범인은닉),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제154조(허위의 감정, 통역, 번역),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제156조(무고)
 - 국회에서의 증언·감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위증 등의 죄)
- ④ 고위공직자범죄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

내부고발·내부고발자란?

[내부고발]

고위공직자범죄등 신고는 「공수처법」 제46조제1항에서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내부고발(신고)과 외부신고(고발)로 구분할 수 있다.

내부고발(신고)은 조직 구성원 또는 계약상대방 등 업무상, 계약상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내부(직접적 관계)에서 발생한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해 고발(신고) 하는 것으로 조직 스스로가 사전 예방적·자율 통제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 저비용·고효율의 통제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외부고발(신고)은 조직 구성원 또는 계약상대방 등 업무상, 계약상 일정한 관계에 있지 않은 자가 고위공직자 범죄등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해 고발(신고) 하는 것으로 진정한 의미의 시민의식의 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내부고발자]

“내부고발자”란 고위공직자범죄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수사처에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는 등 수사의 단서를 제공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내부고발자의 범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비실명 내부고발”이란 대통령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내부고발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로 하여금 내부고발을 대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내부고발자의 범위

- ▣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저지른 사람이 속하거나 속하였던 기관·법인·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
- ▣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저지른 사람이 속하거나 속하였던 기관·법인·단체 등과 협약·계약 등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
- ▣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저지른 사람이 속하거나 속하였던 기관·법인·단체 등의 지도 또는 관리·감독을 받는 사람으로서 내부고발로 인해 해당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불이익한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사람
- ▣ 그 밖에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저지른 사람의 기관·법인·단체 등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고위공직자 범죄등 신고로 인하여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사람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처장”)이 내부고발자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자

5 내부고발(신고) 방법

[내부고발(신고)]

- ① 고위공직자범죄등을 내부고발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내부고발 신고서와 함께 고위공직자범죄등의 증거를 첨부하여 사건관리담당관 또는 처장이 지정하는 사건관리담당관실 소속 공무원(이하 “사건관리담당관등”)에게 제출하면 된다.
단, 사건관리담당관 등을 제외한 수사처 직원(파견 및 일용직 포함)은 내부고발 신고를 직접 접수 받지 않음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부고발자가 내부고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구술(口述)로 사건관리담당관 등에게 신고가 가능(이 경우 증거 등 제출) 하다.
- ③ 내부고발자가 비실명 내부고발을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내부고발 신고서 중 내부고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은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

내부고발 신고서 기재사항

- ▶ 내부고발자의 인적사항
- ▶ 고위공직자범죄등 행위를 한 자
- ▶ 고위공직자범죄등의 내용
- ▶ 내부고발의 취지와 이유 등

내부고발의 형태

- ▶ **신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사처 등에 법률 또는 사실 관계에 대해 서면(또는 구술, 이 경우 증거 등 제출 등)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행위
- ▶ **진정**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사처 등에 사정을 진술하고 어떠한 조치를 취해 줄것을 요구하는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
- ▶ **고소** 범죄 피해자 등이 수사처 등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 **고발** 범죄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처 등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 **제보** 수서처 등에 범죄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 **수사단서 제공** 수사처 등에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하는 행위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작성]

- ① 신고자는 수사과정 등에 있어 그 신분공개에 동의여부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 ② 이 경우 법 제4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내부고발자 등이 신분공개에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내부고발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내부고발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 주거나 공개를 금지하고 있다.
- ③ 또한 접수기관에서는 내부고발의 접수·처리 등의 과정에서 내부고발자 등의 신분이 내부고발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I.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란?

II. 내부고발(신고) 요령

III. 내부고발자 보호

IV. 내부고발·보호 업무처리

V. 관련 서식·별첨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안내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 관련 조서 · 신원관리카드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서식】

내 부 고 발 신 고 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처리기간	30일
------	--	------	--	------	-----

신고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직업	

피신고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직업	

내부고발 취지 및 이유	
-----------------	--

내부고발 내용	
------------	--

증거자료 등 첨부서류	
----------------	--

위와 같이 피신고자의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고 위 공 직 자 범 죄 수 사 처 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 관련 조서 · 신원관리카드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신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내부고발	제목			
	접수일자		접수번호	
신분공개 동의여부	앞으로 귀하의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 신고사건에 대하여 수사·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동의 [] 부동의			

위 신고자 본인은 인적사항 등 신분공개 동의여부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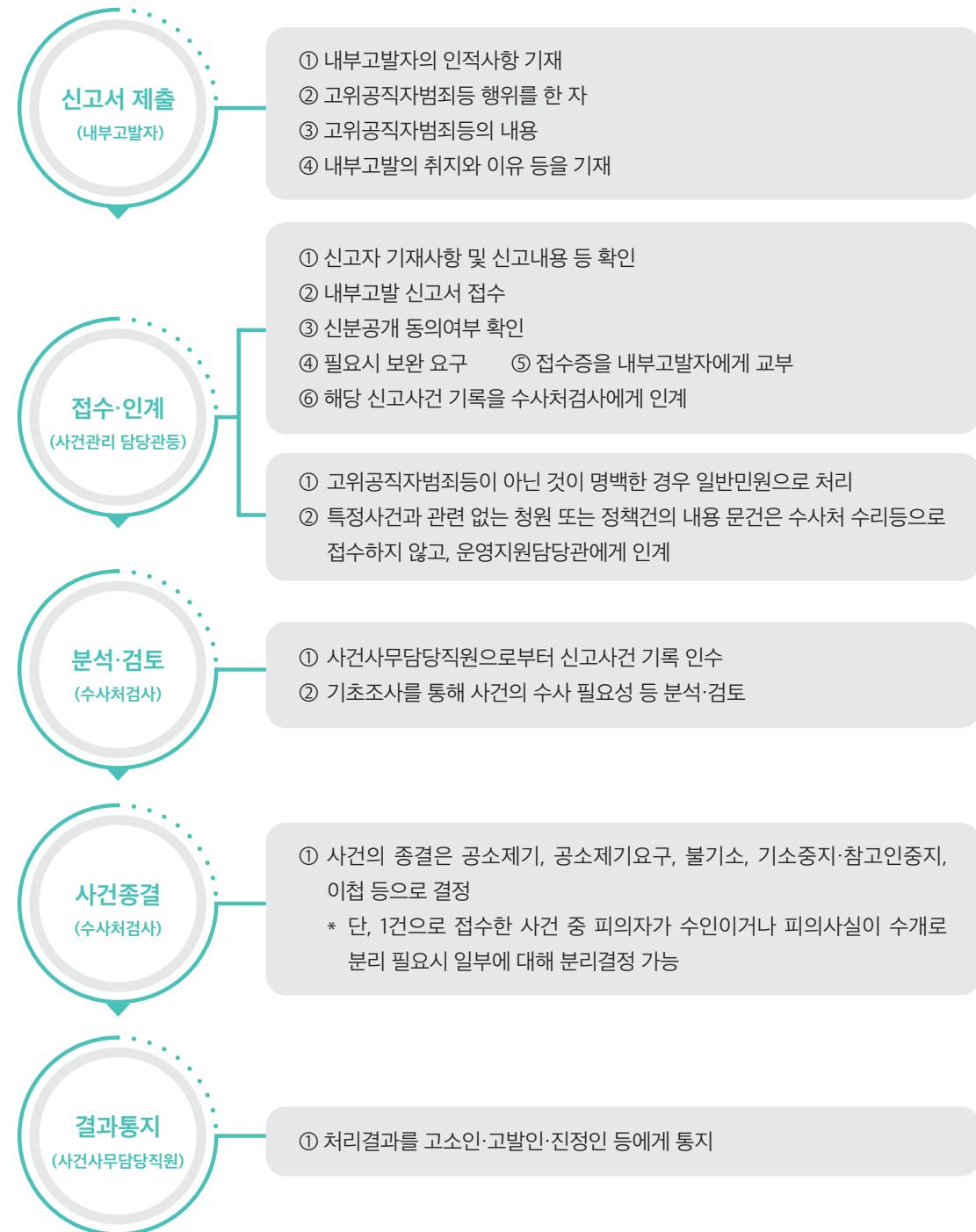
(인 또는 서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귀하

60g/m²(재활용품)]



① 내부고발 신고 접수·처리 흐름도





Q & A



1. 내부고발신고는 어떻게 하는가?



내부고발을 하려는 사람은 ①내부고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②고위공직자범죄등을 하는 자 ③고위공직자범죄등 행위의 내용 ④내부고발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신고서와 고위공직자범죄등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수사처에 제출하면 된다.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구술로도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술신고를 받은 사람은 신고서에 내부고발자가 언급한 사항을 작성하여 내부고발자에게 읽게 한 후 내부고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해야 한다.



2. 반드시 신고서 양식에 따른 내부고발 신고가 가능한가?



특정한 양식에 따른 신고서가 아니더라도 내부고발로 접수할 수 있다. 수사처 고시(지침)에서 규정한 신고서 서식에 따라 내부고발을 신고할 수 있지만, 신고서에 '①내부고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②고위공직자범죄등의 행위를 하는 자 ③고위공직자범죄등 행위의 내용 ④내부고발의 취지와 이유'가 포함되어 있다면 형식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내부고발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구술신고를 제외한 단순한 전화문의·상담은 내부고발로 인정받기 어렵다.

Q

3. 내부고발신고서를 접수하면서 신분공개 동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가?

내부고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가 신분공개 여부에 대해 동의하는지를 꼭 확인·명시해야 한다. 내부고발자등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보도하는 경우 「대통령령 제30831호」 제5조제3항 및 「공수처고시 제2021-1호」 제14조제2항에 따라 공개한 해당자의 징계권자에게 해당 위반사실을 통보할 수 있으며, 징계권자는 이에 대한 처리결과를 수사처에 통보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A

Q

4. 변호사가 대리신고를 할 수 있는가?

가능하다. 고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하여 내부고발을 하려는 자는 인적사항을 (성명·연령·주소·직업 등)을 밝혀야 한다.(「영」 제2조제1항)
다만,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부고발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로 하여금 내부고발을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영」 제2조제2항)

A

Q

5. 익명의 내부고발도 할 수 있는가?

접수할 수 없다.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는 신고자를 대상으로 신고내용의 확인 및 신고자 보호·보상조치를 하는 것으로서 기명신고를 전제로 한다. 「대통령령 제30381호」 제2조는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고위공직자범죄등의 내용 등을 명시한 신고서와 함께 관련증거 등을 첨부하여 기명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투서와 같은 무분별한 익명의 신고를 허용할 경우, 무분별한 신고로 인해 상대방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공직사회 전반에 혼란과 행정력의 낭비 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사처는 익명의 내부고발신고가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되더라도 이를 내부고발로 접수받지 않으며, 차후 익명신고로 인한 신고자의 신분공개나 불이익 조치를 받을 경우 보호받을 수 없는 만큼 기명신고 또는 변호사 대리신고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A



6. 전화로 고위공직자 범죄등을 신고 할 수 있는가?

원칙적으로 접수가 곤란하다. 「공수처고시 제2021-2호」 제3조는 내부고발과 함께 고위공직자범죄등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화로 내부고발을 하는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기 곤란할 뿐 아니라 관련증거 등을 제출하기도 어려우므로 문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문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고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관련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술신고를 받은 사람은 신고서에 내부고발자가 언급한 사항을 작성하여 신고자에게 읽게 한 후 내부고발자가 서명 또는 날인토록 해야 한다.



7. 부정한 목적의 신고는 어떠한 신고를 말하는가?

부정한 목적의 신고로는 신고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승진 등 특혜, 모함 등을 위해 신고를 이용하는 경우 등이 있다.

다만, 부정한 목적의 신고인지 여부를 신고접수 당시의 정황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명확한 금품요구 증거 등 개별 사례별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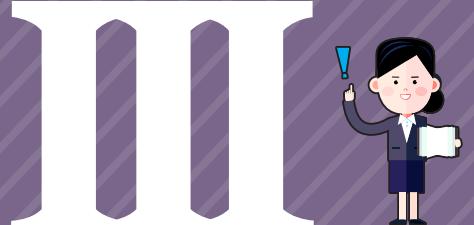


고위공직자범죄

내부 고발

안내서





내부고발자 보호

1. 내부고발자 보호 필요성 34
2.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 35

II 내부고발자 보호

고위공직자가 저지르는 권력형 범죄는 조직 내부에서 은밀하게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조직내부 문제를 접근거리에서 가장 많이 알 수 있는 구성원들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감독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적발 및 시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내부고발자를 조직의 배신자나 부적응자로 취급하는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해 내부고발자 및 그 가족 등이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이 같은 불이익과 위협을 극복하기에는 정신적·신체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1 내부고발자 보호 필요성

용기를 가진 공직(관계)자가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고발(신고)한다 해도 그에게 가해지는 여러 가지 압력 때문에 정상적인 공사생활이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내부고발의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장치가 필요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정보제공자의 보호) 제1항은 “누구든지 고위공직자 범죄등에 대해 알게 된 때에는 이에 대한 정보를 수사처에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불이익한 조치를 받지 아니한다.”, 제2항은 “내부고발자에게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보호조치 및 지원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 공익신고자보호법 적용대상 인지 여부(「공수처법」은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에 미 해당)는 검토가 필요하며, 「공익신고자보호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원회」) 등을 참고하여 권익위에 별도 보호요청 또는 경찰청 등에 협조요청 필요
- ▶ 수사기관에 부패행위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이나 「부패방지 권익위원회」에 따른 신고자 보호·보상 가능
 - (부패) 「부패방지권익위원회」 제56조에 따른 신고(공직자가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제의받은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에 해당하는 경우 권익위에서 신고자 보호·보상 가능
 - * 제56조에 따른 신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에 부패행위를 고소·고발하는 경우에는 신고자 보호 및 포상금 지급(기관이 추천하는 경우에 한정) 가능

- (공익) 신고내용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권익위에서 신고자 보호·보상 가능
- ▶ 공수처에 먼저 신고(고발)시 비밀보호와 신변안전, 포상금, 구조금은 받을 수 있으나 보상금지급 및 신분보장 규정은 따로 없음
- ▶ 공수처의 내부고발자 비밀보호규정(제5조) 위반시 징계권자에게 해당 위반事實을 통보한다고 규정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4조(신고자 비밀보장)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징계 외에도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음

2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는 비밀보호, 신변보호, 신분보호(책임감면), 포상금 및 구조금 지급 등이 있다.

내부고발자가 내부고발로 인한 비밀보호, 신변안전조치, 의견제시, 포상금 또는 구조금 등에 관해 방문, 우편, 전화, 전자문서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상담요청을 할 수 있다.

내부고발 관련 협조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업무(「대통령령」 제12조) 관련 절차는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내부고발자와 동일한 수준의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내부고발자 비밀보호

- ▶ 내부고발자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해서는 안된다.
 1. 내부고발자의 성명·연령·주소·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인적사항
 2. 내부고발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진술내용 및 증빙자료 등
 3. 신변안전조치와 관련된 사항
 4. 보상금 및 포상금 신청·지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내부고발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
- * (『고위공직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 공수처고시 제2021-1호, 제2장)

신변 안전 조치 신청

▶ 고위공직자범죄등의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는 신고자 주변에 가해지는 심리적·물리적 위험상황을 사전에 예방 및 제거하기 위한 예방적 보호수단으로서 긴급성과 신속 대응성을 주요 특징으로 한다.

신고자와 협조자, 그 친족과 동거인은 내부고발 등을 이유로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수사처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사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고위공직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 공수처고시 제2021-1호, 제3장)

[신변안전조치 신청]

① 내부고발자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내부고발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하여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안전조치”)가 필요한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의 신변안전조치 신청서에 신청인과 신변보호가 필요한 대상자의 인적사항, 신청사유, 신청내용 등을 기재하여 신청 할 수 있다.

신분보호(책임감면) 의견제시 신청

▶ 고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한 내부고발 및 내부고발에 대한 수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것과 관련하여 내부고발자 및 협조자의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행정기관이 내부고발자에게 징계 또는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 징계권자 또는 행정처분권자에게 수사처의 의견을 제시(통보) 함으로써 신고자 및 협조자 등의 신분을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첫째, 내부고발자나 협조자가 상급자의 지시 등으로 부득이하게 위법행위에 가담한 것일 수도 있고, 둘째, 내부고발로 인하여 과거에는 발견할 수 없었던 고위공직자의 범죄가 드러난 것으로 자진 신고 유도를 통해 범죄행위 적발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징계나 행정처분에 대한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 「고위공직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 공수처고시 제2021-1호, 제4장)

[의견제시 신청]

① 내부고발자의 징계 또는 불리한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제시 신청은 별지 제13호 서식의 의견제시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신변안전조치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60일		
①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및 직급	전화번호			
	주소				
② 내부고발등	접수일자	접수번호			
	고발요지				
③ 신변안전조치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관계
신변안전조치 신청내용	④ 안전조치 종류	<input type="checkbox"/> 특정시설에의 보호 <input type="checkbox"/> 신변경호 <input type="checkbox"/>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시 동행 <input type="checkbox"/>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input type="checkbox"/> 기타 신변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⑤ 신청사유				
⑥ 기타 증빙자료					
조사과정에서 신분공개 등의 여부	우리 처가 신변안전조치 신청을 조사·확인하는 과정에서 귀하의 인적사항 또는 내부고발 등 관련 정보를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동의 [] 부동의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신변보호조치를 신청하오니 조 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귀하

구비서류 및 수수료

구비서류 : 내부고발과 내부고발에 대한 수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하다는 사실을 증빙하는 자료(사실의 기재나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 한합니다)

수수료 : 없음

* 뒷쪽의 작성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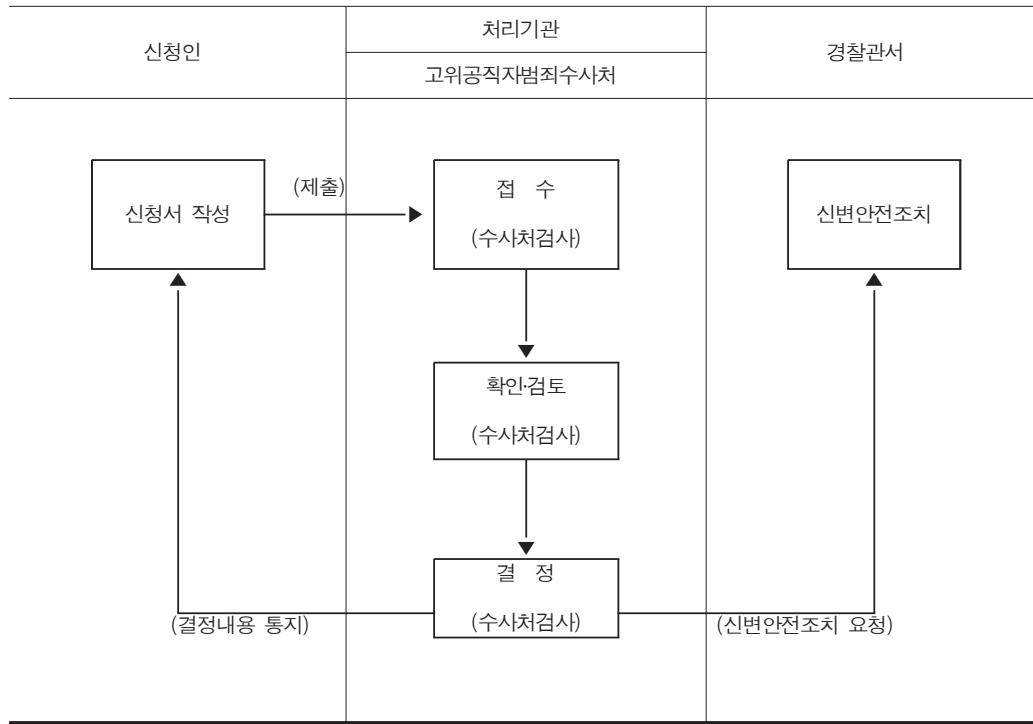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뒤쪽)

※ 작성요령

1. ①란에는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및 직급,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및 우편물을 받으실 수 있는 주소를 기재합니다.
2. ②란에는 신청인과 관련된 내부고발을 접수한 접수일자, 접수번호 및 고발내용의 요지를 기재합니다.
3. ③란에는 신청인을 포함하여 신변안전조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거주하는 주소를 기재하며, 신변안전조치 대상자가 많은 경우 별지로 작성하면 됩니다.
4. ④란에는 신청인이 신청하는 신변안전조치에 해당되는 항목의 []에 를 표시합니다.
5. ⑤란 및 ⑥란에는 내부고발과 내부고발에 대한 수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명백한 우려 등 신변안전조치를 신청하는 사유 및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기재하며, 기재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로 작성하면 됩니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의견제시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60일
------	------	------	-----

①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및 직급		전화번호	
	주소			

② 내부고발 등	접수일자		접수번호	
	고발요지			

③ 의견제시	신청사유	
	신청내용	
	기타 증빙자료	

④ 조사과정에서 신분공개 동의 여부	우리 처가 의견제시 신청을 조사·확인하는 과정에서 귀하의 인적사항 또는 내부고발 등 관련정보를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부동의
---------------------------	---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의견제시를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귀하

구비서류 및 수수료

신청인이 내부고발과 내부고발에 대한 수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징계 절차 또는 불리한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임을 증빙하는 자료(사실의 기재나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 한합니다)

수수료 없음

※ 뒤쪽의 작성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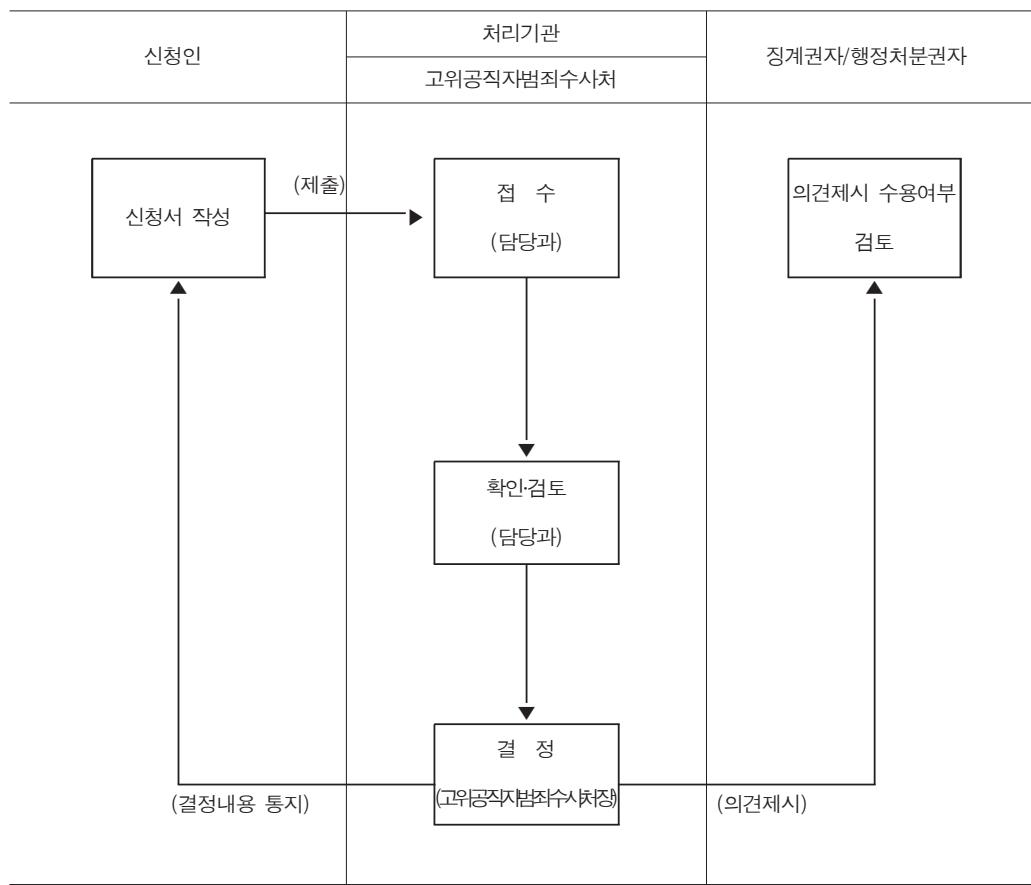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뒤쪽)

※ 작성요령

1. ①란에는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및 직급,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및 우편물을 받으실 수 있는 주소를 기재합니다.
2. ②란에는 신청인과 관련된 내부고발을 접수한 접수일자, 접수번호 및 신고내용의 요지를 기재합니다.
3. ③란에는 신청인이 내부고발과 내부고발에 대한 수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징계 절차 또는 불리한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 등 의견제시를 신청하는 사유, 신청하는 내용 및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기재하며, 기재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로 작성하면 됩니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 (재활용품)]

포상금·구조금 지급 신청

- ▶ 포상금은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저지른 자가 내부고발로 인해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을 받으면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 구조금은 내부고발자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내부고발로 인하여 중대한 경제적 손실 또는 정신적 고통 등을 받았을 때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영」 제8조, 제9조

[포상금 신청]

- ① 내부고발자가 「영」 제8조에 따른 포상금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15호 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에 신청인의 인적사항, 신청이유, 「영」 제9조에 따른 구조금 및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포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수령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 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다.

[포상금 지급기준]

- ① 포상금은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 집행유예의 여부, 형의 선고, 형의 종류와 경중 또는 기간과 금액을 고려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별표1 참조)

[구조금 신청]

- ① 내부고발자가 「영」 제9조에 따라 구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17호 서식의 구조금 지급신청서에 신청인의 인적사항, 내부고발 내용, 내부고발로 인한 피해 또는 지출비용, 「영」 제8조에 따른 포상금 및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포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수령 여부, 구조금 지급신청 금액 및 신청인이 구조금을 수령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 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다.
 1.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2. 신청인이 구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예금통장 사본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제2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
 4. 그 밖에 구조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구조금의 산정기준 등]

- ① 구조금을 산정하는 경우, 제25조의 지급사유별 실제 소요된 비용 중에서 별표2의 기준 고려
- ② 별표2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제25조제1항제1호의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5조의 요양급여의 산정에 준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산정
- ③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사비용은 내부고발을 한 후 1년 이내에 거주지 등을 옮기는 경우에 지급(다만, 내부고발을 한 후 1년이 지나서 신분이 노출되거나 수감되었던 피고발인이 출소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안내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포상금 지급 신청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처리기간	90일
①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거주지	(전화번호)			
	내부고발자와의 관계				
② 내부고발 등	접수일자		접수번호	20 년 월 일	
	고발내용				
③ 포상금 신청 이유	<input type="checkbox"/> 기소유예 <input type="checkbox"/> 형의 선고유예 · 집행유예 <input type="checkbox"/> 형의 선고				
④ 영 제9조에 따른 구조금,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 포상금 또는 구조금 청구 · 수령사항	청구여부	<input type="checkbox"/> 있음 (기관명 :) <input type="checkbox"/> 없음			
	수령여부	<input type="checkbox"/> 있음 (금액 :) <input type="checkbox"/> 없음			
⑤ 입금 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라 포상금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귀하

*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뒤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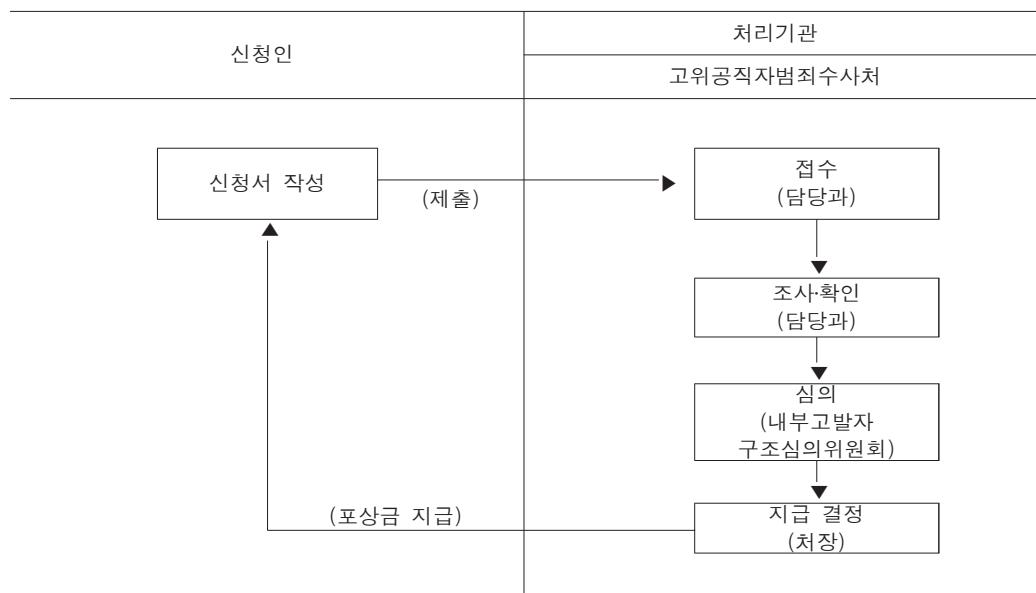
※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이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 포상금을 수령할 사람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 내부고발 내용 및 관련 수사·소송 등에 관한 자료 사본
- 그 밖에 포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 작성요령

- ①란에는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우편물을 받으실 수 있는 주소 및 내부고발자와의 관계를 기재합니다.
- ②란에는 내부고발 접수일자, 접수번호, 고발내용을 기재합니다.
- ③란에는 내부고발로 인하여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저지른 사람에 대한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 해당되는 항목의 []에 를 표시하고, 포상금 신청이유를 기재합니다.
- ④란에는 신청인이 동일한 내부고발을 이유로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규정」 제9조에 따른 구조금, 다른 법령상의 보상금·포상금 또는 구조금을 청구하거나 수령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되는 항목의 []에 를 표시합니다.
- ⑤란에는 신청인이 구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금융기관명과 예금계좌번호를 기재합니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안내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구조금 지급 신청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처리기간	30일
①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거주지	(전화번호)			
	내부고발자와의 관계				
② 내부고발 등	접수일자		접수번호	20 년 월 일	
	고발내용				
③ 구조금 신청 이유	내부고발로 인해 받은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의 경위				
	피해액 또는 지출한 비용				
④ 영 제8조에 따른 포상금,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포상금 또는 구조금 청구·수령사항	청구여부	[] 있음 (기관명 :) [] 없음			
	수령여부	[] 있음 (금액 :) [] 없음			
⑤ 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⑥ 구조금 신청금액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구조금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귀하

*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뒤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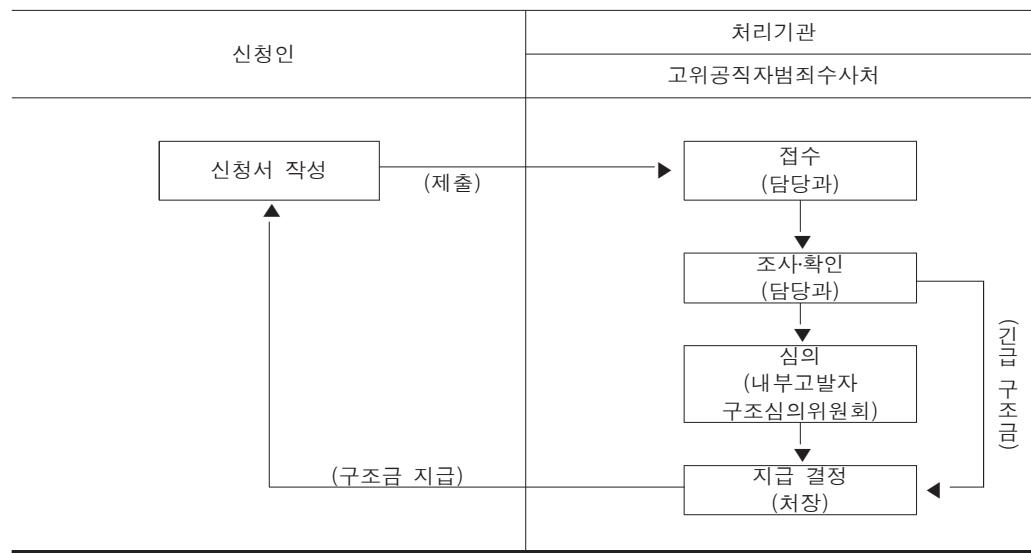
※ 구비서류

1.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이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2. 구조금을 수령할 사람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3. 수급자 증명서 사본
4. 그 밖에 구조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 작성요령

1. ①란에는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우편물을 받으실 수 있는 주소 및 내부고발자와의 관계를 기재합니다.
2. ②란에는 내부고발 접수일자, 접수번호, 고발내용을 기재합니다.
3. ③란에는 내부고발로 인한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의 경위, 피해액 또는 지출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4. ④란에는 신청인이 동일한 내부고발을 이유로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른 포상금, 다른 법령상의 보상금·포상금 또는 구조금을 청구하거나 수령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되는 항목의 []에 를 표시합니다.
5. ⑤란에는 신청인이 구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금융기관명과 예금계좌번호를 기재합니다.
6. ⑥란에는 구조금 지급 신청금액을 기재합니다.
7. 수급자 증명서 사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 [별표 1]

포상금 지급기준(제20조 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영 제8조에 따른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에 비하여 포상금의 지급대상자가 많을 경우에는 기여도, 포상금 산정 액수 등을 고려한 우선 순위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 나. 포상금은 영 제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유를 고려하여 내부고발자구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감액사유별 감액은 30퍼센트 범위에서 하되, 감액사유를 중복 적용하는 경우에는 총 감액비율이 포상금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정한 목적으로 내부고발을 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액비율을 달리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다. 포상금 지급사유가 2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포상금 산정 액수가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
- 라. 내부고발자구조심의위원회는 형의 종류와 경중 또는 기간과 금액, 인원 수, 기여도 등에 따라 금액기준 범위 내에서 포상금 지급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 마. 내부고발자구조심의위원회는 고위공직자범죄의 적발·처벌에 있어 내부고발자의 공적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금액기준의 차하급 기준으로 포상금 지급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 바. 내부고발자구조심의위원회는 사회적 파급효과, 고위공직자범죄 적발·처벌에 있어 내부고발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그 공적이 상당하고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금액기준의 차상급 기준으로 포상금 지급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사. 포상금의 이중지급 방지를 위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영 제9조에 따른 구조금 및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포상금 또는 구조금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그 액수가 이 영에 의하여 받을 포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할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적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2. 개별기준

가. 신분상 사법처분

금액기준	유형
1) 1억원 이하	내부고발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이 있는 경우
2) 5,000만원 이하	내부고발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기간이 7년 이상 10년 미만인 사람이 있는 경우
3) 3,000만원 이하	내부고발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기간이 5년 이상 7년 미만인 사람이 있는 경우
4) 1,000만원 이하	내부고발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사람이 있는 경우
5) 500만원 이하	내부고발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사람이 있는 경우
6) 300만원 이하	내부고발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기간이 6월 이상 1년 미만인 사람이 있는 경우
7) 100만원 이하	내부고발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기간이 6월 미만인 사람이 있는 경우 또는 기소유예를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나. 벌금, 물수 등 재산형

금액기준	유형
1) 1억원 이하	20억원을 초과하는 재산형의 부과가 있는 경우
2) 5,000만원 이하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의 재산형의 부과가 있는 경우
3) 3,000만원 이하	6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의 재산형의 부과가 있는 경우
4) 1,000만원 이하	2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의 재산형의 부과가 있는 경우
5) 500만원 이하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의 재산형의 부과가 있는 경우
6) 300만원 이하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의 재산형의 부과가 있는 경우
7) 100만원 이하	10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재산형의 부과가 있는 경우

※ 비고 : 1. 집행유예,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집행 또는 선고가 유예된 형(징역, 금고, 벌금 등)을 기준으로 포상금의 지급금액을 산정한다.

2. 2 이상의 처분이 있는 경우 그 처분들을 모두 합산하여 금액기준 범위 내에서 포상금 지급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 [별표 2]

구조금 산정기준(제26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영 제9조에 따른 구조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 나. 구조금 지급사유가 2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사유별로 산정기준을 적용 한다.
- 다. 구조금을 산정하는 경우 소송 등을 통하여 해당 비용을 보상이나 배상받은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 라. 구조금의 감액 또는 부지급(不支給)에 관하여는 영 제8조제2항을 준용한다.
- 마. 구조금의 이중지급 방지를 위하여 구조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기 하여 영 제8조에 따른 포상금 및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포상금 또는 구 조금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그 액수가 이 영에 의하여 받을 구조금 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할 때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적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2. 지급사유별 기준

가. 치료비용 산정기준

치료비용 (진단서, 치료사실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원치료 시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급 ◆ 입원치료 시 1,000만원 한도 내 실비 지급
------------------------	---

나. 이사비용 산정기준

1) 이사화물 포장 및 운반비용 산정기준

지급기준	지급액
1. 5톤 이하의 이사화물	해당 이사화물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또는 승강기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2. 5톤을 초과하는 이사화물(이사화물이 7.5 톤을 넘는 경우에는 7.5톤을 상한으로 한다)	5톤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또는 승강기의 이용료를 포함한다)에 5톤 초과 7.5톤 이하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또는 승강기의 이용료를 포함한다)의 50퍼센트를 더한 금액

* 참고 : 실비는 이사화물의 운송비, 인건비 등을 포함하되, 각종 옵션사항(에어컨설치 등)으로 분류되는 항목의 비용은 제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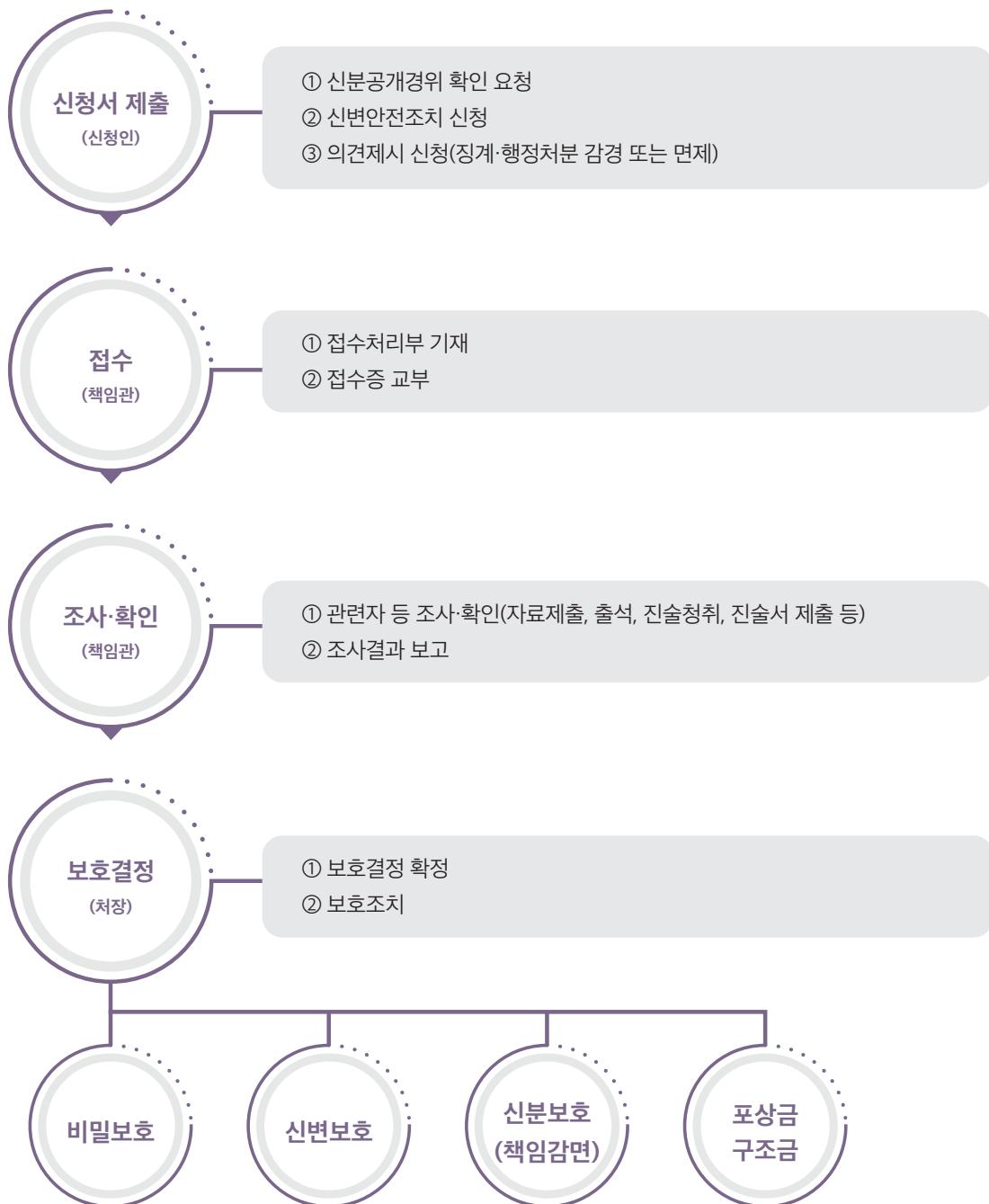
2) 부동산 중개보수 산정기준

중개보수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중개보수 실비. 다만,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주택가격의 동향 조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월간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른 서울특별시의 평균매매가격, 평균전세가격, 평균 월세보증금 + (평균월세가격 x 100)에 같은 시의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곱한 금액을 각 거래내용별 지급한도로 한다.
------	--

- 다. 생활비·전직비용 및 위자료는 이를 합산하여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구조금지급 대상자의 근무직종에 따라 구조결정 시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일급최저임금의 5배 이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 라. 방범시설 설치비와 내부고발자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의 보호나 경호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로 지급한다.



① 내부고발자 보호업무 처리 흐름도





Q & A



Q

1. 내부고발로 인한 보호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A

주요 보호조치로는 ①인적사항이나 이를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 주거나 공개·보도하지 못하는 비밀보장 ②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 제공하는 신변보호 ③내부고발자나 협조자의 위법행위를 이유로 징계나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 이에 대한 의견제시 등이 있다.

Q

2. 신고의 동기에 따라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가?

A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 제13조제2항에서는 ①내부고발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내부고발을 한 경우 ②내부고발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 등을 요구한 경우 ③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내부고발을 한 경우 사건을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는 허위신고나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특혜를 요구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공익신고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Q

3. 내부고발자는 아니지만 고위공직자범죄등과 관련하여 조사·소송 등에서 협조하다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도 보호받을 수 있는가?

A

받을 수 있다. 고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한 확인과 신고자 보호를 위해서는 내부고발과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동료 직원 등이 고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하거나 증언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대통령령 제30831호」 제12조에 따라 협조자도 신고자와 동일하게 비밀보장, 신변보호, 보호조치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언론매체에 보도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에도 보호받을 수 있는가?

언론매체 등을 통해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는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내부고발신고를 종결할 수 있으며, 보호조치 신청도 각하할 수 있다.

또한, 내부고발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이 인터넷상 기존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재신고 하는 경우에는 보호가치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내부고발을 준비한 자가 언론에 제보된 내용을 다시 내부고발을 하는 경우에 고위공직자범죄등의 행위를 직접 발견하고 증거자료 수집 등 신고준비를 한 당사자임이 분명하다면 보호가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5. 포상금의 지급한도는 얼마 입니까?

제한이 있다. 포상금은 「대통령령」 제8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고 1억원까지 차등 지급 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에 비하여 포상금의 지급대상자가 많을 경우, 기여도, 포상금 산정 액수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또한 당해연도 예산액이 부족할 경우 익년도 예산에서 지급할 수 있다.



6. 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

구조금은 「대통령령」 제9조에 따라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구조금의 지급요건은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진찰·입원·투약·수술 등의 비용, 전직·파견근무·신변안전조치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내부고발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파면·해임·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내부고발로 인해 발생한 중대한 경제적 손해 등이 있다.



Q**7. 내부고발 이전에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도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가?**

받을 수 없다. 구조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내부고발과 이로 인한 불이익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따라서 내부고발 이전에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A**Q****8.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대응하기 위해 선임한 변호사 비용 전액을 구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변호사·노무사 등의 조력을 받은 비용은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나 「민사소송등 인지규칙」을 준용하여 그 범위 안의 금액에 대해서만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A

고위공직자범죄

내부 고발

안 내 서



IV



내부고발·보호 업무처리

- | | | |
|---------------------|-------|----|
| 1. 내부고발(신고) 업무처리 | | 56 |
| 2. 내부고발자 보호·보상 업무처리 | | 92 |

IV 내부고발·보호 업무처리

1 내부고발(신고) 업무처리

1. 고위공직자범죄등과 부패·공익 신고 비교

구분	고발(신고)
고위공직자범죄등 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 제46조 및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제2조제1항에 따른 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46조제1항에는 누구든지 범죄정보를 수사처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보호 및 지원은 내부고발자로 한정
부패행위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부패행위의 신고), 제56조(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고발(신고)과 외부고발(신고)을 구별하지 않고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며, 누구에게나 보호·보상 제공
공익(공익침해행위)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익신고자보호법」 제6조(공익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고발(신고)과 외부고발(신고)을 구별하지 않고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며, 누구에게나 보호·보상 제공

▣ 부패행위 신고

- ①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②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③ ①목과 ②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등을 신고

▣ 공익(공익침해행위) 신고

- ① 공익신고자보호법 제6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침해행위(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

2. 내부고발(신고)의 접수

[내부고발 신고서 접수]

- ① 내부고발하려는 자가 별지 제1호 서식의 내부고발 신고서와 함께 고위공직자범죄등의 증거를 제출하면, 사건관리담당관 또는 처장이 지정하는 사건관리담당관실 소속 공무원(이하 “사건관리 담당관등”)이 이를 접수한다.
단, 사건관리담당관 등을 제외한 수사처 직원(파견 및 일용직 포함)은 내부고발 신고를 직접 접수할 수 없음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부고발자가 내부고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구술(口述)로 사건관리담당관 등에게 신고가 가능하다.(이 경우 증거 등 제출)
- ③ 내부고발자가 비실명 내부고발을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내부고발 신고서 중 내부고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은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하면 된다.
- ④ 사건관리담당관 등은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접수 순서별로 별지 제2호 서식의 내부고발 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접수증을 내부고발자에게 교부한 후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제11조 등에 따라 수사처검사에게 인계하여 처리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인계받은 수사처검사는 내부고발 내용이 고위공직자범죄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내부고발 신고가 아닌 일반민원으로 처리가능, 이 경우 즉시 사건관리 담당관 및 신고자에게 통보한다.(「공수처고시 제2021-2호」 제3조제5항)

내부고발 종결사유

- ▶ 내부고발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 ▶ 내부고발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 ▶ 내부고발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기간 내 보완하지 않은 경우
- ▶ 내부고발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 ▶ 내부고발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⑥ 다만, 신고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해 공개된 것인 경우에도 그 내용이 신고자의 제보에 의한 것인 경우, 종결하지 않고 조사 진행이 가능하다.

관련 판례

▶ [2013.5.16. 서울고등법원 2012 구합 32532]

언론매체 등을 통해 이미 공개된 내용이 신고자의 제보에 의한 것인 경우, 그 신고자를 보호함에 있어 신고를 먼저 한 이후 언론매체 등에 제보를 한 신고자와 차별을 둘 필요가 없으므로,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8조 제2호, 동법 제10조제2항제5호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보호조치 신청을 각하하지 않고, 보호조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작성]

① 수사처검사는 신고자에게 수사과정 등에 있어 그 신분공개에 동의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토록 한다.

[가명조서등의 작성]

- ① 수사처검사가 가명조서등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조사 전에 내부고발자 및 그 법정 대리인에게 가명조서등의 취지를 설명하고 그 작성을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
- ② 내부고발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 수사처검사에게 가명조서등을 작성해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 수사처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명조서등을 작성한다.
- ③ 가명진술서등을 작성하는 경우 「공수처고시 제021-2호」 제5조제5항을 준용한다.

[신원관리카드의 작성]

① 수사처검사가 가명조서등을 작성하거나 가명진술서등의 작성을 승인한 경우, 이에 기재하지 않은 인적사항 등을 별지 제8호 서식의 내부고발자 등 신원관리카드(이하 “신원관리카드”)에 등재한다.

[신원관리카드 관리자 지정 등]

① 처장은 신원관리카드 등의 서류를 관리하기 위해 「공수처고시 제021-2호」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가명조서등 또는 가명진술서등의 작성을 승인한 수사처검사를 신원관리카드 관리자로 지정한다. 다만 내부고발자의 비밀 보호 등을 위하여 사건관리담당관 등으로 하여금 신원관리카드 관리자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원관리카드의 인계]

① 수사처검사가 사건을 이첩하는 경우, 신원관리카드를 밀봉하여 사건기록과 함께 송부한다.(이 경우 사건이첩서 비고란에 “신원관리카드 있음”을 명기)

[신원관리카드 작성 사건 공소제기 시 유의사항]

① 수사처검사는 가명조서등 또는 가명진술서등을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 공판카드의 표지 상단에 “신원관리카드

작성 사건임” 고무인 날인, 공판카드 증거관계란 및 증거목록의 비고란에 가명조서등 또는 가명진술서등의 작성사실 및 그 경위를 간략히 기재한다.

- ② 수사처검사는 제1항의 경우에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서류(진단서, 감정서 등)를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 그 인적사항을 가지고 사본한 후 이를 증거로 제출하고, 원본은 수사기록에 편철한다.(이 경우 공판카드 증거관계란 및 증거목록의 비고란에 그 사유 기재)

[신원관리카드의 열람]

- ① 「대통령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신원관리카드의 열람신청은 별지 제9호 서식의 내부고발자 등 신원관리카드 열람허가신청서에 따른다.
- ② 신원관리카드 관리자가 제1항의 열람신청을 받은 경우, 수사 또는 공소담당 수사처검사의 의견을 청취한 후 내부고발자가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열람을 허가해서는 안된다.
- ③ 신원관리카드 관리자는 제2항의 열람허가 여부를 별지 제10호 서식의 내부고발자 등 신원관리카드 열람허가신청 결과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자체 없이 통지한다.
- ④ 신원관리카드의 열람은 수사처 내에서 신원관리카드 관리자의 면전에서 해야 하고, 수사 또는 공소담당 수사처검사가 신원관리카드를 열람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신원관리카드 관리자에게 즉시 통지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열람이 있는 경우 신원관리카드 관리자는 열람 주체 및 일시를 별지 제11호 서식의 내부고발자 등 신원관리카드대장에 기재한다.

[신원관리카드의 열람불허에 대한 이의절차]

- ① 「대통령령」 제4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12호 서식의 내부고발자 등 신원관리카드 열람신청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신원관리카드 관리자는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열람 허가가 가능하다.
- ③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열람허가 여부의 통지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내부고발자 등 신원관리카드 열람불허 이의신청 결과통지서에 따른다.

[신원관리카드 등의 승계]

- ① 인사이동 등으로 신원관리카드 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별지 제14호 서식의 내부고발자 등 신원관리카드 인수대장에 인수일시, 인수자 성명, 인수 대상 목록 등을 기재한다.

[재판과정에서 증인소환장을 받은 수사처검사의 의무]

- ① 재판장 또는 판사가 가명조서등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내부고발자등을 증인으로 소환하기 위해 증인소환장을 수사처검사에게 보낼 경우, 소환장을 받은 수사처검사는 신원관리카드 관리자에게 신원관리카드 열람을 요청, 그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증인에게 출석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 ② 수사처검사는 제1항에 따라 증인이 출석할 경우, 증인에게 법원에 피고인이나 방청인을 퇴정시키거나 공개법정 외의 장소에서 증인신문을 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한다.

[증인신문 절차 등]

- ① 수사처검사는 제14조에 따라 출석한 증인의 경우, 공판조서에도 해당증인의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을 것을 재판장 또는 판사에게 요청한다.
- ② 수사처검사는 제14조에 따라 증인이 출석한 경우, 신원관리카드 관리자로부터 신원관리카드를 대출받아 공판정에서 재판장 또는 판사에게 제시하여 신원을 확인하게 하고, 그 후에는 지체 없이 신원관리카드 관리자에게 신원관리카드를 반환한다.
- ③ 수사처검사는 증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증인이 요청하는 경우, 법원에 피고인이나 방청인을 퇴정시키거나 공개법정 외의 장소에서 증인신문을 해 줄 것을 신청한다.
- ④ 수사처검사는 이외에도 출석한 증인의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신원관리카드의 보존 및 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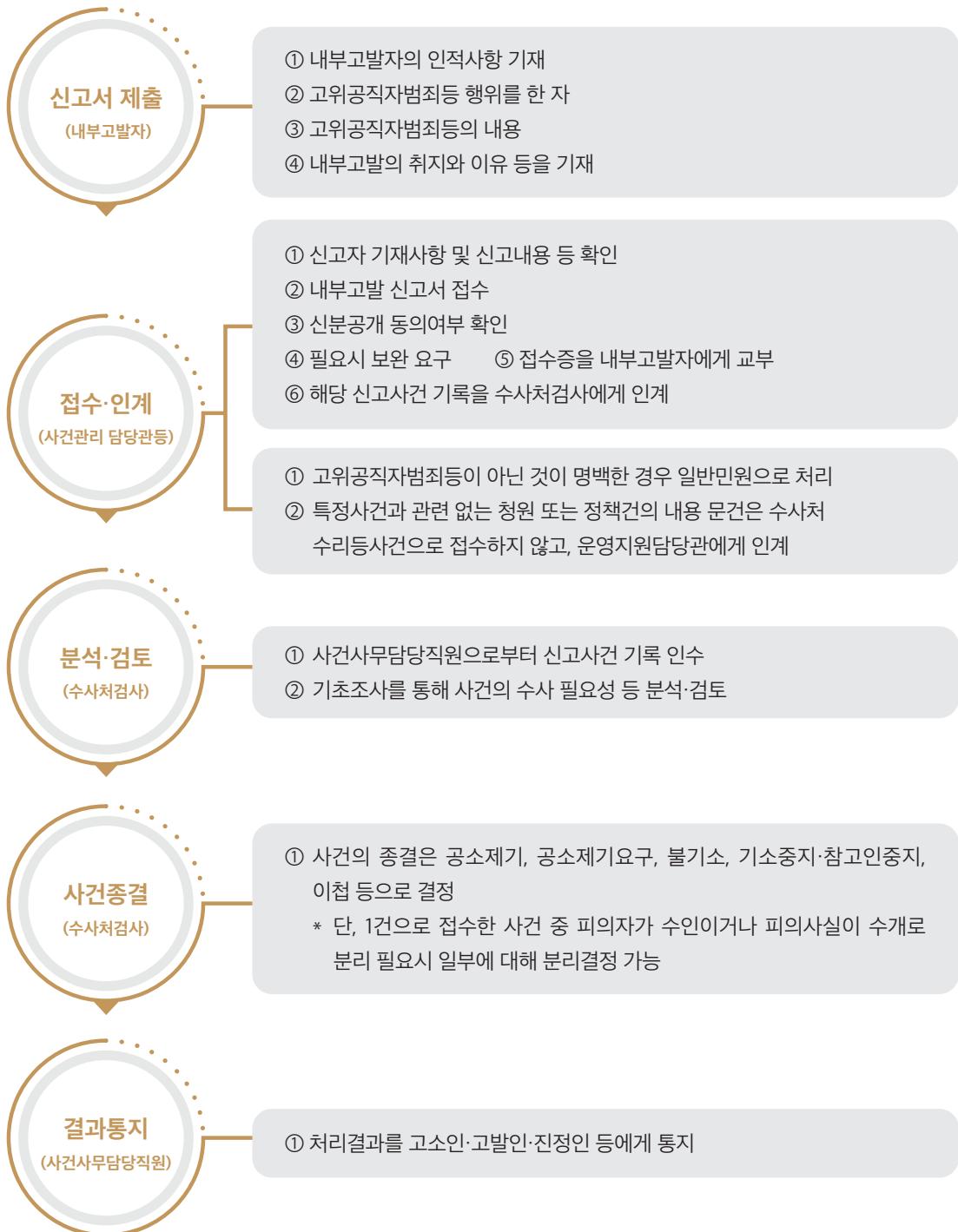
- ① 신원관리카드 관리자는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보관함에 신원관리카드를 보관한다.
- ② 신원관리카드 등 서류의 보존기간은 원 사건기록의 보존기간으로 한다.
다만, 원 사건기록의 보존기간보다 신변안전조치의 기간 및 포상금 지급신청 기간이 장기인 경우, 그 신변안전 조치의 종료일까지 보존한다.
- ③ 신원관리카드 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서류의 보존기간이 만료된 경우, 처장의 허가를 받아 폐기, 이 경우 처장은 관련사건 수사 및 재판 계류 여부, 열람신청 등 각종 처리의 완결여부를 확인한 후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내부고발 관련 협조자에 대한 준용]

- ① 내부고발에 대한 수사·소송 등에서 고위공직자범죄등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진술을 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한 가명조서등, 가명진술서등 및 신원관리카드의 작성·관리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내부고발 신고 접수·처리 흐름도



I.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란?

II. 내부고발(신고) 요령

III. 내부고발자 보호

IV. 내부고발·보호 업무처리

V. 관련 서식·법규



Q & A



Q

1. 반드시 신고서 양식에 따른 내부고발신고만 접수해야 하는가?

특정한 양식에 따른 신고서가 아니더라도 내부고발로 접수할 수 있다. 수사처는 고시(지침)에서 규정한 신고서 서식에 따라 내부고발을 접수하고 있지만, 신고서에 '①내부고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②고위공직자범죄등의 행위를 하는 자 ③고위공직자범죄등 행위의 내용 ④내부고발의 취지와 이유'가 포함되어 있다면 형식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내부고발로 접수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구술신고를 제외한 단순한 전화문의·상담은 내부고발로 보기 어렵다.

A

Q

2. 내부고발신고서를 접수하면서 신분공개 등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가?

내부고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가 신분공개 여부에 동의하는지를 꼭 확인·명시해 두어야 한다. 내부고발자등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보도하는 경우 「대통령령 제30831호」 제5조제3항 및 「공수처고시 제2021-1호」 제14조제2항에 따라 공개한 해당자의 징계권자에게 해당 위반사실을 통보할 수 있으며, 징계권자는 이에 대한 처리결과를 수사처에 통보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A



3. 내부고발신고 접수를 거부할 수 있는가?

수사처는 정당한 내부고발에 대해 접수를 거부할 수 없다.

다만, 「공수처고시 제2021-2호」 제3조제5항에 따라 공익신고 내용이 명백한 거짓 이거나, 내부고발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내부고발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기간 내 보완하지 않은 경우, 내부고발자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내부고발의 내용이 언론매체를 통해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내부고발신고가 아닌 일반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즉시 사건관리담당관 및 신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4. 신고내용이 고위공직자범죄등인지 여부가 명확 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부고발의 접수단계에서 고위공직자범죄등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우선 내부고발 접수·처리 절차를 거치는 것이 내부고발자의 보호취지에 적합하다. 신고방법을 준수하여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신분공개 등의 여부를 확인·적시해 두어야 한다.

다만, 내부고발 내용이 고위공직자의 불친절이나 제도개선 등 고위공직자범죄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내부고발이 아닌 일반민원으로 접수·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

5. 전화로 고위공직자 범죄등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접수해야 하는가?

원칙적으로 접수가 곤란하다. 「공수처고시 제2021-2호」 제3조는 내부고발과 함께 고위공직자범죄등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화로 내부고발을 하는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기 곤란할 뿐 아니라 관련 증거 등을 제출하기도 어려우므로 신고자에게 이러한 점을 설명하고 문서로써 내부고발을 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문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고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관련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술신고를 받은 사람은 신고서에 내부고발자가 언급한 사항을 작성하여 신고자에게 읽게 한 후 내부고발자가 서명 또는 날인토록 해야 한다.

A

Q

6. 부정한 목적의 신고는 어떠한 신고를 말하는가?

부정한 목적의 신고로는 신고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승진 등 특혜, 모함 등을 위해 신고를 이용하는 경우 등이 있다.

다만, 부정한 목적의 신고인지 여부를 신고접수 당시의 정황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명확한 금품요구 증거 등 개별 사례별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A

Q

7. 증거자료 제출 없이 구체적인 기술만으로 조사가 가능한가?

내부고발을 할 때에는 고위공직자범죄등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야 하고, 수사처에서는 신고내용이 특정에 필요한 사항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내부고발 신고를 종결 할 수 있다.

다만, 수사처에서는, 접수된 내부고발의 증거자료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기술된 사항 만으로도 신고내용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위반사실을 확인할 수도 있다.

A



8. 접수한 고위공직자 범죄등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내부고발을 접수한 수사처는 신고내용 및 관련 법규 확인 및 필요한 조사를 해야 한다. 조사를 마친 후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수사처는 신고내용 및 관련 법규를 확인하여 해당 고위공직자범죄등이 관할 및 직무 범위 내의 사안인지를 확인하여 수사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수사를 종결한 후에는 내부고발자에게 수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9. 관할에 속하지 않은 신고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내부고발신고를 접수한 수사처는 신고내용 및 관련 법규를 확인한 결과, 관할 및 직무 범위에 속하지 않은 신고인 경우에는 해당 조사·수사기관으로 신고서를 이송하고,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송과정에서 신고자의 동의 없이 다른 조사·수사기관에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신고자의 동의를 구하고 이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0. 접수한 내부고발신고는 반드시 조사를 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내부고발이 명백한 거짓인 경우 등 「공수처고시 제2021-2호」 제3조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부고발이 아닌 일반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신고자에게 그 사유를 포함하여 조사하지 않거나 조사 중단 및 종료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11. 신고서 기재사항이나 증명자료 등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도 반드시 조사에 착수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공수처고시 제2021-2호」 제3조제1항은 내부고발신고자의 인적사항과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저지른 자, 범죄의 내용 및 신고의 취지와 이유를 명시한 신고서와 함께 관련 증거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신고서에 인적사항 등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신고내용이 특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바로 종결하기보다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신고자에게 요청해야 한다.

또한, 「공수처고시 제2021-2호」 제3조제5항에 따라 신고자가 보완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않거나 조사를 중단하고 일반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12. 내부고발자나 협조자가 인적사항의 기재생략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러한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가?

응해야 한다. 「대통령령 제30831호」 제3조제1항은 내부고발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고위공직자범죄등의 신고 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내부고발과 관련한 조서나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할 때 그 취지를 조서 등에 기재하고 내부고발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는 다.

내부고발자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을 신원관리카드에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3. 사건의 수리 및 처리

가. 사건의 수리 등[공수처사건사무규칙(이하 사무규칙) 제2장]

- ① (사건의 수리 사유, 사무규칙 제11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직범죄사건으로 수리한 다음, 별지 제1호서식의 공직범죄사건부에 해당사항을 기록
- 수사처검사 및 수사관이 범죄를 인지한 경우
 - 수사처검사가 고소·고발 또는 자수를 받은 경우(다만, 제34조제3항에 따라 진정사건으로 수리하는 경우는 제외)
 - 수사처검사가 진정인·탄원인 등 민원인이 제출하는 서류를 고소·고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한 경우
 -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이첩·이송 받은 사건
 - 불기소사건·기소중지사건·참고인증지사건을 재기(再起)한 경우
 - 공소를 취소한 사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29조에 따라 다시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 재정신청 한 사건에 대하여 고등법원이 「형사소송법」 제262조제2항제2호의 결정에 따른 재정결정서를 송부한 경우
 - 관할위반 판결이 선고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내부고발의 형태

- ▣ **신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사처 등에 법률 또는 사실 관계에 대해 서면(또는 구술, 이 경우 증거 등 제출 등)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행위
- ▣ **진정**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사처 등에 사정을 진술하고 어떠한 조치를 취해 줄것을 요구하는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
- ▣ **고소** 범죄 피해자 등이 수사처 등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 **고발** 범죄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처 등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 **제보** 수서처 등에 범죄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 **수사단서 제공** 수사처 등에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하는 행위

- ② 사건의 단위(사무규칙 제12조)

-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리 대상 사건을 사무규칙 제11조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리
- 「형사소송법」 제11조의 관련사건은 1건으로 수리(단 분리수사 경우에는 사건마다 각각 수리)
- 피의자의 수를 알 수 없는 사건은 1명으로 수리(단, 그 수가 2명 이상으로 판명된 때에는 추가로 수리)

③ 사건수리 전 점검과 조치(사무규칙 제13조)

- 사건사무담당직원이 사무규칙 제11조제2호에 따라 사건을 수리하려는 때에는 법 제2조제5호의 고위공직자범죄등에 해당 여부 점검
- 점검결과 고위공직자범죄등에 해당하지 않는 혐의가 포함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사건관리담당관에게 보고한 후 고소인·고발인·자수자에게 관련 절차를 안내하고, 사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음

④ 수리한 사건의 전산입력 등(사무규칙 제14조)

- 사건사무담당직원이 사무규칙 제11조에 따라 사건을 수리한 때에는 수리입력항목에 따른 사항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다만,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사건정보를 전송받은 경우에는 해당 전산문서를 조회하여 이첩한 수사기관, 이첩번호, 피의자 인적사항, 죄명 등을 확인하여 수리하는 것으로 전산입력을 갈음 가능)
-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범죄인지서, 고소장, 고발장, 자수서, 고소인·고발인·자수인 진술조서, 사건이첩서, 불기소사건재기서 등에 사건번호 기재
- 사건번호는 제11조에 따른 수리사건의 전산입력진행번호로서 사건마다 일련번호를 붙이되, 연도별로 접수연도와 접수번호를 “○년 공제 ○호”로 표시

⑤ 수리에 관한 지휘·감독(사무규칙 제15조)

-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리 절차가 종료된 사건을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사건관리담당관을 거쳐 처장의 명을 받아야 함

⑥ 필요적 사건 수리사유(사무규칙 제16조)

- 사무규칙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수사처검사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착수한 때에는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보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공직자범죄사건으로 수리

수리사유

▶ 피혐의자를 수사처에 출석하도록 하여 조사한 경우

▶ 피의자심문조서의 작성

▶ 긴급체포

▶ 체포·구속영장의 청구

▶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傍室)에 대한 압수·수색
또는 검증 영장의 청구

나. 사건관계인의 소환 등(사무규칙 제3장)

① 피의자의 출석요구(사무규칙 제17조)

- 수사처검사는 피의자에게 출석요구 하려는 경우 피의자와 조사의 일시·장소에 관하여 협의해야 하며,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과 협의 필요

② 피의자 등 출석요구 시 유의사항(사무규칙 제18조)

- 조사의 필요성, 우편·전자우편·전화를 통한 진술 등 출석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의 선택 가능성 등 수사 상황과 진행 경과 고려
- 전화·모사전송·전자우편·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으로 출석을 요구할 경우 그 사실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기록에 첨부
- 출석 요구 방법, 출석 일시 등을 정할 때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 되거나 생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
-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기업체나 그 대표자를 조사하는 경우 가능한 한 우편을 통한 진술 등을 활용하여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할 것
- 진술을 거부하거나 범행을 부인하는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에게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불필요하고 반복적인 출석 요구를 하지 않을 것

③ 조사 장소(사무규칙 제19조)

- 수사처검사는 피의자에 대한 조사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처 내의 영상녹화장비가 설치된 조사실에서 실시

④ 조사 외의 의견청취(사무규칙 제20조)

- 수사처검사는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 조사 전에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 경위 및 이유를 설명하고 유리한 자료제출 기회를 주거나, 조사 대상자로부터 피의사실에 대한 의견 및 조사 요구 사항 등 조사 참고사항 청취 가능
-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면담은 기본적으로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경청하기 위해 실시하며, 이 경우 이러한 목적 외의 면담을 반복적으로 실시하거나 면담 시 자백 유도와 회유, 범죄정보요구 등 금지
- 수사처검사 및 수사관은 면담을 실시한 경우 그 과정의 진행경과를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
- 위(제3항)에 따라 면담의 진행경과를 기록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

면담진행 경과 기록

- ▶ 면담 대상자가 면담 장소에 도착한 시각
- ▶ 면담 대상자가 면담 장소를 떠난 시각
- ▶ 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
- ▶ 면담 외에 실시한 행동
- ▶ 변호인 참여 여부

⑤ 피의자 조사 시 유의사항(사무규칙 제21조)

- 피의자가 출석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조사의 시작이 늦어지거나 조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 피의자에게 그 사유를 설명
- 조사 중 폭언, 모멸감을 주는 언행 금지
- 피의자에게 피의사실에 대하여 해명할 기회를 충분히 주고, 피의자가 제출하는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접수거부 금지

⑥ 범죄피해자 진술권 보장 등(사무규칙 제22조)

- 수사처검사 및 수사관은 수사과정에서 범죄피해자가 사실관계나 양형에 대한 의견 등을 진술하거나 증거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줄 수 있고,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기록에 편철 가능
- 수사처검사는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공판절차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의견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법원에 증인을 신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 가능

다.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사무규칙 제4장)

① 처장의 이첩 요청 시 고려사항(사무규칙 제23조)

- 처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가 수사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먼저 범죄혐의와 관련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고려 및 다음 사항 등을 고려하여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판단

이첩요청 시 고려사항

- ▶ 사건에 대한 수사의 진행 정도와 수사 기간
- ▶ 사건의 중대성
- ▶ 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공정성 논란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 ▶ 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고위공직범죄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의 임박 여부

- 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에 대하여 수사기록이나 증거자료 등 제1항의 판단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청 가능, 이 경우 수사기관은 자료를 제출하면서 사건 이첩에 관한 의견첨부 가능
- 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건을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이첩요청서에 따라 해당 수사기관에 기간을 정해 사건을 이첩하여 줄 것을 요청 가능, 긴급체포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협의를 거쳐 위 요청기간 연장 가능

② 인지 통보를 받은 사건의 처리(사무규칙 제24조)

- 다른 수사기관이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인지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처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수사의 진행 정도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인지 관련 단서(고소·고발장, 수사의뢰서 등) 및 첨부서류 사본, 수사기록

목록 사본 등의 제출 요청 가능

- 처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전자 정부법」 제2조제7호의 전자문서 포함)으로 해당 수사기관에 수사개시 여부 회신
- ③ 다른 수사기관에의 이첩 등(사무규칙 제25조)
 - 처장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이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

타 수사기관 이첩 적절성 판단

- ▶ 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고위공직자범죄등 해당 여부
- ▶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이 누구인지 및 거주지, 범죄자, 증거에 대한 접근 가능성 등
- ▶ 사건의 내용과 규모

- 처장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사건이첩서에 따라 해당 수사기관에 관계 서류와 증거물 등을 이첩
- 사법경찰관이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사처가 수사권 및 공소제기와 그 유지권을 갖고 사건을 수사하면서 수사처에 다음 각 호의 영장 등의 청구를 신청하면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그 신청별로 구분하여 영장 등의 신청서와 관련 기록을 함께 접수

영장등의 신청서와 관련 기록 접수

- ▶ 압수·수색·검증영장
- ▶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처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는 강제처분에 대한 허가서

④ 검사의 범죄에 대한 이첩(사무규칙 제26조)

- 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장은 수사를 중지하고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

라. 사건의 처리 등(사무규칙 제5장)

① 사건의 결정(사무규칙 제27조)

- 수사처검사가 사건을 종결할 때에는 처장의 지휘·감독하에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라 결정
 - 공소제기, 공소제기요구, 불기소[기소유예,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증거불충분),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각하], 기소중지, 참고인 중지, 이첩
- 위(제1항)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처장이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사·기소분리사건 결정서에 따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할 사건(이하 “수사·기소분리사건”)으로 결정하는 경우 수사를 종결한 수사처검사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사·기소분리사건 인계서에 의견서, 사건기록을 첨부하여 증거물과 함께 공소제기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수사처검사(이하 “공소담당검사”)에게 인계, 이 경우 인계하는 기록은 사건사무담당직원을 경유해야 하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공소부 인계사건 관리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
- 위(제2항)에 따라 사건기록 등을 인수한 공소담당검사는 이를 검토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수사·기소분리사건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처장에게 보고 후 사건기록에 편철
- 공소담당검사는 위(제3항)에 따라 처장에게 보고한 사건에 대하여 처장의 지휘·감독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결정 조치

② 공소제기요구 및 불기소(사무규칙 제28조)

- 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사건을 제외한 고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한 수사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되고 공소를 제기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공소제기를 요구하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공소제기요구결정서에 따름
이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사건송부서에 공소제기요구결정서,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첨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송부
- 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사건을 제외한 고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한 수사결과 불기소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사건송부서에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첨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송부

③ 공소제기요구 시 사건송부서의 기재 내용(사무규칙 제29조)

- 피의자의 구속 여부 및 구속된 경우 구속 일자·장소, 구속기간 연장 여부, 구속만기일
- 통신제한조치, 출국금지·출국정지, 몰수보전·몰수부대보전·추징보전의 집행을 한 경우 그 사실
- 증거물의 첨부 여부
- 영상녹화를 실시한 경우 그 녹화물의 종류 및 개수
- 공소시효 완성일 및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한 경우 그 취지

④ 공소제기요구 시 송부서류(사무규칙 제30조)

- 제29조에 따라 사건송부서에 첨부하는 관계 서류에는 범죄혐의의 입증취지가 기재된 증거설명서를 포함. 다만, 경미한 사안의 경우 증거설명서의 작성·첨부 생략 가능
- 제28조에 따라 송부하는 관계 서류는 압수물총목록, 기록목록, 기록목록에 기재된 서류, 증거설명서 순으로 첨부

⑤ 공소제기요구 및 불기소결정 후 업무 처리(사무규칙 제31조)

-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처검사가 공소제기요구 또는 제28조제2항의 불기소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송부 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매 건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직원의 확인을 받음. 다만, 송부 사건부를 전산처리방식으로 일괄 출력하여 확인을 받는 경우에는 송부 사건부 기재 생략 가능
-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구속 중인 피의자에 관하여 공소제기요구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1호서식의 재감인 공소제기요구결정 통지부를 작성하고, 공소제기요구 사실을 별지 제12호서식의 재감인 공소제기요구 통지서에 따라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통지
-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구속 중인 피의자에 관하여 공소제기요구 결정이 있는 때에는 구속영장청구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
-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공소제기 여부를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송부 사건부에 기재한 후 처장에게 보고

⑥ 관련범죄 이첩(사무규칙 제32조)

- 수사처검사가 법 제27조에 따라 해당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고위공직자범죄등이 아닌 범죄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이첩결정서에 따름
-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이첩한 후 1개월이 경과해도 사건을 이첩받았다는 통지가 없고, 사건의 접수 여부가 전산망 등 다른 방법으로 확인되지 않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확인 조치

⑦ 이첩 결정 및 이첩(사무규칙 제33조)

- **(이첩 결정)**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또는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처장이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 **(다른 수사기관 송부)** 수사처검사는 제1항에 따라 이첩 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건이첩서에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첨부하여 다른 수사기관에 송부. 이 경우 사건이첩서에 기재할 내용에 관하여는 제29조를 준용
- **(송부관계서류 첨부 순서)** 압수물 총목록, 기록목록, 제2호의 목록에 기재된 서류 순
- **(사건접수 확인)**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2항에 따라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송부한 후 1개월이 경과해도 사건접수 통지가 없고, 사건 접수 여부가 전산망 등 다른 방법으로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확인 조치

마. 진정·탄원·투서사건 처리(사무규칙 제6장)

① 진정 등 수리(사무규칙 제34조)

-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처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인지통보를 받은 경우, 수사처검사가 범죄에 관한 신문 등 출판물의 기사, 익명의 신고 또는 풍설, 첨보의 입수 등으로 범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내사사건으로 수리
-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진정·탄원 또는 투서 등 진정인·탄원인 등 민원인(이하 "진정인등")이 제출하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진정사건으로 수리

진정사건 수리대상

- ▶ 수사의 단서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익명, 가명, 허무인(虛無人) 명의의 진정서·탄원서 등 수사를 개시하기 어려운 사항
- ▶ 수사처 소속 공무원에 관한 사항
- ▶ 수사처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사항
- ▶ 편파적인 조사 등에 대한 시정을 희망하는 사항
- ▶ 병합수사나 이첩을 요구하는 사항
- ▶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한 사항
-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과 유사한 사항

-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고소 또는 고발사건으로 제출된 서류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진정사건으로 수리 가능

진정사건 수리가능 대상

- ▶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 ▶ 피고소인 또는 피고발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취소된 경우
- ▶ 고소 또는 고발이 본인의 진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이중으로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

② 내사·진정사건 수리절차(사무규칙 제35조)

-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내사 또는 진정 사건을 구분하여 수리
 - (내사사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피내사자의 인적사항 등 해당 사항을 전산입력하고, 내사사건 수리서를 출력한 후 내사사건기록 앞에 첨부하여 수리한 다음, 별지 제14호서식의 내사사건부에 해당 사항 기록

- (진정사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진정인·피진정인의 인적사항 등 해당 사항을 전산입력하고, 진정사건 수리서를 출력한 후 진정사건기록 앞에 첨부하여 수리한 다음, 별지 제15호서식의 진정사건부에 해당 사항 기록
-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내사사건 또는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압수물이 있는 경우, 이를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 압수물수리절차에 따른 조치
- 내사 및 진정사건의 번호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을 준용. 이 경우 접수연도와 접수번호는 "○년 내사(진정) 제○호"로 표시
- 내사 및 진정사건의 단위 및 수리절차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제3항 준용

③ 내사·진정사건의 처리 등(사무규칙 제36조)

- 수사처검사의 내사사건 구분 처리
 - (입건) 내사사건부의 비고란에 공직범죄사건번호 기재
 - (입건유예) 범죄의 혐의는 있으나 입건할 필요가 없는 경우
 - 혐의없음, 죄가안됨 또는 공소권없음
 - (내사중지) 피내사자 또는 참고인 등의 소재불명으로 내사불능인 경우
 - (수사불개시)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다른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를 개시하지 않을 것을 회신하는 경우
 - (조사사건 등록) 내사사건부의 비고란에 조사사건번호 기재
 - (이첩)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첩하는 경우
- 수사처검사의 진정사건 구분 처리
 - (공람종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람종결 처리

공람종결 처리 대상

- ▶ 3회 이상 반복 진정하여 이미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진정과 같은 내용인 경우
- ▶ 진정인이 이름을 적지 않거나 또는 거짓 이름으로 진정한 경우
- ▶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 ▶ 단순한 풍문이나 인신공격적인 내용인 경우
- ▶ 완결된 사건 또는 재판에 불복하는 내용인 경우
- ▶ 특정사건과 관련 없는 청원 또는 정책건의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
- ▶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인 경우
- ▶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
- ▶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취소된 경우

- (법원이첩)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내용인 경우
- (기록편철) 수사처검사 및 수사관이 조사·검토 중인 사건에 대한 내용인 경우
- (다른 기관 이첩) 다른 수사기관이 조사 중이거나 법원·검찰청 또는 군검찰부 외의 다른 기관의 소관사항에 관한 것인 경우
- (내사사건에 준하여 처리) 제1항 각호에 준하는 경우. 이 경우 제1항에 각호에 따른 내사사건 처리의 방법에 따라 처리
- (그 밖의 진정종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진정사건 종결의 경우
- 수사처검사는 내사사건은 내사사건기록에, 진정사건은 진정사건기록에 내사 또는 진정의 요지 및 결정이유를 기재하여 처리
-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처리결과를 내사사건부 또는 진정사건부에 기재. 이 경우 피내사자 또는 피진정인등이 입건된 경우에는 공직범죄사건부에 내사 또는 진정사건번호를, 내사사건부 또는 진정사건부에는 입건된 공직범죄사건번호를 기록
- 내사사건 또는 진정사건을 다른 기관으로 이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내사·진정사건 이첩서에 따름

④ 내사·진정사건 결과 통지 등(사무규칙 제37조)

-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6제1항 및 제2항의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별지 제17호서식의 사건결정결과 통지서(진정인등)에 따라 진정인등에게 통지
-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6조제1항제2호·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5호(같은 조 제1항제2호·제3호를 준용하는 경우로 한정)의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별지 제18호서식의 사건결정결과통지서(피진정인·피내사자)에 따라 피진정인 또는 피내사자에게 통지
-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지로 인해 보복범죄 또는 2차 피해 등이 우려되는 다음의 경우에는 수사처검사에게 보고하고 피진정인 및 피내사자에게 미 통지 가능
 - 혐의 내용 및 동기, 진정인 또는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통지로 인해 진정인 또는 피해자의 생명·신체·명예 등에 위해(危害) 또는 불이익이 우려되는 경우
 - 사안의 경증 및 경위, 진정인 또는 피해자의 의사, 피진정인·피내사자와의 관계, 분쟁의 종국적 해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통지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바. 조사사건 처리 (사무규칙 제7장)

① 조사사건 수리(사무규칙 제38조)

-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사건으로 수리

조사사건 수리대상

- ▶ 수사의 단서로서 수사를 개시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관한 서류(진정인·탄원인 등 민원인이 있는 서류로 한정)를 접수한 경우
- ▶ 내사사건 진행 중 제36조제1항제6호에 따라 등록한 경우
- ▶ 진정사건 진행 중 제36조제2항제5호(같은 조 제1항제6호를 준용하는 경우로 한정)에 따라 등록한 경우
- ▶ 다른 기관으로부터 범죄에 대한 수사를 의뢰받은 경우
-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경우

- 수사처검사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조사사건으로 수리

수사처검사의 수사관련 행위에 따른 조사사건 수리대상

- ▶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을 제외한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
- ▶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등 형사소송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장(체포·구속영장 및 제1호에 따른 압수·수색·검증 영장은 제외) 또는 허가를 청구하는 경우
- ▶ 현행범인을 체포·인수한 경우

② 조사사건 수리절차(사무규칙 제39조)

-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조사사건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피의자의 인적사항 등 해당 사항을 전산입력하고, 조사사건 수리서를 출력한 후 조사사건기록 앞에 첨부하여 수리한 다음, 별지 제19호서식의 조사사건부에 해당 사항 기록
-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조사사건과 관련하여 압수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 압수물수리절차를 취하도록 조치
- 조사사건의 번호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을 준용함. 이 경우 접수연도와 접수번호는 "○년 조사 제○호"로 표시
- 조사사건의 단위, 수리 전 점검, 지휘·감독 등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제3항, 제13조, 제15조 준용

③ 조사사건 처리 등(사무규칙 제40조)

- 수사처검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조사사건 처리

조사사건 구분 처리

- ▶ (입건) 조사사건부의 비고란에 공직범죄사건번호 기재
- ▶ (입건유예) 범죄의 혐의는 있으나 입건할 필요가 없는 경우
- ▶ (혐의없음, 죄가안됨 또는 공소권없음) 제27조제1항제3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
- ▶ (조사중지)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의 소재불명으로 조사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 ▶ (각하) 제27조제1항제3호마목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 (이첩)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첩하는 경우

-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처리결과를 조사사건부에 기재. 이 경우 피조사자가 공직범죄사건으로 입건된 경우에는 공직범죄사건부에는 조사사건번호를, 조사사건부에는 공직범죄사건번호를 각각 기록
- 조사사건을 다른 기관으로 이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조사사건 이첩서에 따름

④ 조사사건 결과 통지 등(사무규칙 제41조)

- 제40조제1항의 처리결과 통지에 관하여는 제37조를 준용. 이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의 사건처분 결정결과통지서(조사)에 따름

※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관련서식은 해당규칙 별지 1~21 참조



① 사건 수리업무 처리 흐름도



- ① 사무규칙 제11조제3호에 따라 법 제2조제5호의 고위 공직자범죄등에 해당 여부 점검(사무규칙 제13조제①)
- ② 점검결과 고위공직자범죄등에 미 해당 혐의가 포함된 사실 발견시 사건 관리담당관에게 보고 후 고소인 등에게 관련절차 안내 및 사건 일부 또는 전부 미 수리 가능(사무규칙 제13조제②)



- ① 수사처검사 및 수사관이 범죄를 인지한 경우
- ② 수사처검사가 고소·고발 또는 자수를 받은 경우
- ③ 수사처검사가 진정인·탄원인 등 민원인이 제출한 서류가 고소·고발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한 경우
- ④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이첩·이송 받은 사건
- ⑤ 불기소사건·기소중지사건·참고인증지사건을 재기(再起)한 경우
- ⑥ 공소를 취소한 사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29조에 따라 다시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 ⑦ 재정신청 한 사건에 대하여 고등법원이 「형사소송법」 제262조제2항 제2호의 결정에 따른 재정결정서를 송부한 경우
- ⑧ 관할위반 판결이 선고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 ① 사무규칙 제11조에 따라 사건을 수리한 때에는 수리 입력항목에 따른 사항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
 - * 단,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해 사건정보를 전송받은 경우는 그 것으로 갈음
- ② 범죄인지서, 고소장, 고발장, 자수서, 고소인·고발인·자수인 진술조서, 사건이첩서, 불기소사건재기서 등에 사건번호 기재



- ① 수리 절차가 종료된 사건을 처리하려는 경우 사건관리담당관을 거쳐 처장의 명을 받아야 함



② 사건관계인 소환 등 업무처리 흐름도



- ① 피의자에게 출석요구 하려는 경우 피의자와 조사 일시·장소에 관해 협의
- ② 변호인이 있는 경우 변호인과 협의
- ③ 조사장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처 내의 영상 녹화장비가 설치된 조사실에서 실시



- ① 조사의 필요성, 우편·전자우편·전화를 통한 진술 등 출석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 선택가능성 등 수사상황과 진행경과 고려
- ② 전화·모사전송·전자우편·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으로 출석 요구 시 그 사실을 서면으로 작성, 기록에 첨부
- ③ 출석요구 방법, 출석일시 등을 정할 때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의 명예, 사생활비밀이 침해되거나 생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
- ④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기업체나 그 대표자를 조사하는 경우 가능한 한 우편을 통한 진술 등을 활용하여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할 것
- ⑤ 진술을 거부하거나 범행을 부인하는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에게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불필요하고 반복적인 출석요구를 하지 않을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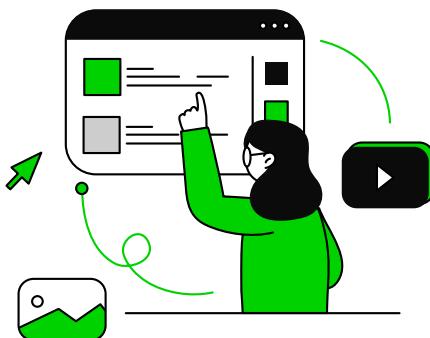
- ① 사건관계인(피의자 등) 조사 전에 조사대상자에게 조사경위 및 이유를 설명하고 유리한 자료제출 기회제공, 조사대상자로부터 피의사실에 대한 의견 및 조사요구사항 등 조사 참고사항 청취 가능
- ② 사건관계인에 대한 면담은 기본적으로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경청하기 위해 실시하며, 이러한 목적 외의 면담을 반복적으로 실시하거나 자백유도와 회유, 범죄정보요구 등 금지
- ③ 수사처검사 및 수사관은 면담을 실시한 경우 그 과정의 진행경과를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
- ④ 진행경과 기록은 면담대상자의 면담장소 도착시각, 면담장소를 떠난 시각, 조서 미 작성 이유, 면담 외 실시한 행동, 변호인 참여 여부를 구체적으로 기재



- ① 피의자 출석시 지체 없이 조사 착수 (단, 부득이한 사유로 조사시작이 늦어지거나 조사를 못하는 경우 피의자에게 그 사유를 설명)
- ② 조사 중 폭언이나 모멸감을 주는 언행 금지
- ③ 피의자에게 피의사실에 대한 해명기회를 충분히 주고, 피의자가 제출하는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접수거부 금지



- ① 수사처검사 및 수사관은 수사과정에서 범죄피해자가 사실관계나 양형에 관한 의견 등을 진술하거나 증거자료 제출기회를 줄 수 있고, 서면 제출 시 기록에 편철 가능
- ②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공판절차에 해당사건에 관한 의견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법원에 증인신청 등 필요한 조치 가능





③ 다른 수사기관 이첩요청 등 업무 흐름도

① 처장 이첩 요청 (처장)

-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이첩요청 시 다른 수사기관과의 범죄수사가 수사처의 범죄수사와 중복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먼저 범죄혐의와 관련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등을 고려하여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
- ② 다른 수사기관에 대하여 수사기록, 증거자료 등 제1항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 가능
 - * 이 경우 수사기관은 자료를 제출하면서 사건 이첩에 관한 의견첨부 가능
- ③ 제1항 및 제2항을 고려하여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이첩요청서(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해당 수사기관에 기간을 정해 이첩요청 가능
 - * 단, 긴급체포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협의를 거쳐 요청기간 연장 가능

② 인지통보 사건 처리 (처장)

- ① 다른 수사기관이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인지사실통보 시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수사진행 정도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인지 관련 단서 (고소·고발장, 수사의뢰서 등) 및 첨부서류 사본, 수사기록 목록 사본 등의 제출요청 가능
-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 「전자 정부법」 제2조제7호의 전자문서 포함으로 해당 수사기관에 수사개시 여부 회신

③ 타 수사 기관에 이첩 (처장)

-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이첩 시 타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판단
- ② 제1항에 따라 타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사건이첩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해당 수사기관에 관계서류와 증거물 등 이첩
- ③ 사법경찰관이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사처가 수사권 및 공소제기와 그 유지권을 갖고 사건을 수사하면서 수사처에 영장 등의 청구를 신청하면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그 신청별로 구분하여 영장 등의 신청서와 관련 기록을 함께 접수

④ 검사범죄 수사처 이첩 (처장)

- ① 수사처 외의 타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 발견 시 그 수사 기관장은 수사중지 및 수사처에 사건 이첩



④ 사건 처리 흐름도



- ① 사건을 종결할 때는 처장의 지휘·감독 하에 공소제기, 공소제기요구, 불기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이첩 등으로 구분하여 결정 조치
 - * 불기소는 기소유예, 혐의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각하로 구분되며, 혐의 없음은 범죄인정안됨, 증거불충분으로 구분됨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장이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사·기소분리사건 결정서에 따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할 사건으로 결정하는 경우 수사를 종결한 수사처검사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사·기소 분리사건 인계서에 의견서, 사건기록을 첨부하여 증거물과 함께 공소제기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수사처검사(공소담당검사)에게 인계
- ③ 제2항에 따라 사건기록 등을 인수한 공소담당검사는 이를 검토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수사·기소분리사건 검토의견서를 작성, 처장에게 보고 후 사건기록에 편철
- ④ 공소담당검사는 제3항에 따라 처장에게 보고한 사건에 대해 처장의 지휘·감독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결정 조치



- ① 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사건을 제외한 고위 공직자범죄등에 대한 수사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되고, 공소를 제기함이 상당하다고 판단, 공소제기를 요구하는 경우
 - * 별지 제8호서식의 공소제기요구결정서에 따름
 - 이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사건송부서에 공소제기 요구결정서, 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첨부, 서울중앙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송부
 - * 공소제기요구 시 사건송부서 기재내용
 - 피의자의 구속 여부 및 구속된 경우 일자·장소·구속기간 연장여부, 구속만기일
 - 통신제한조치, 출국금지, 출국정지, 몰수보전, 물수부대보전, 추징보전의 집행을 한 경우 그 사실, 증거물 첨부여부, 영상녹화를 한 경우 그 녹화물의 종류 및 개수, 공소시효 완성일 및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한 경우 그 취지
 - ② 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사건을 제외한 고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한 수사결과 불기소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사건송부서에 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첨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검사에게 송부



- ① 제29조에 따라 사건송부서에 첨부하는 관계서류에는 범죄혐의의 입증취지가 기재된 증거설명서 포함
* 단, 경미한 사안의 경우 증거설명서의 작성·첨부 생략 가능
- ② 제28조에 따라 송부하는 관계서류는 압수물총목록, 기록목록, 기록목록에 기재된 서류, 증거설명서 순으로 첨부)



- ① 수사처검사가 공소제기요구 또는 제28조제2항의 불기소 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송부 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매번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직원의 확인을 받음 (다만, 송부사건부를 전산처리방식으로 일괄 출력하여 확인받은 경우에는 송부사건부 기재 생략 가능)
- ② 구속 중인 피의자에 관하여 공소제기 요구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1호서식의 재감인 공소제기 요구결정 통지부를 작성, 공소제기요구 사실을 별지 제12호서식의 재감인 공소제기요구 통지서에 따라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통지
- ③ 구속 중인 피의자에 관하여 공소제기요구 결정이 있는 때에는 구속영장 청구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
- ④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공소제기 여부를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송부사건부에 기재한 후 처장에게 보고



- ① (이첩결정)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또는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처장이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 ② (다른 수사기관 송부) 제1항에 따라 이첩을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사건이첩서에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첨부하여 다른 수사기관에 송부(이 경우 사건이첩서에 기재할 내용에 관하여는 제29조 준용)
- ③ (관계 송부서류 첨부 순서) 압수물 총목록, 기록목록, 제2호의 목록에 기재된 서류 순
- ④ (사건접수 확인) 시건사무담당직원은 제2항에 따라 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송부한 후 1개월이 경과해도 사건접수 통지가 없고, 사건접수 여부가 전산망 등 다른 방법으로도 확인되지 않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확인 조치



⑤ 탄원·진정·투서사건 처리 흐름도



- ① 수사처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인지통보를 받은 경우, 수사처검사가 범죄에 관한 신문 등 출판물의 기사, 익명의 신고, 풍설, 첨보의 입수 등으로 범죄의 존재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내사사건으로 수리
- ② 진정·탄원·투서 등 진정인·탄원인 등 민원인(진정인)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안(서류)을 접수한 경우 이를 진정사건으로 수리
 - * (다음) ①수사의 단서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익명, 가명, 허무인(虛無人) 명의의 진성서·탄원서 등 수사를 개시하기 어려운 사항 ② 수사처 소속 공무원에 관한 사항 ③ 수사처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사항 ④ 편파적인 조사 등에 대한 시정을 희망하는 사항 ⑤ 병합수사나 이첩을 요구하는 사항 ⑥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한 사항 ⑦ 그 밖에 제①~ 제⑥까지의 사항과 유사한 사항
- ③ 고소 또는 고발사건으로 제출된 서류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진정사건으로 수리 가능
 - * (다음) ①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② 피고인 또는 피고발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취소된 경우 ③ 고소 또는 고발이 본인의 진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④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이중으로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



- ① 내사 또는 진정사건으로 구분하여 수리
 - * (내사사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피내사자의 인적사항 등 해당 사항을 전산입력하고, 내사사건 수리서를 출력한 후 내사사건기록 앞에 첨부하여 수리한 다음, 별지 제14호서식의 내사사건부에 해당사항 기록
 - * (진정사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진정인·피진정인의 인적사항 등 해당사항을 전산입력하고, 진정사건 수리서를 출력한 후 진정사건 기록 앞에 첨부하여 수리한 다음, 별지 제15호서식의 진정사건부에 해당사항 기록
- ② 내사 및 진정사건 번호는 제14조제3항을 준용
- ③ 내사 및 진정사건의 단위 및 수리절차는 제12조제2항, 제3항을 준용



① [내사사건 처리]

- ① (입건) 내사사건부의 비고란에 공직범죄사건번호 기재
- ② (입건유예) 범죄의 혐의는 있으나 입건할 필요가 없는 경우
- ③ (혐의 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 ④ (내사중지) 피내사자 또는 참고인 등의 소재불명으로 내사 불능인 경우
- ⑤ (수사불개시)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다른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를 개시하지 않을 것을 회신하는 경우
- ⑥ (조사사건 등록) 내사사건부의 비고란에 조사사건번호 기재
- ⑦ (이첩)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첩한 경우

② [진정사건 처리]

- ① (공람종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람종결
 - * (다음) ① 3회 이상 반복 진정하여 이미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진정과 같은 내용인 경우 ② 진정인이 이름을 적지 않거나 또는 거짓 이름으로 진정한 경우 ③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④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⑤ 단순한 풍문이나 인신공격적인 내용인 경우 ⑥ 완결된 사건 또는 재판에 불복하는 내용인 경우 ⑦ 특정사건과 관련 없는 청원 또는 정책건의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 ⑧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인 경우 ⑨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 ⑩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취소된 경우
 - ② (법원이첩)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내용인 경우
 - ④ (기록편철) 수사처검사 및 수사관이 조사·검토 중인 사건에 대한 내용인 경우
 - ⑤ (다른 기관 이첩) 다른 수사기관이 조사 중이거나 법원·검찰청·군검찰부 외의 다른 기관의 소관사항에 관한 것인 경우
 - ⑥ (내사사건에 준하여 처리) 제1항 각호에 준하는 경우
 - ⑦ (그 밖에 진정 종결) 제①~⑤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진정 사건 종결의 경우
- ③ (수사처검사) 내사사건은 내사사건기록에, 진정사건은 진정 사건기록에 그 요지 및 결정이유를 기재하여 처리
- ④ (사건사무담당직원) 제1항 및 제2항의 처리결과를 내사사건부 또는 진정사건부에 기재
- ⑤ 내사사건 또는 진정사건을 다른 기관으로 이첩하는 경우 별지 제16호 서식의 내사·진정사건 이첩서에 따름



- ① 제36조제1항 및 제2항의 처리결과를 자체 없이 별지 제17호서식의 사건결정결과통지서에 따라 진정인등에게 통지
- ② 제36조제1항제2호·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1항제2호·제3호를 준용하는 경우 한정)의 처리결과를 자체 없이 별지 제18호서식의 사건결정 결과통지서(피진정인·피내사자)에 따라 피진정인 또는 피내사자에게 통지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지로 인해 보복범죄 또는 2차피해등이 우려되는 다음의 경우에는 수사처검사에게 보고하고, 피진정인 및 피내사자에게 미통지 가능
- * (다음) ① 혐의 내용 및 동기, 진정인 또는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통지로 인해 진정인 또는 피해자의 생명·신체·명예 등에 위해 또는 불이익이 우려되는 경우 ② 사안의 경증 및 경위, 진정인 또는 피해자의 의사, 피진정인·피내사자와의 관계, 분쟁의 종국적 해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통지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조사사건의 처리 흐름도



- 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조사사건으로 수리
- * (다음) ① 수사의 단서로 수사를 개시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관한 서류(진정인·단원인 등 민원인이 있는 서류로 한정)를 접수 한 경우 ② 내사사건 진행 중 제36조제1항제6호에 따라 등록한 경우 ③ 진정사건 진행 중 제36조제2항제5호(같은 조 제1항제6호를 준용한 경우로 한정)에 따라 등록한 경우 ④ 다른 기관으로부터 범죄에 대한 수사를 의뢰받은 경우 ⑤ 그 밖에 ①~④까지에 준하는 경우

② 수사처검사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사건사무 담당직원은 조사사건으로 수리

 - * (다음) ①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점유하는 방실(傍室)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을 제외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청구하는 경우 ②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등 형사소송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장(체포·구속영장 및 제1호에 따른 압수·수색·검증 영장은 제외) 또는 허가를 청구하는 경우 ③ 현행범인을 체포·인수한 경우



- ① 조사사건을 수리하는 경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피의자의 인적사항 등 해당사항을 전산입력하고, 조사사건 수리서를 출력한 후 조사기록 앞에 첨부하여 수리한 다음, 별지 제19호서식의 조사사건부에 해당사항을 기록
- ② 조사사건과 관련하여 압수물이 있는 경우, 이를 압수물 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 압수물수리절차를 취하도록 조치
- ③ 조사사건의 번호는 제14조제3항을 준용
- * 이 경우 접수연도와 접수번호는 “○년 조사 제○호”로 표시
- ④ 조사사건의 단위, 수리 전 점검, 지휘·감독 등에 관해서는 제12조제2항·제3항, 제13조, 제15조 준용



- ① 다음의 구분에 따라 조사사건 처리
- * (다음) ① (입건) 조사사건부의 비고란에 공직범죄번호기재
 - ② (입건유예) 범죄의 혐의는 있으나 입건할 필요가 없는 경우
 - ③ (혐의 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제27조제1항제3호나목부터 라목 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
 - ④ (조사중지)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의 소재불명으로 조사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 ⑤ (각하) 제27조제1항제3호마목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⑥ (이첩)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첩한 경우
-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처리결과를 조사사건부에 기재
- * 이 경우 피조사자가 공직범죄사건으로 입건된 경우에는 공직범죄 사건부에 조사사건번호를, 조사사건부에는 공직범죄사건 번호를 각각 기록
- ③ 조사사건을 다른 기관으로 이첩한 경우, 별지 제20호 서식의 조사사건 이첩서에 따름



- ① 제40조제1항의 처리결과 통지에 관해서는 제37조를 준용
- * 이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의 사건처분결정결과통지서(조사)에 따름

4. 행정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

가. 정보공개청구서 접수(공수처 행정정보공개지침, 예규 제31호제13조)

- ① 운영지원담당관실에서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자체 없이 처리주체인 처리(소관)부서로 이송

나. 정보공개의 처리(공수처 행정정보공개지침, 예규 제31호제14조)

- ① 청구서를 이송 받은 처리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
- ②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결정기간 연장 가능
 - 이 경우 연장된 사실과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다. 정보공개 방법(공수처 행정정보공개지침, 예규 제31호제15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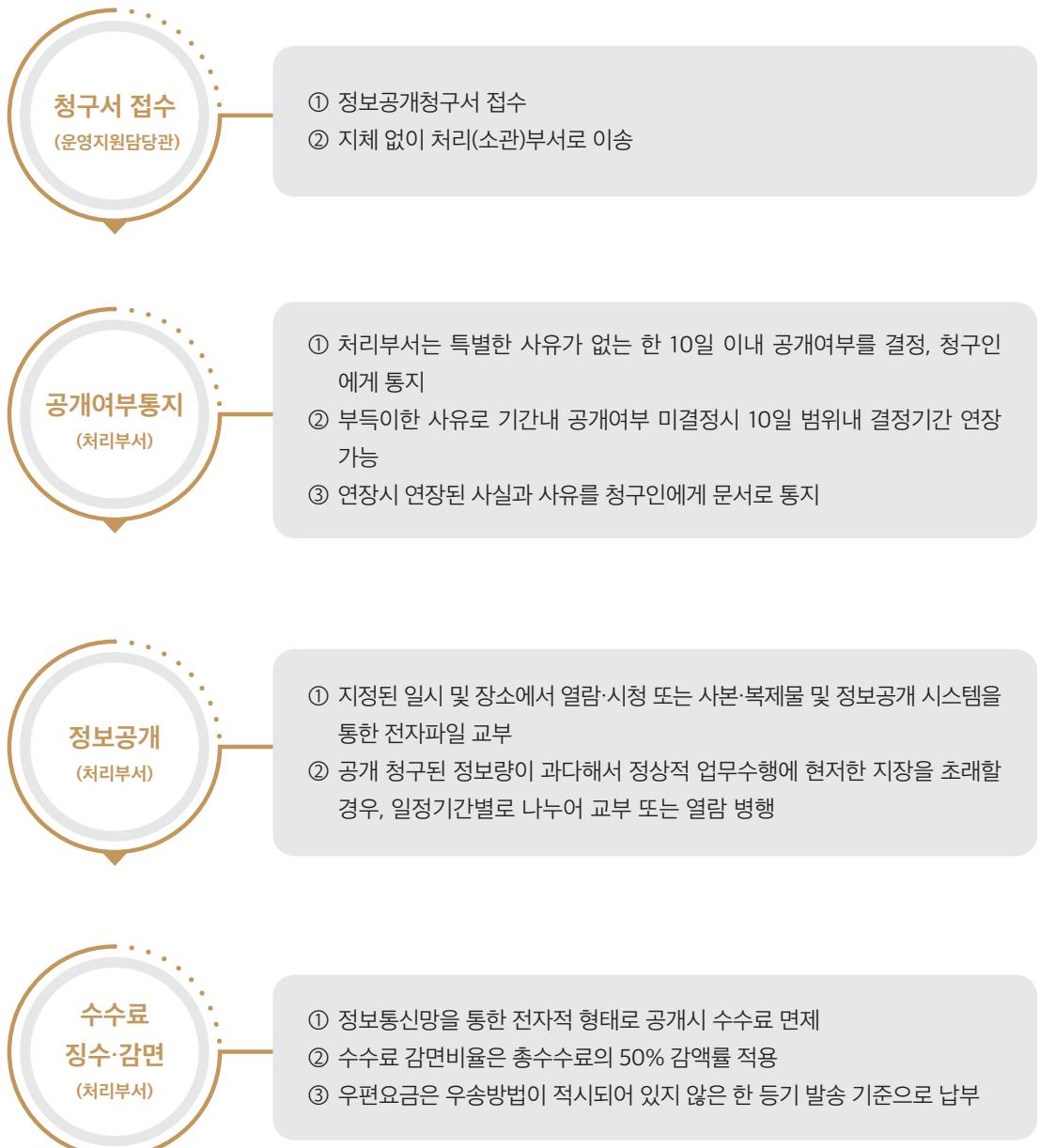
- ① 정보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신청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 및 정보공개시스템에 의한 전자파일로 교부
- ② 공개 청구된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 또는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

라. 수수료 징수 및 감면(공수처 행정정보공개지침, 예규 제31호제19조)

-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적 형태로 공개 시 수수료 면제(다만, 법 제15조제2항의 경우에는 예외)
- ② 영 제17조제5항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의 감면비율은 총수수료의 50% 감액률 적용
- ③ 우편요금은 정보공개청구서 등에 특별히 우송방법이 적시되어 있지 않은 한 등기발송 기준으로 납부



① 행정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 흐름도



I.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란?

II. 내부고발(신고) 요령

III. 내부고발자 보호

IV. 내부고발·보호 업무처리

V. 관련 서식·법규

2 내부고발자 보호·보상 업무처리

1.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

수사처의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는 비밀보호, 신변보호, 신분보호(책임감면), 포상금 및 구조금 지급 등이 있다.

내부고발자가 내부고발로 인한 비밀보호, 신변안전조치, 의견제시, 포상금 또는 구조금 등에 관해 방문, 우편, 전화, 전자문서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상담요청을 하는 경우 그 내용과 조치사항 등을 확인해야 한다.

내부고발 관련 협조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업무(『대통령령』 제12조) 관련 절차는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내부고발자 비밀보호

▶ 공수처의 직원(파견자 및 일용직 포함)은 내부고발자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해서는 안 됨

1. 내부고발자의 성명·연령·주소·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인적사항
2. 내부고발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진술내용 및 증빙자료 등
3. 신변안전조치와 관련된 사항
4. 보상금 및 포상금 신청·지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내부고발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

* 『고위공직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공수처고시 제2021-1호, 제2장)

[내부고발자보호 책임관]

- ① 수사처에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 상담·접수·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내부고발자보호책임관(이하 “책임관”)을 둔다.
- ②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처장”)은 사건관리담당관 또는 4급 이상 수사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책임관을 지정한다.
- ③ 책임관은 내부고발자 보호와 관련하여 상담하거나 처리한 내용에 대해 비밀누설을 금지한다.

[신분공개경위 확인요청의 접수 등]

- ① 책임관은 내부고발자가 내부고발에 대한 수사·소송 및 내부고발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의 절차에서 내부고발자의 인적사항이나 내부고발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거나 공개되었다는 이유로 처장에게 신분 공개경위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신분공개경위 확인요청서(이하

“확인요청서”)에 신분공개경위확인을 요청하는 사람(이하 “요청인”)의 인적사항, 요청사유 및 요청내용 등을 기재한 후 제출을 요청한다.

- ② 확인요청서는 방문·우편·모사전송·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접수 가능, 다만 우편·모사전송·전자문서 등으로 확인요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책임관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요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
- ③ 책임관은 확인요청서를 접수 순서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의 신분공개경위 확인요청서 접수처리부에 기재 및 관리한다.
- ④ 책임관은 확인요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고 요청인에게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한다.
- ⑤ 책임관은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이하 “영”) 제2조에 따라 비실명 대리인의 방법으로 내부고발자가 제1항에 따라 신분공개 경위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내부고발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비실명 대리신고 봉인자료 열람동의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1. 내부고발 대리에 관한 위임장
 2. 내부고발자임을 확인하는 비실명 내부고발 대리 변호사의 확인서
- ⑥ 책임관은 제5항에 따라 요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봉인자료(영 제2조제4항에 따라 수사처가 봉인·보관하고 있는 내부고발자의 인적사항, 내부고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을 말함) 관리책임자(사건관리담당관실 소속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봉인자료 열람대장에 열람자를 기재한 후 봉인자료 관리책임자의 입회 하에 봉인자료를 열람하여 요청인과 내부고발자의 동일인 여부를 확인한다.
- ⑦ 책임관은 제6항에 따른 열람 결과 요청인과 내부고발자의 동일인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신분공개 확인요청을 종결한다.

[대표자 선정]

- ① 책임관은 동일한 내부고발로 인한 요청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명을 대표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의 대표자 선정서를 처장에게 제출)
- ② 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대표자가 해당 신분공개경위 확인요청 사건의 처리에 관한 행위를 하도록 할 수 있다.(만약, 제8조제1항에 따라 해당 요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하는 서면에 요청인들의 동의서를 붙여 제출)
- ③ 책임관은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 요청인들이 제1항에 따른 대표자를 통해 해당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하도록 한다.
- ④ 책임관은 요청인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대표자를 해임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처장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통보한다.
- ⑤ 책임관은 대표자와 요청인들을 상대로 확인요청서 및 대표자 선정서 등의 기재내용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대표자 선정 등이 허위인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

[대리인 선임 등]

- ① 책임관은 요청인이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신분공개경위 확인을 요청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자체 없이 별지 제7호 서식의 대리인 선임신고서를 처장에게 제출)
1. 요청인의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요청인이 법인 등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
 3. 변호사
 4.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해당 요청인의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
- ② 제1항의 경우 책임관은 요청인으로 하여금 위임사실과 범위 등을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서면으로 증명하도록 요청한다.
- ③ 책임관은 요청인이 대리인 선임을 철회하거나 다른 대리인으로 변경한 경우, 그 사실을 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요청한다.
- ④ 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이 신분공개경위 확인요청에 대한 사실관계와 주장, 수사청에서 송달한 문서의 수령 등 일체의 행위를 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대리권의 범위를 명시한 경우, 그 범위에서 대리행위를 하도록 할 수 있음)
- ⑤ 책임관은 대리인에 흠이 있는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대리권을 수여한 요청인이 추진한 경우에는 대리권의 흠이 없어진 것으로 할 수 있다.
- ⑥ 책임관은 요청인과 대리인을 상대로 확인요청서와 대리인 선임 신고서 등의 기재내용 등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위임관계 등이 허위인 경우 이를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

[보완의 요구]

- ① 책임관은 확인요청서의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되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요구가 가능하다.(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확인요청서 등에 의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완요구를 하지 않아도 됨)
- ② 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요청인이 그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차에 한해 다시 보완요구를 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도 보완하지 않을 경우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

[신분공개경위 확인요청의 취소]

- ① 책임관은 요청인이 신분공개경위 확인요청을 취소하려는 경우 서면으로 제출 요청한다.
- ② 책임관은 요청인이 제1항의 서면을 제출한 경우, 신분공개경위 확인요청 사건을 종결 처리한다.
- ③ 책임관은 요청인이 확인요청서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그 사본을 보관하고 원본을 반환한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책임관은 요청인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이 알려지거나 공개된 사실이 명백한 경우 이를 조사·처리 할 수 있다.(이 경우 책임관은 그 내용을 요청인에게 자체 없이 통보)

[비밀보호 의무 위반 등의 조사·확인]

- ① 책임관은 인권감찰관에게 확인요청서를 인계하고, 인권감찰관은 확인요청서를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조사에 착수한다.
1. 요청인 및 관련자 등에 대한 출석요구, 진출청취 및 진술서의 제출 요구
 2. 요청인, 관련자 및 관계기관·법인·단체에 대한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3. 요청인, 관련자 및 관계기관·법인·단체에 대한 관련 사실 및 정보에 대한 조회
- ② 인권감찰관은 내부고발자에 따른 수사 또는 형사절차에서 내부고발자의 인적사항 등이 공개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내부고발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신속하게 그 경위 및 비밀보호 의무 위반 여부 등을 조사·확인한다.

[출석요구·출장조사]

- ① 인권감찰관은 요청인 및 관련자에게 제9조제1항제1호의 출석요구를 하는 경우, 출석 일시 및 장소 등을 출석일 7일 전까지 문서로 통보한다.(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조사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음)
- ② 처장은 관련자가 제1항의 출석요구에 따라 수사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여비 등의 지급이 가능하다.
- ③ 인권감찰관은 요청인, 관련자, 관계기관·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출장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권감찰관 소속 공무원(이하 “조사관”)으로 하여금 출장조사가 가능하다.
- ④ 조사관은 수사처 외의 장소에서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한다.
- ⑤ 조사관은 수사처 외의 장소에서 진술서 또는 진술조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 내부고발자의 비밀보호를 위해 정보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한 수사처의 컴퓨터 등 관련 장비를 활용한다.

[진술서 등의 작성]

- ① 조사관은 요청인 또는 관리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한 때에는 요청인 또는 관련자로 하여금 별지 제8호 서식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고, 증거서류나 참고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진술서에 기재하여 첨부한다.
- ② 조사관은 제1항에 따른 진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진술인의 인적사항과 취지, 이유 및 구체적인 내용 등의 기재를 요청한다.
- ③ 조사관은 필요한 경우, 별지 제9호 서식의 진술조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전화 등의 방법으로 진술을 청취하는 등 진술서 제출요구나 진술조서 작성 등이 곤란한 경우, 별지 제10호 서식의 진술청취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 ④ 조사관이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진술서나 진술조서 등을 제출받았거나 작성한 경우, 인권감찰관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신분공개 경위 확인 요청의 처리]

- ① 처장은 확인요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비밀보호 의무 위반자 또는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징계권자에게 해당 위반사실을 통보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② 인권감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분공개 경위 확인서를 종결 처리하고, 그 결과를 요청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1. 내부고발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내부고발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내부고발을 한 경우
- 내부고발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 등을 요구한 경우
-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내부고발을 한 경우

2. 내부고발자가 신분의 공개에 동의한 경우

3. 그 밖에 신분공개 경위 확인요청 내용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처리기간에서 제외한다.

1. 요청서의 보완에 필요한 기간(보완요청서를 요청인에게 발송한 날과 보완한 자료가 수사처에 도달한 날 포함)
2. 전문가의 자문 등 특별한 추가절차를 거치기 위해 부득이하게 필요한 시간
3. 요청인의 불출석 등 요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연되는 기간
4. 국내·외국기관 및 재외공관 등에의 조회에 필요한 기간

[비밀보호 의무 위반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인권감찰관은 비밀보호 의무 위반자 또는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위반사실 통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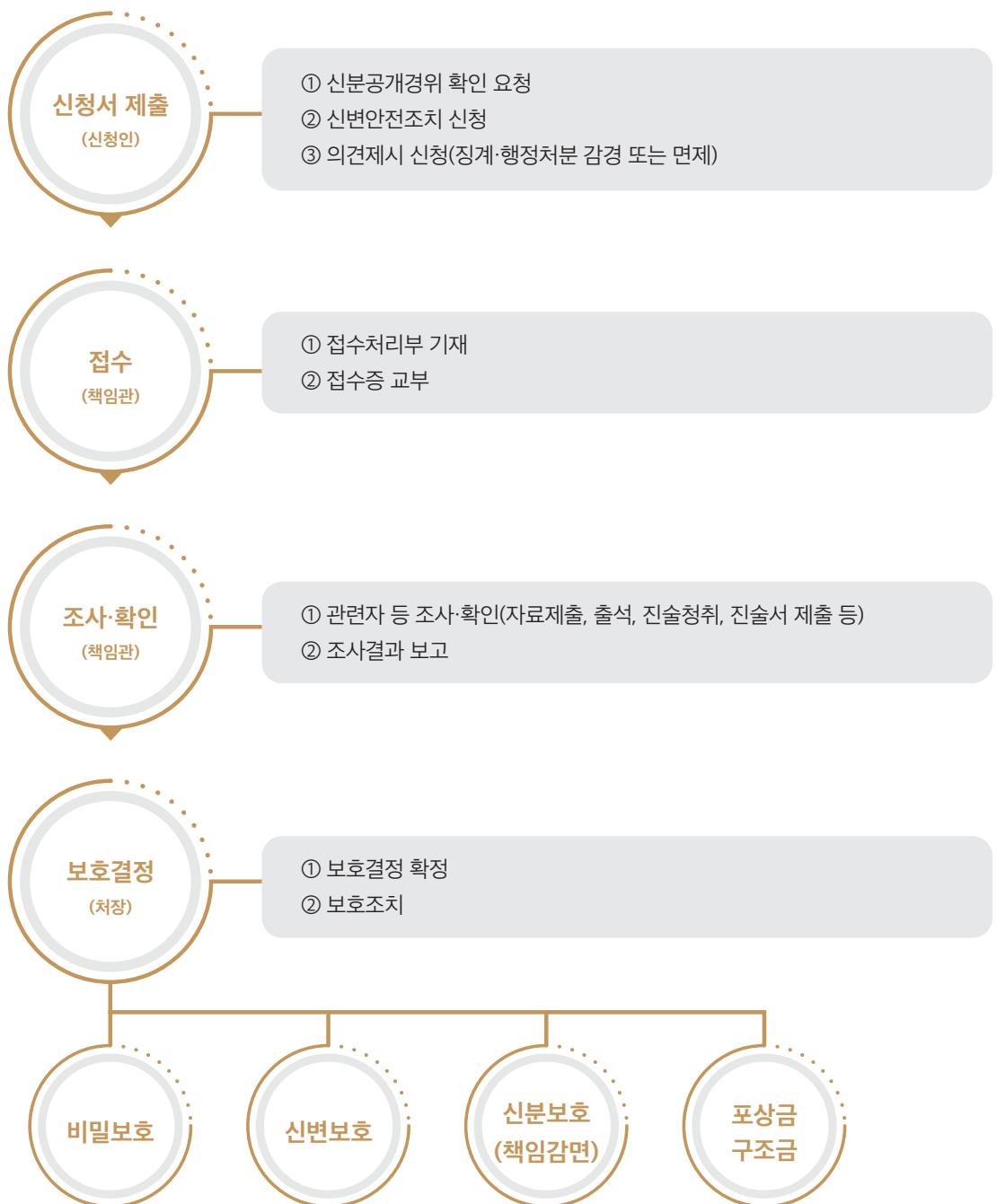
1. 신분공개 경위 확인 요청의 내용
2. 제1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내부고발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여부 및 그 경위
4. 비밀보호 의무 위반 여부 및 위반사실 통보 필요성

② 인권감찰관은 처장이 비밀보호 의무 위반자의 위반 사실 통보를 결정하면 해당 징계권자에게 위반사실을 통보하고, 이에 대한 처리결과를 수사처에 통보토록 조치한다.

③ 인권감찰관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요청인에게 자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한다.



① 내부고발자 보호업무 처리 흐름도



I.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란?

II. 내부고발(신고) 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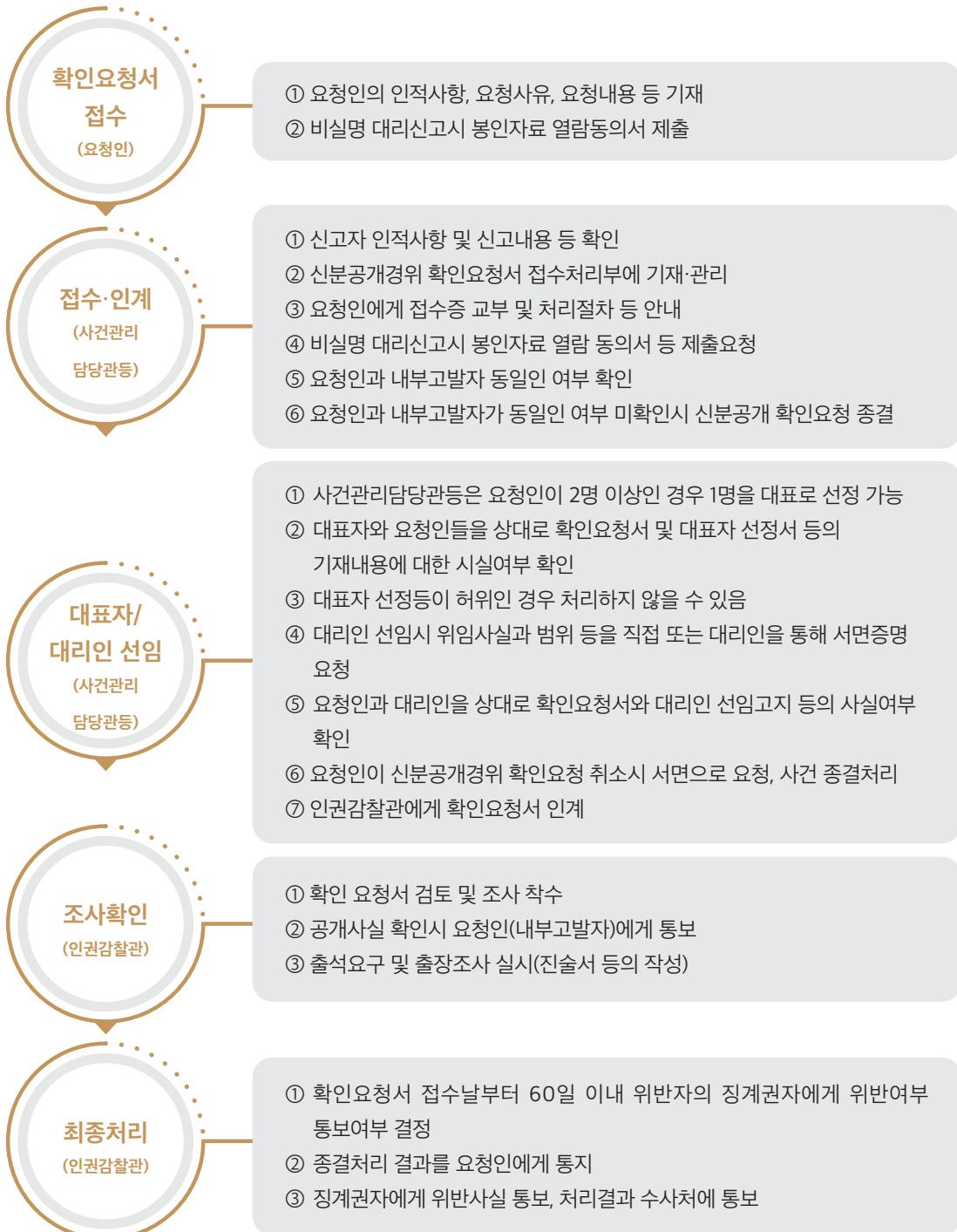
III. 내부고발자 보호

IV. 내부고발·보호 업무처리

V. 관련 서식·법규



② 신분공개경위 확인요청 처리 흐름도



신변 안전 조치

- ▣ 고위공직자범죄등의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는 신고자 주변에 가해지는 심리적·물리적 위험상황을 사전에 예방 및 제거하기 위한 예방적 보호수단으로서 긴급성과 신속 대응성을 주요 특징으로 한다. 신고자와 협조자, 그 친족과 동거인은 내부고발 등을 이유로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수사처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사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고위공직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공수처고시 제2021-1호, 제3장)

[신변안전조치 신청의 접수]

- ① 수사처검사는 내부고발자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내부고발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하여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안전조치")를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의 신변안전조치 신청서에 신청인과 신변보호가 필요한 대상자의 인적사항, 신청사유, 신청내용 등을 기재하여 제출을 요청한다.
- ② 수사처검사는 접수받은 신변안전조치 신청서를 책임관에게 지체 없이 인계한다.
(이 경우 책임관은 인계 받은 순서에 따라 별지 제12호 서식의 신변안전조치 신청서 접수처리부에 기재 및 관리)
- ③ 수사처검사는 긴급한 사유가 있어 구두나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변안전조치 신청을 접수한 경우,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변안전조치 신청서 제출을 요청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신변안전조치 신청서의 접수방법, 접수증 교부 및 비실명 대리의 방법으로 내부고발자의 신변안전조치 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이 경우 책임관은 수사처검사로 봄)
- ⑤ 신청인의 대표자 선정, 대리인 선임, 신변안전조치 신청서의 보완 및 신청 취소 등에 관해서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이 경우 책임관은 수사처검사로 봄)

[신변안전조치 신청 처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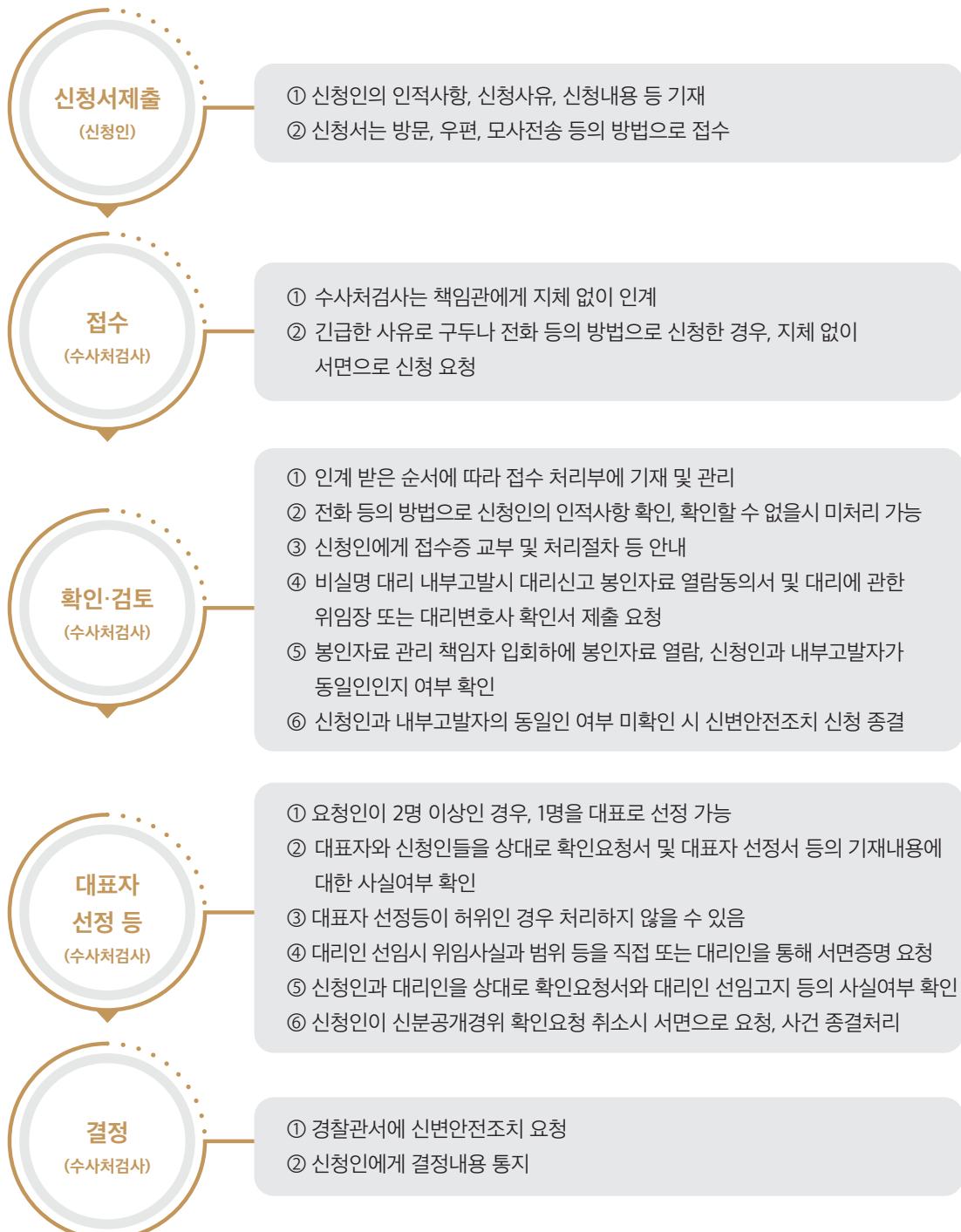
- ① 수사처검사는 수사처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이하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서면으로 즉시 요청하고, 그 조치결과를 수사처에 통보하도록 조치 한다.(다만, 긴급한 경우 경찰관서의 장에게 구두나 유선으로 요청하고, 사후에 서면으로 알릴 수 있음)
- ② 수사처검사는 경찰관서의 장이 신변안전조치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어 수사처검사와 협의 후 신변안전조치를 해제하려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와 종료기간 및 내용을 통보 요청한다.
- ③ 수사처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변안전조치 신청을 종결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1. 해당 내부고발이 제1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해당 신청사항이 내부고발과 관련이 없는 경우
 3. 신변안전조치 신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신변보호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4. 그 밖에 신청내용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
- ④ 신변안전조치 신청의 조사·확인 및 처리기간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수한다.





③ 신변 안전 조치 흐름도



I.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란?

II. 내부고발(신고) 요령

III. 내부고발자 보호

IV. 내부고발·보호 업무처리

V. 관련 서식·법규

신분보호(책임감면) 의견제시

▶ 고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한 내부고발 및 내부고발에 대한 수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것과 관련하여 내부고발자 및 협조자의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행정기관이 내부고발자에게 징계 또는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 징계권자 또는 행정처분권자에게 수사처의 의견을 제시(통보)함으로써 신고자 및 협조자 등의 신분을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첫째, 내부고발자나 협조자가 상급자의 지시 등으로 부득이하게 위법행위에 가담한 것일 수도 있고, 둘째, 내부고발로 인하여 과거에는 발견할 수 없었던 고위공직자의 범죄가 드러난 것으로 자진 신고 유도를 통해 범죄행위 적발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징계나 행정처분에 대한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 「고위공직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공수처고시 제2021-1호, 제4장)

[의견제시 신청 처리 등]

- ① 의견제시 신청의 처리기간은 제13조 제1항을 준용한다.
- 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견제시 신청을 종결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1. 해당 내부고발이 제1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해당 위법행위 등이 내부고발과 관련이 없는 경우
 3. 의견제시 신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의견제시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4. 그 밖에 의견제시 신청내용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

[징계 또는 불리한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제시]

- ① 책임관은 내부고발자의 징계 또는 불리한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제시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한다.
 1. 의견제시 신청의 내용
 2. 내부고발이 제1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위법행위 등이 내부고발과 관련되는지 여부
 4. 내부고발자에 대한 징계 또는 불리한 행정처분의 사유 및 진행단계
 5. 징계 또는 불리한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에 대한 의견제시 필요성 등
- ② 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① 신분보호(책임감면) 의견제시 흐름도



- ①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및 직급, 전화번호, 우편주소 기재
- ② 신청인과 관련된 내부고발의 접수일자, 접수번호, 신고내용 요지 기재
- ③ 내부고발 또는 그에 따른 수사·소송 등과 관련, 징계절차 또는 불리한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 등 의견제시 신청사유, 신청내용, 증빙자료 기재
- ④ 신청서는 방문, 우편,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접수



- ① 신청서 순서에 따라 접수 처리부에 기재 및 관리
- ② 신청인에게 접수증 교부 및 처리절차 등 안내



- ① 의견제시 신청의 내용 검토
- ② 신청내용이 징계 또는 불리한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에 대한 의견제시 필요성 검토



- ① 내부고발 관련 징계 또는 불리한 행정처분권자에게 의견 제시
- ②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결정내용 통지

I.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란?

II. 내부고발(신고) 요령

III. 내부고발자 보호

IV. 내부고발·보호 업무처리

V. 관련 서식·법규



Q & A



Q

- 내부고발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직자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노출한 것은 아니나, 정황상 피신고자가 신고자의 신분을 스스로 미루어 짐작한 경우 비밀보장 의무규정 위반에 해당하는가?

A

「대통령령 제30831호」 제5조에서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된 내부고발자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내부고발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해서는 안되며, 다만, 내부고발자가 동의한 때에는 그렇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내부고발자의 신분이 공개되어 내부고발등을 이유로 보복이나 그 밖의 불이익조치를 받는 것을 방지하고,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피신고자가 스스로 정황상 내부고발자의 신분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경우까지 비밀보장 의무 규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Q

- 내부고발자가 내부고발을 한 것을 이유로 조직 내에서 징계·해고 등의 불이익조치를 받았다면 보호대상인가?

A

공수처법 제46조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고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한 정보를 수사처에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수사처는 내부고발자에게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보호조치 및 지원행위할 수 있고,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 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0831호)에서는 내부고발자가 불이익조치를 받았을 경우에 대한 별도의 보호조치 규정이 없다.

그러나, 내부고발이 「부패방지권익위원회법」에 따른 부패신고 내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에 해당하고, 부패·공익신고를 이유로 징계·해고 등 불이익조치를 받았다면 해당 법률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공익신고는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권익위에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하도록 내부고발자에게 안내할 필요가 있다.

권익위의 조사결과 부패 「공익신고를 이유로 징계·해고 등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 권익위는 소속기관장등에게 신고자에 대한 원상회복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권익위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 및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된다.

포상금·구조금 지급

- ▶ 포상금은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저지른 자가 내부고발로 인해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을 받으면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 구조금은 내부고발자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내부고발로 인하여 중대한 경제적 손실 또는 정신적 고통 등을 받았을 때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영」 제8조, 제9조

[포상금 지급기준]

- ① 포상금은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 집행유예의 여부, 형의 선고, 형의 종류와 경중 또는 기간과 금액을 고려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한다.(별표1 참조)
- 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포상금을 산정한다.
 1. 영 제8조제1항 본문 및 이 지침 별표1의 포상금 지급기준 중 포상금 산정 관련 사항
 2. 영 제8조제2항 및 이 지침 별표1의 포상금 지급기준 중 포상금 감액 관련 사항
 3.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지급제한 사항
 4. 영 제9조에 따른 구조금 및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포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지급 및 신청 여부

[포상금 신청 및 의견 청취]

- ① 책임관은 내부고발자가 「영」 제8조에 따른 포상금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15호 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에 신청인의 인적사항, 신청이유, 「영」 제9조에 따른 구조금 및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포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수령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요청한다.
 1.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2. 내부고발 내용 및 관련 수사·소송 등에 관한 자료 사본
 3. 그 밖에 포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 ② 책임관은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접수순서에 따라 별지 제6호 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 접수처리부에 기재 및 관리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신청서의 접수방법 및 접수증 교부 등에 관해서는 제4조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④ 포상금 신청인의 대표자 선정, 대리인 선임, 포상금 지급 신청서의 보완 및 신청 취소 등에 관해서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 규정을 준용한다.
- ⑤ 책임관은 제21조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신청인 또는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구조금 지급]

① 처장은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금 지급이 가능하다.

1.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진찰·입원·투약·수술 등의 비용
2. 전직·파견근무·신변안전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3. 내부고발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4. 파면·해임·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5. 그 밖에 내부고발로 인하여 발생한 중대한 경제적 손해

② 처장은 「영」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조에 따른 내부고발자구조심의위원회 심의 전에 구조금을 우선 지급한다.

1. 신청인이 내부고발로 인해 파면·해임·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2. 신청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처장이 긴급한 피해의 구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나 비용지출은 내부고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에 한정한다.

④ 내부고발자는 제1항 각 호의 지급사유가 있는 때에는 처장에게 구조금의 지급 신청이 가능하다.

⑤ 내부고발자들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제1항 각 호의 피해 또는 비용지출을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그 금액의 범위에서 구조금을 미지급 한다.

[구조금 신청]

① 책임관은 내부고발자가 「영」 제9조에 따라 구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17호 서식의 구조금 지급신청서에 신청인의 인적사항, 내부고발 내용, 내부고발로 인한 피해 또는 지출비용, 「영」 제8조에 따른 포상금 및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포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수령 여부, 구조금 지급신청 금액 및 신청인이 구조금을 수령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을 요청한다.

1.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2. 신청인이 구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예금통장 사본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제2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
4. 그 밖에 구조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② 책임관은 구조금 지급신청서의 접수순서에 따라 별지 제18호 서식의 구조금 지급신청서 접수처리부에 기재 및 관리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구조금 지급 신청서의 접수방법, 접수증 교부 및 비실명 대리의 방법으로 내부고발자의 구조금 지급신청 등에 관해서는 제4조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구조금 신청인의 대표자 선정, 대리인 선임, 구조금 지급신청서의 보완 및 신청 취소 등에 관해서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구조금 대상 가액 등]

① 제23조의 구조금 지급항목에 따른 구조대상가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다만, 외국에서 치료를 받은 비용은 국내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치료를 하는 경우 그에 상당한 비용으로 함
 - 진찰료
 - 일반병실의 입원료 및 환자 식대, 다만, 진료상 필요로 일반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에 입원한 경우나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병실의 입원료 지급 가능
 - 처치·투약·수술 등 치료에 필요한 비용
 - 의지(의지)·의치·안경·보청기·보철구 그 밖에 치료에 부수하여 필요한 기구 등의 비용
 - 호송·전원·퇴원 및 통원에 필요한 비용
 2. 전직·파견근무, 신변안전조치 등으로 인해 거주지 등을 옮기는데 소요된 이사비용(이사화물 포장 및 운반비용, 이사과정에서 발생한 본인 및 가족의 숙박비,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중개보수 등 직접적·간접적으로 이사에 필요한 비용), 다만 이사과정에서 발생한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의 숙박비 상한액 준용
 3. 그 밖에 「영」 제11조에 따른 내부고발자구조심의위원회가 내부고발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물리적 피해를 입었거나 이로 인한 비용을 지출했다고 인정하는 금액
- ② 제1항의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불특정 다수인 간의 거래에서 자유롭게 형성되는 시장거래 실례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에 따른다.

[구조금의 산정기준 등]

① 구조금을 산정하는 경우, 제25조의 지급사유별 실제 소요된 비용 중에서 별표2의 기준을 고려한다.

② 별표2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제25조제1항제1호의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5조의 요양급여의 산정에 준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③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사비용은 내부고발을 한 후 1년 이내에 거주지 등을 옮기는 경우에 지급한다.(다만, 내부고발을 한 후 1년이 지나서 신분이 노출되거나 수감되었던 피고발인이 출소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④ 책임관은 구조금을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제25조에 따른 구조대상가액 산정
 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조금의 산정기준 적용
 3. 「영」 제8조에 따른 포상금 및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포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지급대상 여부
- ⑤ 구조금 지급신청에 대한 검토, 의견청취 등에 관해서는 제22조를 준용한다.

[내부고발자구조심의위원회 운영]

- ① 심의사항은 포상금 및 구조금 지급요건, 지급액, 지급시기,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의 적정성, 그 밖에 포상금 및 구조금 제도 등에 대해 운영한다.
- ② 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내부고발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③ 위원회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에 관여가 불가 하다.
 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친족 또는 동거인이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증언·감정·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
- ④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이 가능하다.(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피 여부 결정)
- ⑤ 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하는 자가 있는 경우 간사는 그 신청일부터 3일간이내에 기피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게 해야 하며, 그 사유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기피대상이 된 위원에게 통보한다.
- ⑥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지체 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 ⑦ 위원은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공정한 심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스스로 심의 회피가 가능하다.
-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30조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포상금 및 구조금의 지급절차]

- ① 포상금의 지급결정 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 구조금은 1개월 이내에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을 기초로 지급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다.(다만,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간연장이 가능하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
- ② 포상금 및 구조금 지급절차는 지급결정을 한때는 책임관은 그 내용을 별지 제19호 서식의 포상금 결정통지 또는 별지 제20호 서식의 구조금 결정 통지서를 지급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한다.
- ③ 포상금 및 구조금의 지급시기는 포상금의 경우 「영」 제8조에 따라 내부고발로 인하여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저지른 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 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하며, 구조금은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지급한다.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 ① 내부고발자 보호 및 포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업무와 관련된 수사처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정한 업무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직급상급자에게 알리고 해당 업무를 회피한다.
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친족 또는 동거인이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② 제1항의 수사처 직원은 지연이나 학연 등으로 공정한 업무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급상급자의 허가를 받아 해당 업무 회피가 가능하다.



I.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란?

II. 내부고발(신고) 요령

III. 내부고발자 보호

IV. 내부고발·보호 업무처리

V. 관련 서식·법규



① 포상금 지급업무 흐름도



- ①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우편주소, 내부고발자 외의 관계 등 기재(신분증 사본 첨부)
- ② 내부고발 접수일자, 접수번호, 고발내용 기재(관련자료 사본 첨부)
- ③ 내부고발로 인하여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저지른 자에 대한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 체크, 포상금 신청사유 기재
- ④ 동일한 내부고발을 이유로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른 구조금, 다른 법령상의 보상금·포상금·구조금을 청구 또는 수령한 사실여부 체크
- ⑤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금융기관명과 계좌번호 기재



- ① 포상금 지급 신청서 접수처리부에 기재 및 관리
- ② 신청인에게 접수증 교부 및 처리절차 등 안내



- ① 신청자 기재사항 및 신청내용 등 검토
- ② 필요시 신청인 또는 관계인 의견 청취
- ③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



- ① 포상금 지급요건, 지급액, 지급시기에 관한 심의
- ② 심의에 필요한 이해관계인 등의 출석요구 가능



- 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 결정
- ② 책임관은 포상금 결정 통지서를 지급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
- ③ 책임관은 포상금 지급가능 시기 확인, 재무관에게 지급 의뢰
 - * 지급시기는 형의 선고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
 - * 포상금 지급액은 당해 연도 예산범위 내, 단, 부족시 다음연도 예산에서 지급



② 구조금 지급업무 흐름도



①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우편주소, 내부고발자 외의 관계 등 기재(신분증 사본 첨부)

② 내부고발 접수일자, 접수번호, 고발내용 기재(관련자료 사본 첨부)

③ 내부고발로 인하여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저지른 자에 대한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 체크, 구조금 신청사유 기재

④ 동일한 내부고발을 이유로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른 구조금, 다른 법령상의 보상금·포상금·구조금을 청구 또는 수령한 사실여부 체크

⑤ 구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금융기관명과 계좌번호 기재

① 구조금 지급 신청서 접수처리부에 기재 및 관리

② 신청인에게 접수증 교부 및 처리절차 등 안내

① 신청자 기재사항 및 신청내용 등 검토

② 필요시 신청인 또는 관계인 의견 청취

③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

① 구조금 지급요건, 지급액, 지급시기에 관한 심의

② 심의에 필요한 이해관계인 등의 출석요구 가능

① 단, 신청인이 내부고발로 인해 신분상실 또는 긴급한 피해구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내부고발자구조 심의위원회」의 심의 전에 우선 지급 가능

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결정

② 책임관은 포상금 결정 통지서를 지급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

③ 책임관은 포상금 지급 가능 시기 확인, 재무관에게 지급 의뢰

* 지급시기는 형의 선고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

* 포상금 지급액은 당해 연도 예산범위 내, 단, 부족시 다음연도 예산에서 지급

참 고

내부고발자 보호 유의사항 체크리스트

단계	확인사항
상담·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수 신고인 동시 방문 시 분리 상담 • 다수 신고자 상담 중 다른 용무 방문자와의 접촉 차단 • 신고자의 신분공개 동의 여부 확인 • 신고자의 유선으로 신고내용 확인 요청시 접수번호, 생년월일 등 본인 확인 • 신고자 연락가능시간 및 방식, 조사결과 통보방법 등 확인 • 사건 확인을 위한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인 연락 최소화 •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여부 확인 • 보호·지원제도, 처리 절차 및 소요기간 등 신고자에게 안내
사실확인 (수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분공개 동의 여부 재확인, 변경 희망시 신분공개 변경동의서 수령 • 신고자 연락가능시간 및 방식, 조사결과 통보방법 등 재확인 (자택주소, 이메일, 전화, 문자통보 등) • 자료요구 등 조사과정에서의 신분유출 가능성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제출요구 문서 등에 대한 '비공개' 설정 - 외부발송 문서에 신고자 인적사항 등 익명처리 • 담당공직자와 기관 방문 시 담당공직자에게 신고자 비밀보장 안내 • 피신고기관 방문 시 사전에 신고자에게 연락하여 평소와 같이 행동하도록 안내 (재직 중인 경우) • 신고자 면담시 면담장소가 비밀보장에 적합한 장소인지 여부 확인, 외부 컴퓨터 등을 사용한 경우 암호 설정, 데이터 삭제 등 조치 • 신고자 비밀보장을 위해 필요시 신고자가 원하는 시간 및 장소에서 조사 • 신고자 보호 조치 필요여부 확인 • 관련자 면담 과정에서 신고자를 특정할 수 있는 문답 주의
이첩·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첩·송부 시 신고자의 신분공개 동의 여부 재확인 • 신분공개 부동의한 경우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자를 알 수 있는 내용 (면담장소, 증빙자료 등)삭제 • 수사기관에 신고자 보호를 위한 주의사항 및 처벌 규정 고지 • 수사기관 담당자와 신고자간 연락은 수사처 경유(신분공개 부동의시)
수사결과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사결과 보고서에 신고자등임을 알 수 있는 명칭과 표현 등을 익명처리 또는 수정
통보 (결정 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보 전 결정통보 방식 재확인 • 통보 시 제목에 신고인의 성명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 •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안내문 첨부 • 피신고인이 신고인에게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대응방안 적극 검토
이행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조치 이후에도 불이익조치가 계속되는지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리구제 과정에서 신고자 비밀 보장 안내 • 재판과정에서 신고자 비밀 보장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판 검사나 판사가 신고자 보호 규정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안내 필요 • 보도자료 배포시 신고자 및 피신고자의 인적 사항 등 신고자를 알 수 있는 표현 삭제

참 고

내부고발자 비밀보장 관련 유의사항

- ✓ 신고자의 이름, 전화번호 외에도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이 금지됨
 - * (사례)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를 위해 인적사항을 제외한 신고서를 그대로 피신고자에게 보여줬으나 그 신고내용으로 볼 때 신고자가 누구인지 추측할 수 있어 신고자에게 전화하여 신고자임을 확인
- ✓ 신고자와 피신고자 간 **대질조사하거나 타기관이 수사의뢰한 사건의 신고자 인적사항을 제공받을 경우** 신고자 동의 필수
 - * (사례) B기관은 신고자 신분을 익명 처리하여 경찰에 수사 의뢰하였으나, 경찰에서 신고자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B기관 담당자가 신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신고자의 인적사항 제공
- ✓ 신고사건 처리 후 **보도자료** 작성 시 **신고자를 유추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 신고자 유추 가능 정보가 들어갈 경우 신고자 동의 필수
 - * (사례) C기관으로 신고사건을 이첩받아 수사한 D경찰서는 수사결과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신고자의 신분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前 원무부장의 첨보를 입수하여 수사 진행) 포함
- ✓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공개는 **수사를 위해 필요한 범위로 한정**하여야 함
- ✓ **수사서류 열람 · 등사** 시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자를 유추할 수 있는 정보는 반드시 삭제** 필요
 - * (사례) 피신고자가 C지방법원에 제출된 수사서류를 등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 전화번호 노출
- ✓ 신고자 연락 시 **휴대폰으로 가급적 근무시간 외에 연락하고, 직장이 아닌 신고자 자택으로 신고처리결과 등 통지**
- ✓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었거나 신변의 위협이 있는 경우 등 **신고자 보호 필요** 시 수사처에 보호 신청을 할 것을 안내

고위공직자범죄

내부 고발

안내서



V



관련 서식·법규

- | | | |
|-----------------------------|-------|-----|
| 1. 내부고발(신고) 관련 서식 | | 117 |
| 2.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관련 기준·서식 | | 133 |
| 3. 관련 법규 | | 167 |

고위공직자범죄

내부 고발

안내서



1. 내부고발(신고) 관련 서식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안내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 관련 조서 · 신원관리카드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서식】

내 부 고 발 신 고 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처리기간	30일
------	--	------	--	------	-----

신고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직업	

피신고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직업	

내부고발 취지 및 이유	
-----------------	--

내부고발 내용	
------------	--

증거자료 등 첨부서류	
----------------	--

위와 같이 피신고자의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고 위 공 직 자 범 죄 수 사 처 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 관련 조서 · 신원관리카드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 【별지 제2호서식】

내부고발 접수 관리 대장

관리번호	접수일자	내부고발 내용	수사처검사	수사처 검사 통보일자	비고
20xx - 00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 관련 조서 · 신원관리카드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 【별지 제3호서식】

접 수 증

접수번호 : 20 내부고발 제 호

접수일자 : 20 년 월 일

신고제목 :

신고자 :

위와 같이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내부고발 신고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관리담당관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접 수 증

접수번호 : 20 내부고발 제 호

접수일자 : 20 년 월 일

신고제목 :

신고자 :

위와 같이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내부고발 신고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관리담당관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 관련 조서 · 신원관리카드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신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내부고발	제목			
	접수일자		접수번호	
신분공개 동의여부	앞으로 귀하의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 신고사건에 대하여 수사·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동의 [] 부동의			

위 신고자 본인은 인적사항 등 신분공개 동의여부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귀하

60g/m²(재활용품)]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 관련 조서·신원관리카드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 【별지 제5호서식】

가명조서등 부작성사유 확인서

년 월 일 「고위공직자범죄 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3조 제2항에 따른 가명조서등 작성신청이 있었으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작성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사건번호 (수리·내사 ·공직범죄사건)	
죄명	
가명조서등 작성신청자	
부작성사유	
년 월 일	
수사처검사 ☐	

210mm×297mm
(보존용지(1종) 70g/m²)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 관련 조서 · 신원관리카드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 【별지 제6호(1)서식】

진술조서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직업 :

주거 :

등록기준지 :

직장주소 :

연락처 : (주택전화) (휴대전화)

(직장전화) (전자우편)

위의 사람은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호 조사실에 임의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다.

1. 피의자와의 관계

저는 피의자과(와)인 관계에 있습니다. / 저는
피의자과(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2. 인적사항의 생략

위 사람은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하여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어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3. 피의사실과의 관계

저는 피의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 목격자, 참고인)의 자격으로서 출석하였습니다.
이때 검사는 진술자를(을) 상대로 다음과 같이 조사하다.
문답
문 조서에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가요
답 (자필기재)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 (재 활용품)]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 관련 조서 · 신원관리카드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 【별지 제6호(2)서식】

진술조서(제회)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위의 사람은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호 조사실에 임의 출석하였는바, 수사처검사는
진술자를(을) 상대로 다음과 같이 전회에 이어 계속 조사하다.

1. 인적사항의 생략

위 사람은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하여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어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문
답

문
답

문 조서에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가요?
답 (자필기재)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 관련 조서 · 신원관리카드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 【별지 제7호서식】

가명진술서등 승인확인서

년 월 일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3조 제5항에 따른 가명진술서등의 작성을 승인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사건번호 (수리·내사 ·공직범죄사건)	
죄명	
가명진술서등 작성자 (가명)	
승인사유	

년 월 일

수사처검사

①

210mm×297mm
(보존용지(1종) 70g/m²)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 관련 조서·신원관리카드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별지 제8호서식】

내부고발자 등 신원관리카드

관 리 번 호	20 년 - 신원관리 - 제 호		
사 건 번 호			
법 원 사 건 번 호			
피의자(피고인)성명	주임 수사처검사		
내부고발자 등 인 적 사 항	성 명	가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등록기준지	전화번호	
	주 소		
	본인서명	본 명	신 분
		가 명	내 부 고 발 자
작 성 원 인	내부고발자 등의 신청, 수사처검사의 직권		
최초 작성일자		최초 작성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신원관리카드 접 수 일자		사 건 종 국 결 정 일 자	
변호인	성 명	선임기간	
	성 명	선임기간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m²)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 관련 조서 · 신원관리카드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 【별지 제9호서식】

내부고발자 등 신원관리카드 열람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사건번호 (수리 · 내사 · 공직범죄사건)			
신원관리카드 관리번호			
신원관리카드 관리기관			
대상자(가명)			
신청사유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내부고발자 등 신원관리카드 열람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소속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귀하

수사처검사 결정	허가 ①	불허가 ②
불허가이유		
년 월 일		
신원관리카드 관리 수사처검사 ○○○ ③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 활용품)]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 관련 조서 · 신원관리카드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 【별지 제10호서식】

내부고발자 등 신원관리카드 열람허가신청 결과통지서

수 신 : ○○○

귀하의 년 월 일 내부고발자 등 신원관리카드 열람허가신청이 아래와
같이 처리되었기에 이를 통지합니다.

사 건 번 호 (수리·내사 ·공직범죄사건)	
신원관리카드 관 리 번 호	
열람허가 신청자	
내부고발자 등과의 관계	
조 치 내 용	
불 허 가 사 유 (불허가시)	

년 월 일

신원관리카드 관리 수사처검사



210mm × 297mm
(보존용지(1종) 70g/m²)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 관련 조서 · 신원관리카드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 【별지 제11호서식】

210mm × 297mm
(보존용지(1종) 120g/m²)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 관련 조서 · 신원관리카드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 【별지 제12호서식】

내부고발자 등 신원관리카드 열람신청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신청내용	사건번호(수리·내사·공직범죄사건)	대상자(가명)	
	신원관리카드 관리번호		
	처분일자		
	이의신청사유		

내부고발자 등에 대한 신청인의 신원관리카드 열람신청에 대하여 수사처검사의 거부처분이 있었으므로 「고위공직자범죄 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소속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고 위 공 직 자 범 죄 수 사 처 장

귀하

처장 결정	결정일	가 부	
		인용 ①	기각 ②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 결정	→ 통 보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 관련 조서 · 신원관리카드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 【별지 제13호서식】

내부고발자 등 신원관리카드 열람불허 이의신청 결과통지서

수 신 : ○○○

귀하의 년 월 일 내부고발자등 신원관리카드 열람불허 이의신청이
아래와 같이 처리되었기에 이를 통지합니다.

사건 번호 (수리·내사 ·공직범죄사건)	
신원관리카드 관리 번호	
열람불허 이의신청자	
내부고발자 등 과의 관계	
처리 내용	
불허가사유 (불허가시)	

년 월 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210mm×297mm
(보존용지(1종) 70g/m²)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 관련 조서·신원관리카드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 [별지 제14호서식]

210mm × 297mm

(보존용지(1종) 120g/m²)

2.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관련 기준·서식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 [별표 1]

포상금 지급기준(제20조 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영 제8조에 따른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에 비하여 포상금의 지급대상자가 많을 경우에는 기여도, 포상금 산정 액수 등을 고려한 우선 순위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 나. 포상금은 영 제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유를 고려하여 내부고발자구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감액사유별 감액은 30퍼센트 범위에서 하되, 감액사유를 중복 적용하는 경우에는 총 감액비율이 포상금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정한 목적으로 내부고발을 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액비율을 달리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다. 포상금 지급사유가 2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포상금 산정 액수가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
- 라. 내부고발자구조심의위원회는 형의 종류와 경중 또는 기간과 금액, 인원 수, 기여도 등에 따라 금액기준 범위 내에서 포상금 지급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 마. 내부고발자구조심의위원회는 고위공직자범죄의 적발·처벌에 있어 내부고발자의 공적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금액기준의 차하급 기준으로 포상금 지급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 바. 내부고발자구조심의위원회는 사회적 파급효과, 고위공직자범죄 적발·처벌에 있어 내부고발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그 공적이 상당하고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금액기준의 차상급 기준으로 포상금 지급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사. 포상금의 이중지급 방지를 위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영 제9조에 따른 구조금 및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포상금 또는 구조금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그 액수가 이 영에 의하여 받을 포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할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적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2. 개별기준

가. 신분상 사법처분

금액기준	유형
1) 1억원 이하	내부고발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이 있는 경우
2) 5,000만원 이하	내부고발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기간이 7년 이상 10년 미만인 사람이 있는 경우
3) 3,000만원 이하	내부고발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기간이 5년 이상 7년 미만인 사람이 있는 경우
4) 1,000만원 이하	내부고발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사람이 있는 경우
5) 500만원 이하	내부고발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사람이 있는 경우
6) 300만원 이하	내부고발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기간이 6월 이상 1년 미만인 사람이 있는 경우
7) 100만원 이하	내부고발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기간이 6월 미만인 사람이 있는 경우 또는 기소유예를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나. 별금, 몰수 등 재산형

금액기준	유형
1) 1억원 이하	20억원을 초과하는 재산형의 부과가 있는 경우
2) 5,000만원 이하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의 재산형의 부과가 있는 경우
3) 3,000만원 이하	6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의 재산형의 부과가 있는 경우
4) 1,000만원 이하	2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의 재산형의 부과가 있는 경우
5) 500만원 이하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의 재산형의 부과가 있는 경우
6) 300만원 이하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의 재산형의 부과가 있는 경우
7) 100만원 이하	10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재산형의 부과가 있는 경우

※ 비고 : 1. 집행유예,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집행 또는 선고가 유예된 형(징역, 금고, 벌금 등)을 기준으로 포상금의 지급금액을 산정한다.

2. 2 이상의 처분이 있는 경우 그 처분들을 모두 합산하여 금액기준 범위 내에서 포상금 지급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 [별표 2]

구조금 산정기준(제26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영 제9조에 따른 구조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 나. 구조금 지급사유가 2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사유별로 산정기준을 적용 한다.
- 다. 구조금을 산정하는 경우 소송 등을 통하여 해당 비용을 보상이나 배상받은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 라. 구조금의 감액 또는 부지급(不支給)에 관하여는 영 제8조제2항을 준용한다.
- 마. 구조금의 이중지급 방지를 위하여 구조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기 하여 영 제8조에 따른 포상금 및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포상금 또는 구 조금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그 액수가 이 영에 의하여 받을 구조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할 때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적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2. 지급사유별 기준

가. 치료비용 산정기준

치료비용 (진단서, 치료사실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원치료 시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급 ◆ 입원치료 시 1,000만원 한도 내 실비 지급
------------------------	---

나. 이사비용 산정기준

1) 이사화물 포장 및 운반비용 산정기준

지급기준	지급액
1. 5톤 이하의 이사화물	해당 이사화물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또는 승강기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2. 5톤을 초과하는 이사화물(이사화물이 7.5 톤을 넘는 경우에는 7.5톤을 상한으로 한다)	5톤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또는 승강기의 이용료를 포함한다)에 5톤 초과 7.5톤 이하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또는 승강기의 이용료를 포함한다)의 50퍼센트를 더한 금액

* 참고 : 실비는 이사화물의 운송비, 인건비 등을 포함하되, 각종 옵션사항(에어컨설치 등)으로 분류되는 항목의 비용은 제외한다.

2) 부동산 중개보수 산정기준

중개보수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중개보수 실비. 다만,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주택가격의 동향 조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월간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른 서울특별시의 평균매매가격, 평균전세가격, 평균 월세보증금 + (평균월세가격 x 100)에 같은 시의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곱한 금액을 각 거래내용별 지급한도로 한다.
------	--

- 다. 생활비·전직비용 및 위자료는 이를 합산하여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구조금지급 대상자의 근무직종에 따라 구조결정 시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일급최저임금의 5배 이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 라. 방범시설 설치비와 내부고발자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의 보호나 경호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로 지급한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1호서식]

신분공개경위 확인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60일
요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내부고발 등	접수일자	접수번호		
	고발요지			
신분공개 경위확인	요청사유			
	요청내용			
	기타 증빙자료			
조사과정에서 신분공개 동의 여부	우리 체에서 신분공개경위를 조사·확인하는 과정에서 귀하의 인적사항 또는 내부고발 등의 내용 관련정보를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부동의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분공개경위 확인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서명 또는 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귀하

요청인 제출서류	요청인의 동의 없이 신분이 공개되었다는 사실을 증빙하는 자료(사실의 기재나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요청인

처리자

검토 확인

결재

처리기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업무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2호서식]

신분공개경위 확인요청서 접수처리부

접수 번호	접수일	접수 방법	요청인 인적사항		내부고발 등		신분공개경위 확인요청		처리결과	결과 통보일
			성명	연락처	접수일자	접수번호	요청사유	요청내용		

297mm×210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안내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3호서식]

접 수 증

접 수 번 호		접 수 일 자	
---------	--	---------	--

요청(신청)인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 화 번 호	주 소	비 고

위와 같이 ([] 신분공개경위 확인요청서 [] 신변안전조치 신청서 [] 의견제시 신청서
[] 포상금 지급 신청서 [] 구조금 지급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접수담당 : (인)

접 수 증

접 수 번 호		접 수 일 자	
---------	--	---------	--

요청(신청)인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 화 번 호	주 소	비 고

위와 같이 ([] 신분공개경위 확인요청서 [] 신변안전조치 신청서 [] 의견제시 신청서
[] 포상금 지급 신청서 [] 구조금 지급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접수담당 : (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4호서식]

비실명 대리신고 봉인자료 열람동의서

내부 고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비실명 대리고발 변호사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내부고발	제목			
	접수일자		접수번호	
열람동의 목 적				

위 내부고발자 본인은 해당 비실명 대리고발과 관련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봉인자료를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내부고발자 (인 또는 서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5호서식]

봉인자료 열람대장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대표자 선정서

①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및 직급		전화번호	
	주소			
② 수사처 접수 사건	접수일자		접수번호	

위 ([] 신분공개경위 확인요청 [] 신변안전조치 신청 [] 의견제시 신청 []) 포상금 지급 신청 [] 구조금 지급 신청)에 대하여 위 사람을 대표자로 선정하고 진행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선정자 : 등 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귀하

선정자 명단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서명 또는 날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1.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
2. 선정자들의 신분증 사본
3. 수수료 : 없음
※ 뒤쪽의 작성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대표자와 나머지 선정자들을 상대로 대표자 선정서 등의 기재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결과, 대표자 선정 등이 허위인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 (재활용품)]

(뒤쪽)

※ 작성요령

1. ①란에는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및 직급,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및 우편물을 받으실 수 있는 주소를 기재하고, 성명란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합니다.
2. ②란에는 수사처에 접수한 신분공개경위 확인요청, 신변안전조치 신청, 의견제시 신청 또는 포상금 지급 신청, 구조금 지급 신청의 접수일자 및 접수번호를 기재합니다.
3. 신분공개경위 확인요청, 신변안전조치 신청, 의견제시 신청 또는 포상금 지급 신청, 구조금 지급 신청 항목 중 해당되는 항목의 []에 를 표시합니다.
4. 앞쪽의 선정자 명단이 부족한 경우 별지로 선정자 명단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대리인 선임 신고서

① 위임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및 직급	전화번호	
	주소		
② 대리인	성명 (상호)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속 및 직급	전화번호	
	주소 (소재지)		
③ 수사처 접수사건	접수일자	접수번호	
④ 대리의 범위			

위 ([] 신분공개경위 확인요청 [] 신변안전조치 신청 [] 의견제시 신청 []
포상금 지급 신청 [] 구조금 지급 신청)에 관하여 위임인으로부터 대리인으로 선임되었으
므로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귀하

구비서류 및 수수료

1. 위임장(별도 작성된 위임장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2. 직무개시등록증(번호사 및 관련 법률에 의한 자격 소지자가 아닌 경우 주민등록등본 등 위임인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3. 위임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4. 수수료 없음

※ 뒤쪽의 작성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위임인과 대리인 등을 상대로 대리인 선임 신고서 등의 기재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결과,
위임 관계 등이 허위인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뒤쪽)

※ 작성요령

1. ①란에는 위임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및 직급,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및 우편물을 받으실 수 있는 주소를 기재하고, 성명란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합니다. 다만, 별도 위임장이 있는 경우에는 서명 또는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②란에는 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및 직급,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및 우편물을 받으실 수 있는 주소를 기재합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법인등록번호 및 법인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3. ③란에는 수사처에 접수한 신분공개경위 확인요청, 신변안전조치 신청, 의견제시 신청 또는 포상금 지급 신청, 구조금 지급 신청의 접수일자 및 접수번호를 기재합니다.
4. ④란에는 위임인이 대리권의 범위를 명시한 경우 그 범위를 기재합니다.
5. 신분공개경위 확인요청, 신변안전조치 신청, 의견제시 신청 또는 포상금 지급 신청, 구조금 지급 신청 항목 중 해당되는 항목의 []에 를 표시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8호서식]

진술서

진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및 직급		전화번호	
	주소			

※ 진술내용을 육하원칙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작성

위와 같이 진술합니다.

20 년 월 일

진술인 :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9호서식]

진술조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속 및 직급			
연락처	자택		휴대전화
	근무처		전자우편

위의 사람은 사건(접수번호 : 20-호)의
서 20 . . . 경에 출석하여 임의로 아래와 같이 진술함.

위의 조서를 진술인에게 열람하게 하였던 바(읽어 들려 주었던 바) 진술한 내용과 다름이 없다고 인정하므로 간인 후 서명 날인하게 함.

20 월드컵

진술인 (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담당자

(인)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 (재활용품)]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담당자	인권감찰관

진술청취보고서

진술인	성명		전화번호	
	직업		사건과의 관계	
	통화일시			

※ 통화내용을 육하원칙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작성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담당자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신변안전조치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60일			
①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및 직급		전화번호			
	주소					
② 내부고발 등 고발요지	접수일자		접수번호			
	고발요지					
③ 대상자 신변안전조치 신청내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관계	
	④ 안전 조치 종류	<input type="checkbox"/> 특정시설에의 보호 <input type="checkbox"/> 신변경호 <input type="checkbox"/>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시 동행 <input type="checkbox"/>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input type="checkbox"/> 기타 신변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⑤ 신청 사유				
		⑥ 기타 증빙 자료				
조사과정에서 신분공개 동의 여부	우리 처가 신변안전조치 신청을 조사·확인하는 과정에서 귀하의 인적사항 또는 내부고발 등 관련 정보를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부동의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신변보호조치를 신청하오니 조
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귀하

구비서류 및 수수료

구비서류 : 내부고발과 내부고발에 대한 수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하다는 사실을 증빙하는 자료(사실의 기재나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 한합니다)

수수료 : 없음

※ 뒷쪽의 작성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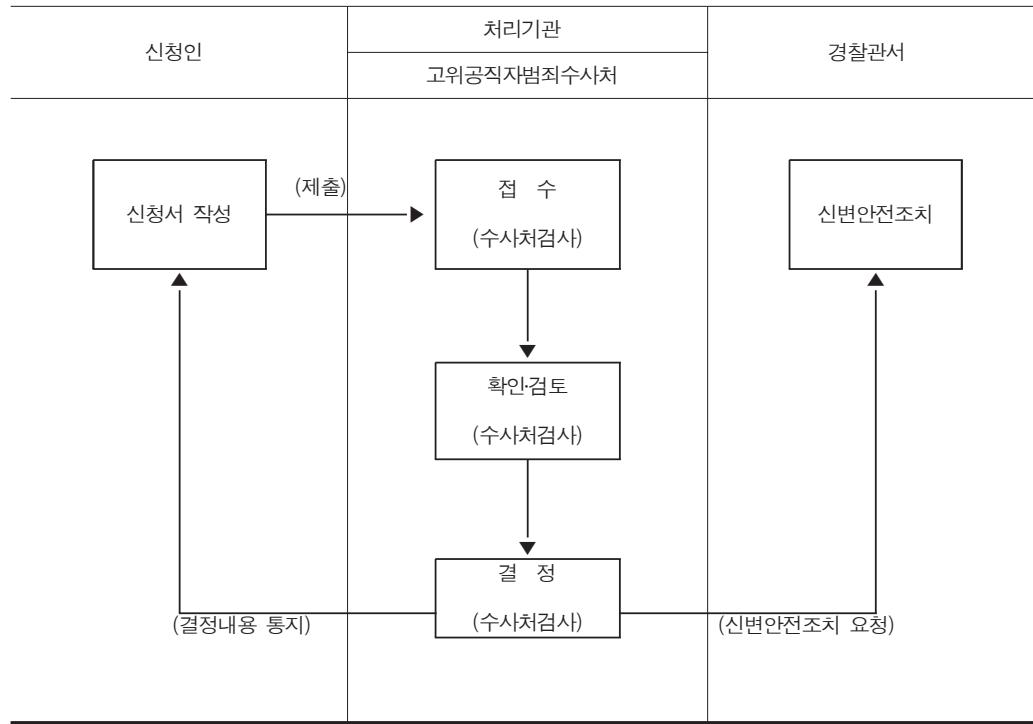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뒤쪽)

※ 작성요령

1. ①란에는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및 직급,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및 우편물을 받으실 수 있는 주소를 기재합니다.
2. ②란에는 신청인과 관련된 내부고발을 접수한 접수일자, 접수번호 및 고발내용의 요지를 기재합니다.
3. ③란에는 신청인을 포함하여 신변안전조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거주하는 주소를 기재하며, 신변안전조치 대상자가 많은 경우 별지로 작성하면 됩니다.
4. ④란에는 신청인이 신청하는 신변안전조치에 해당되는 항목의 []에 를 표시합니다.
5. ⑤란 및 ⑥란에는 내부고발과 내부고발에 대한 수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명백한 우려 등 신변안전조치를 신청하는 사유 및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기재하며, 기재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로 작성하면 됩니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12호서식]

신변안전조치 신청서 접수처리부

접수 번호 접수일	접수 방법	신청인 인적사항		내부고발 등		신변안전조치 신청 대상자		처리결과	결과 통보일	신변안전조치 해제일
		성명	연락처	접수일자	접수번호	성명	연락처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제작용품)]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의견제시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60일
------	------	------	-----

①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및 직급		전화번호	
	주소			

② 내부고발 등	접수일자		접수번호	
	고발요지			

③ 의견제시	신청사유	
	신청내용	
	기타 증빙자료	

④ 조사과정에서 신분공개 동의 여부	우리 처가 의견제시 신청을 조사·확인하는 과정에서 귀하의 인적사항 또는 내부고발 등 관련정보를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부동의
---------------------------	---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의견제시를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귀하

구비서류 및 수수료

신청인이 내부고발과 내부고발에 대한 수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징계 절차 또는 불리한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임을 증빙하는 자료(사실의 기재나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 한합니다)

수수료 없음

※ 뒤쪽의 작성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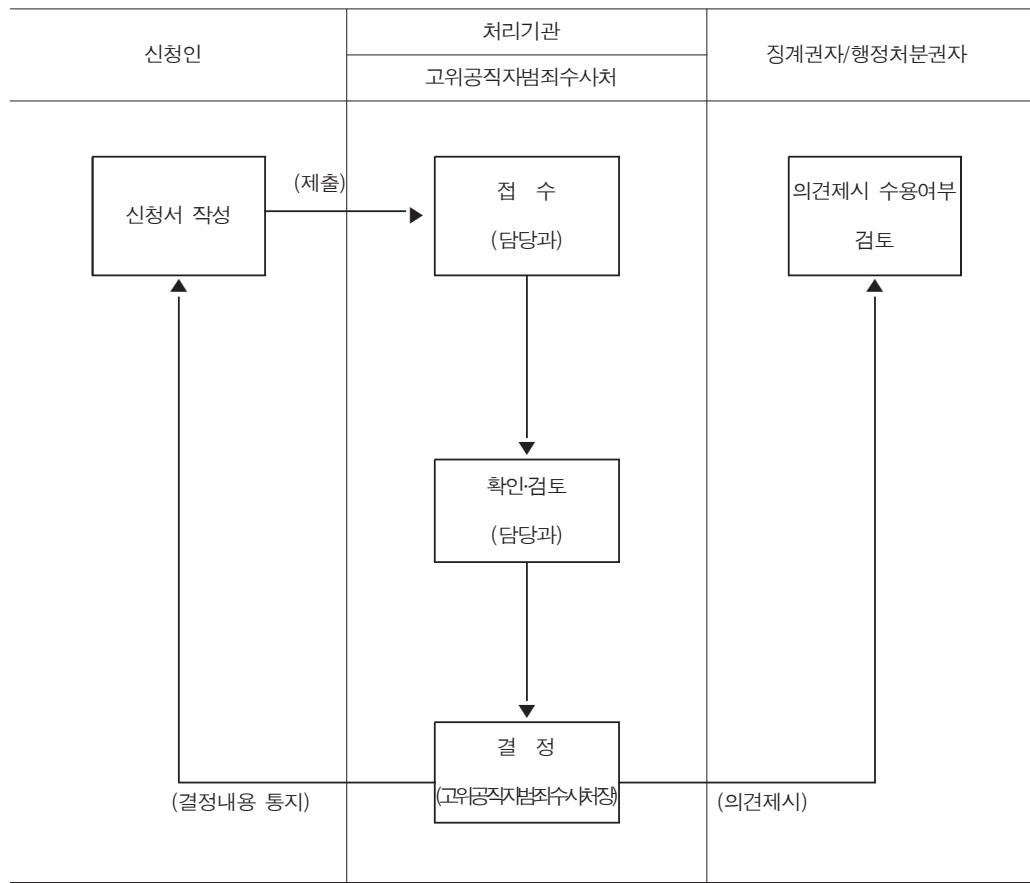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뒤쪽)

※ 작성요령

1. ①란에는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및 직급,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및 우편물을 받으실 수 있는 주소를 기재합니다.
2. ②란에는 신청인과 관련된 내부고발을 접수한 접수일자, 접수번호 및 신고내용의 요지를 기재합니다.
3. ③란에는 신청인이 내부고발과 내부고발에 대한 수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징계 절차 또는 불리한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 등 의견제시를 신청하는 사유, 신청하는 내용 및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기재하며, 기재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로 작성하면 됩니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 (재 활용품)]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14호서식]

의견제시 신청서 접수처리부

접수 번호 접수일 장	접수인 성명 성명	신청인 인적사항		내부고발 등 여부	의견제시 신청		처리결과 신청내용	결과 통보일	의견제시 수용 여부
		연락처	접수일자		접수번호	신청사유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안내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포상금 지급 신청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처리기간	90일
①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거주지	(전화번호)			
	내부고발자와의 관계				
② 내부고발 등	접수일자		접수번호	20 년 월 일	
	고발내용				
③ 포상금 신청 이유	<input type="checkbox"/> 기소유예 <input type="checkbox"/>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 <input type="checkbox"/> 형의 선고				
④ 영 제9조에 따른 구조금,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포상금 또는 구조금 청구·수령사항	청구여부	<input type="checkbox"/> 있음 (기관명 :) <input type="checkbox"/> 없음			
	수령여부	<input type="checkbox"/> 있음 (금액 :) <input type="checkbox"/> 없음			
⑤ 입금 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라 포상금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귀하

*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뒤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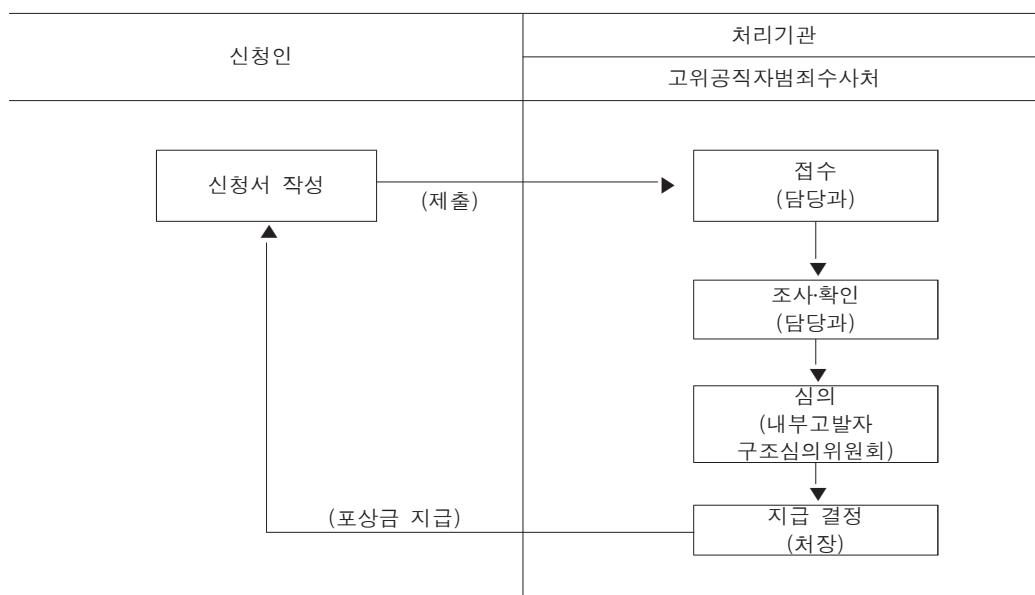
※ 구비서류

1.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이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2. 포상금을 수령할 사람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3. 내부고발 내용 및 관련 수사·소송 등에 관한 자료 사본
4. 그 밖에 포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 작성요령

1. ①란에는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우편물을 받으실 수 있는 주소 및 내부고발자와의 관계를 기재합니다.
2. ②란에는 내부고발 접수일자, 접수번호, 고발내용을 기재합니다.
3. ③란에는 내부고발로 인하여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저지른 사람에 대한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 해당되는 항목의 []에 를 표시하고, 포상금 신청이유를 기재합니다.
4. ④란에는 신청인이 동일한 내부고발을 이유로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규정」 제9조에 따른 구조금, 다른 법령상의 보상금·포상금 또는 구조금을 청구하거나 수령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되는 항목의 []에 를 표시합니다.
5. ⑤란에는 신청인이 구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금융기관명과 예금계좌번호를 기재합니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16호서식]

부처처수접수신청서(상금지급)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구조금 지급 신청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처리기간	30일
①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거주지	(전화번호)			
	내부고발자와의 관계				
② 내부고발 등	접수일자		접수번호	20 년 월 일	
	고발내용				
③ 구조금 신청 이유	내부고발로 인해 받은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의 경위				
	피해액 또는 지출한 비용				
④ 영 제8조에 따른 포상금,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포상금 또는 구조금 청구·수령사항	청구여부	<input type="checkbox"/> 있음 (기관명 :) <input type="checkbox"/> 없음			
	수령여부	<input type="checkbox"/> 있음 (금액 :) <input type="checkbox"/> 없음			
⑤ 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⑥ 구조금 신청금액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구조금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귀하

※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뒤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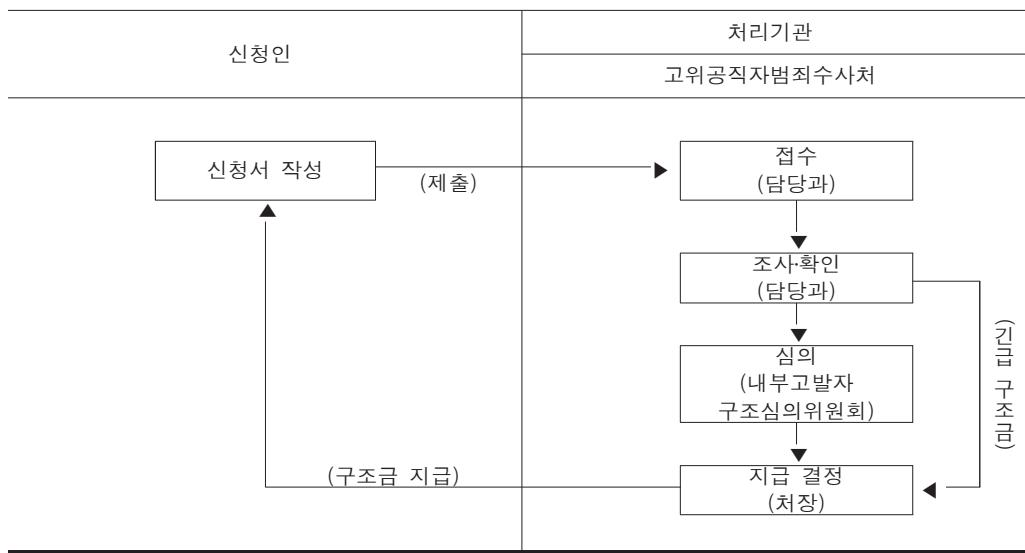
※ 구비서류

1.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이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2. 구조금을 수령할 사람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3. 수급자 증명서 사본
4. 그 밖에 구조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 작성요령

1. ①란에는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우편물을 받으실 수 있는 주소 및 내부고발자와의 관계를 기재합니다.
2. ②란에는 내부고발 접수일자, 접수번호, 고발내용을 기재합니다.
3. ③란에는 내부고발로 인한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의 경위, 피해액 또는 지출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4. ④란에는 신청인이 동일한 내부고발을 이유로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른 포상금, 다른 법령상의 보상금 · 포상금 또는 구조금을 청구하거나 수령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되는 항목의 []에 를 표시합니다.
5. ⑤란에는 신청인이 구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금융기관명과 예금계좌번호를 기재합니다.
6. ⑥란에는 구조금 지급 신청금액을 기재합니다.
7. 수급자 증명서 사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 (재활용품)]

구조금 지급 신청서 접수처리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18호서식]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 (재활용품)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19호서식]

포상금 결정 통지서

포상금 접수번호				
포상금 지급대상자	성명			
	주소			
지급결정사항	결정일자	20 년 월 일		
	결정내용			
	지급액	금	원(금)	원)

우리 처에서 결정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20호서식]

구조금 결정 통지서

구조금 신청 접수번호		
신청인	성명	
	주소	
결정 사항	결정일자	20 년 월 일
	결정내용	
	지급액	금 원정(₩)

우리 처에서 결정한 구조금 지급에 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21호서식]

조사기록표지(- 권)

접수번호			접수일자	20 . . .
사건명				
결정일자	20 . . .			
결정내용				
보호요청	사건번호	- 호	접수일자	20 . . .
관련	사 건 명			
사건	처리결과			

※ 참고사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22호서식]

조사기록 목록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고위공직자범죄

내부 고발

안내서



3. 관련 법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공수처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46호, 2020. 12. 15, 타법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정책기획담당관), 02-6320-024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15.>

1.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職)에 재직 중인 사람 또는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장성급 장교는 현역을 면한 이후도 포함된다.
 - 가. 대통령
 - 나.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 다. 대법원장 및 대법관
 - 라.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 마.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공무원
 - 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공무원
 - 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공무원
 - 아.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 자.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의 정무직공무원
 - 차. 대법원장비서실,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헌법재판소사무처의 정무직공무원
 - 카. 검찰총장
 - 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 파. 판사 및 검사
 - 하.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 거. 장성급 장교
 - 너. 금융감독원 원장·부원장·감사
 - 더. 감사원·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2. “가족”이란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을 말한다.
3. “고위공직자범죄”란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다만, 가족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죄에 한정한다.
 - 가.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나. 직무와 관련되는 「형법」 제141조, 제225조, 제227조, 제227조의2, 제229조(제225조, 제227조 및 제227조의2의 행사죄에 한정한다),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및 제359조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 라. 「변호사법」 제111조의 죄
 - 마. 「정치자금법」 제45조의 죄
 - 바. 「국가정보원법」 제21조 및 제22조의 죄
 - 사. 「국회에서의 중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죄
 - 아.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범죄수익등과 관련된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의 죄
4. “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 가. 고위공직자와 「형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가 범한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 나.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한 자의 「형법」 제133조, 제357조제2항의 죄
 - 다.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된 「형법」 제151조제1항, 제152조, 제154조부터 제156조까지의 죄 및 「국회에서의 중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죄
 - 라.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
5. “고위공직자범죄등”이란 제3호와 제4호의 죄를 말한다.

제3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독립성) ①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를 둔다.

1.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수사
2. 제2조제1호다목, 카목, 파목, 하목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범죄의 공소제기와 그 유지
 - ② 수사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 ③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조직

제4조(처장·차장 등) ① 수사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고, 각각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수사처에 수사처검사와 수사처수사관 및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제5조(처장의 자격과 임명) ①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직에 15년 이상 있던 사람 중에서 제6조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연수를 합산한다.
 - ③ 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으며, 정년은 65세로 한다.
 - ④ 처장이 궐위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임명된 처장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6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 ① 처장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국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 12. 15.>
- ④ 국회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무부장관
2. 법원행정처장
3. 대한변호사협회장
4.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5. 제4호의 교섭단체 외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 ⑤ 국회의장은 제4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교섭단체에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위원의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에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15.>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요청받은 기한 내에 위원을 추천하지 아니한 교섭단체가 있는 경우, 국회의장은 해당 교섭단체의 추천에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신설 2020. 12. 15.>

1.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2.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 ⑦ 추천위원회는 국회의장의 요청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 12. 15.>

- ⑧ 추천위원회 위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 12. 15.>
- ⑨ 추천위원회가 제5조제1항에 따라 처장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추천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12. 15.>
- ⑩ 그 밖에 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15.>

제7조(차장) ① 차장은 10년 이상 제5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차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② 제5조제2항은 차장의 임명에 준용한다.
- ③ 차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으며, 정년은 63세로 한다.

- 제8조(수사처검사)** ① 수사처검사는 7년 이상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제9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검사의 직에 있었던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수사처검사 정원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20. 12. 15.>
- ② 수사처검사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쳐장과 차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한다.
 - ③ 수사처검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3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정년은 63세로 한다.
 - ④ 수사처검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검찰청법」 제4조에 따른 검사의 직무 및 「군사법원법」 제37조에 따른 군검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제9조(인사위원회)** ① 쳐장과 차장을 제외한 수사처검사의 임용, 전보,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수사처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 ②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쳐장이 된다.
 - ③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쳐장
 2. 차장
 3.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쳐장이 위촉한 사람 1명
 4.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5. 제4호의 교섭단체 외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 ④ 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⑤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그 밖에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수사처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수사처수사관)** ① 수사처수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쳐장이 임명한다.
1.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
 2.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조사, 수사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
 3. 수사처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 ② 수사처수사관은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40명 이내로 한다. 다만, 검찰청으로부터 검찰수사관을 파견받은 경우에는 이를 수사처수사관의 정원에 포함한다.
 - ③ 수사처수사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정년은 60세로 한다.

- 제11조(그 밖의 직원)** ① 수사처의 행정에 관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직원의 수는 20명 이내로 한다.

- 제12조(보수 등)** ① 쳐장의 보수와 대우는 차관의 예에 준한다.
- ② 차장의 보수와 대우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중 가장 높은 직무등급의 예에 준한다.
 - ③ 수사처검사의 보수와 대우는 검사의 예에 준한다.
 - ④ 수사처수사관의 보수와 대우는 4급 이하 7급 이상의 검찰직공무원의 예에 준한다.

제13조(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처장, 차장, 수사처검사, 수사처수사관으로 임명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4.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② 검사의 경우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처장이 될 수 없고,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차장이 될 수 없다.

제14조(신분보장) 처장, 차장, 수사처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15조(심신장애로 인한 퇴직) 수사처검사가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대통령은 처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수사처검사에게 퇴직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공직임용 제한 등) ① 처장과 차장은 퇴직 후 2년 이내에 헌법재판관(「대한민국헌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임명되는 헌법재판관은 제외한다), 검찰총장, 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가정보원의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② 처장, 차장, 수사처검사는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검사로 임용될 수 없다.

③ 수사처검사로서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④ 수사처에 근무하였던 사람은 퇴직 후 1년 동안 수사처의 사건을 변호사로서 수임할 수 없다.

제3장 직무와 권한

제17조(처장의 직무와 권한) ① 처장은 수사처의 사무를 통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처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수사처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국회에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③ 처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된 안건이 상정될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의안(이 법의 시행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포함한다)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④ 처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고위공직자범죄등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과 수사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처장은 제8조에 따른 수사처검사의 직을 겸한다.

⑥ 처장은 수사처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제18조(차장의 직무와 권한) ① 차장은 처장을 보좌하며, 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차장은 제8조에 따른 수사처검사의 직을 겸한다.

제19조(수사처검사 직무의 위임·이전 및 승계) ① 처장은 수사처검사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처장은 수사처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수사처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수사처검사의 직무와 권리) ① 수사처검사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행위를 한다.

② 수사처검사는 처장의 지휘·감독에 따르며, 수사처수사관을 지휘·감독한다.

③ 수사처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2항에 따른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21조(수사처수사관의 직무) ① 수사처수사관은 수사처검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한다.

② 수사처수사관은 고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한 수사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197조제1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 2. 4.>

제22조(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 수사처 소속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부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제4장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제23조(수사처검사의 수사) 수사처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제24조(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① 수사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처장은 피의자, 피해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추어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등을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등 사실의 통보를 받은 처장은 통보를 한 다른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처규칙으로 정한 기간과 방법으로 수사개시 여부를 회신하여야 한다.

제25조(수사처검사 및 검사 범죄에 대한 수사) ① 처장은 수사처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에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찰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하여야 한다.

제26조(수사처검사의 관계 서류와 증거물 송부 등) ① 수사처검사는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사건을 제외한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수사를 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검사는 처장에게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관련인지 사건의 이첩) 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하여 불기소 결정을 하는 때에는 해당 범죄의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관련범죄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하여야 한다.

제28조(형의 집행) ① 수사처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등 사건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경우 제1심 관할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소속 검사가 그 형을 집행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처장은 원활한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해당 사건 및 기록 일체를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인계한다.

제29조(재정신청에 대한 특례) ① 고소·고발인은 수사처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서울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처장은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 의견서, 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서울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그 취지를 서울고등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한다.

⑤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62조 및 제262조의 2부터 제262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할법원은 서울고등법원으로 하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처장”, “검사”는 “수사처검사”로 본다.

제30조 삭제 <2020. 12. 15.>

제31조(재판관할) 수사처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등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다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수사처 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5장 징계

제32조(징계사유) 수사처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수사처검사를 징계한다.

1. 재직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 가.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
 - 나.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

- 다. 처장의 허가 없이 보수를 받는 직무에 종사하는 일
-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 3.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수사처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33조(수사처검사징계위원회) ① 수사처검사의 징계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사처에 수사처검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예비위원 3명을 둔다.

제34조(징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 등)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차장이 된다.

다만, 차장이 징계혐의자인 경우에는 처장이 위원장이 되고, 처장과 차장이 모두 징계혐의자인 경우에는 수사처규칙으로 정하는 수사처검사가 위원장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 위원장이 지명하는 수사처검사 2명
- 2. 변호사, 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4명
- ③ 예비위원은 수사처검사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④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⑤ 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35조(징계위원회의 사무직원) ① 징계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수사처검사가 되고, 서기는 수사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과 그 밖의 서류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제36조(징계의 청구와 개시) ① 징계위원회의 징계심의는 처장(처장이 징계혐의자인 경우에는 차장을, 처장 및 차장이 모두 징계혐의자인 경우에는 수사처규칙으로 정하는 수사처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8조제1항, 제39조, 제40조제2항, 제42조제1항에서 같다)의 청구에 의하여 시작한다.

② 처장은 수사처검사가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 징계의 청구는 징계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징계부가금) ① 제36조에 따라 처장이 수사처검사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부가금의 조정, 감면 및 징수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38조(재징계 등의 청구) ①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법원에서 징계 및

제37조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징계등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유로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받은 감봉·경찰 처분에 대해서는 징계등을 청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 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는 경우
 2. 징계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등 의결,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 있는 경우
 3. 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이 과다한 경우
- ② 처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징계등을 청구하여야 하며, 징계위원회에서는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39조(퇴직 희망 수사처검사의 징계사유 확인 등) ① 처장은 수사처검사가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32조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해임, 면직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처장은 지체 없이 징계등을 청구하여야 하며, 징계위원회는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40조(징계혐의자에 대한 부분 송달과 직무정지)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청구서의 부분을 징계 혐의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② 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혐의자에게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41조(징계의결) ① 징계위원회는 사건심의를 마치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한다.

- ② 위원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은 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42조(징계의 집행) ① 징계의 집행은 견책의 경우에는 처장이 하고, 해임·면직·정직·감봉의 경우에는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 ② 수사처검사에 대한 징계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43조(다른 법률의 준용)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검사징계법」 제3조, 제9조부터 제17조까지,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다만, 제2항의 “제23조”는 “제42조”로 본다),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검사”는 “수사처검사”로 본다.

제6장 보칙

제44조(파견공무원) 수사처 직무의 내용과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공무원을 파견받을 수 있다.

제45조(조직 및 운영)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수사처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사처규칙으로 정한다.

제46조(정보제공자의 보호) ① 누구든지 고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하여 알게 된 때에는 이에 대한 정보를 수사처에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받지 아니한다.

② 수사처는 내부고발자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조치 및 지원행위를 할 수 있다.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다른 법률의 준용) 그 밖에 수사처검사 및 수사처수사관의 이 법에 따른 직무와 권한 등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검찰청법」(다만, 제4조제1항제2호, 제4호, 제5호는 제외한다),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부칙 <제17646호, 2020. 12. 15.> (국가정보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국가정보원법」 제21조 및 제22조의 죄

②부터 ⑩까지 생략

제6조 생략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보호에 관한 규정]

[시행 2020. 7. 15] [대통령령 제30831호, 2020. 7. 14, 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사건관리담당관), 02-6320-0266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에 따라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실명 내부고발) 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에 따른 내부고발자(이하 “내부고발자”라 한다)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에 고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하여 내부고발을 하려는 경우에는 자신의 인적사항(성명·연령·주소·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밝혀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부고발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로 하여금 내부고발을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내부고발자의 인적사항은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간음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대리에 의한 내부고발을 하는 경우 내부고발자 또는 내부고발을 대리하는 변호사는 그 취지를 밝히고 내부고발자의 인적사항, 내부고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에게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④ 수사처 소속 공무원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봉인하여 보관해야 하며, 내부고발자 본인의 동의 없이 이를 열람해서는 안 된다.

제3조(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① 수사처검사는 내부고발자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내부고발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내부고발과 관련한 조서나 그 밖의 서류(이하 “조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할 때 그 취지를 조서등에 기재하고 내부고발자의 인적사항은 기재하지 않는다.

② 내부고발자는 수사처검사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사처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수사처검사는 제1항에 따라 조서등에 기재하지 않은 인적사항을 내부고발자 신원관리카드(이하 “신원관리카드”라 한다)에 등재해야 한다.

④ 수사처검사는 제1항에 따라 조서등에 성명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내부고발자로 하여금 조서등에 서명은 가명(假名)으로, 간인(間印) 및 날인(捺印)은 무인(毋印)으로 하게 해야 한다.

⑤ 내부고발자는 진술서 등을 작성할 때 수사처검사의 승인을 받아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⑥ 신원관리카드는 수사처검사가 관리한다.

⑦ 제3항 및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원관리카드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疏明)하고 수사처검사의 허가를 받아 신원관리카드를 열람할 수 있다. 다만, 수사처검사는 내부고발자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내부고발을 이유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

1.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다른 사건의 수사에 필요한 경우
 2. 변호인이 피고인의 변호에 필요한 경우
 3. 제9조에 따른 구조금 지급에 관한 심의 등 공무상 필요한 경우
- ②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신원관리카드의 열람을 신청한 변호인은 수사처검사의 불허가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처장은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신원관리카드의 열람을 허가해야 한다.

제5조(내부고발자의 비밀보호) ①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내부고발자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내부고발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다만, 내부고발자가 동의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 ② 처장은 내부고발자의 인적사항이나 내부고발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공개되었을 때에는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다.
- ③ 처장은 제1항을 위반하여 내부고발자의 인적사항이나 내부고발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한 공무원의 징계권자에게 해당 위반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제6조(신변안전조치) ① 수사처검사는 내부고발자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내부고발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危害)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내부고발자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청에 따라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안전조치”라 한다)를 하도록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변안전조치를 신청하는 사람은 본인과 신변보호가 필요한 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보호대상자”라 한다)의 인적사항 및 신청 사유 등을 적은 문서를 수사처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지체 없이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변안전조치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수사처검사와의 협의를 거쳐 신변안전조치 중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고, 신변안전조치를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수사처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변안전조치를 한 경찰관서의 장은 신변안전조치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사처검사와 협의하여 제3항에 따른 신변안전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⑤ 수사처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신변안전조치를 신청한 사람과 보호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1. 제3항에 따라 신변안전조치가 취해진 사실
2. 제4항에 따라 신변안전조치가 해제된 사실
3. 신변안전조치의 기간이 종료된 사실

제7조(의견제시) 처장은 내부고발과 관련하여 발견된 내부고발자의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행정기관이 내부고발자에게 징계 또는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 내부고발자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그 징계나 행정처분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8조(포상금) ① 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저지른 사람이 내부고발로 인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을 받으면 제11조에 따른 내부고발자구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부고발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상훈법」 등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은 제9조에 따른 구조금 및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포상금 또는 구조금 등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②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포상금 지급액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고위공직자범죄등의 조사·수사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였던 자가 그 조사 또는 수사사항과 관련하여 내부고발을 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내부고발 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
2. 내부고발의 대상인 고위공직자범죄등이 신문·방송 등 언론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 여부
3. 내부고발자가 내부고발과 관련한 위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4. 내부고발자가 고위공직자범죄등의 예방 등에 이바지한 정도
5. 내부고발자가 관계 행정기관 등에 내부고발을 할 의무를 가졌는지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내부고발을 하였는지 여부

③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구조금) ① 처장은 내부고발자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내부고발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내부고발자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청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에 따른 내부고발자구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되, 피해의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1. 중대한 경제적 손실 또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때

2. 이사·전직 등으로 비용을 지출했거나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

② 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③ 처장은 보복의 위험성, 지급대상자의 직업·신분·생활수준,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의 정도, 지출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구조금의 금액을 결정한다.

④ 처장은 구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구조금 지급 신청인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조사할 수 있고, 행정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필요한 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구조금의 중복지급 금지) 구조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동일한 원인으로 제8조에 따른 포상금을 받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포상금 또는 구조금 등을 받은 경우 그 보상금·포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액수가 이 영에 따라 받을 구조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할 때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그 보상금·포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액수가 이 영에 따라

지급받을 구조금의 액수보다 적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구조금의 액수를 정해야 한다.

제11조(내부고발자구조심의위원회) ① 제8조에 따른 포상금 및 제9조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사처에 내부고발자구조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포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액
2. 구조금 지급 여부 및 지급액
3. 그 밖에 포상금·구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수사처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수사처검사 또는 수사처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차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 범죄수사 및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법률·회계·감정평가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차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차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내부고발 관련 협조자의 보호) 차장은 내부고발에 대한 수사·소송 등에서 고위공직자 범죄등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에 필요한 진술·증언을 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 대해서도 보호조치와 지원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수사처 소속 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2조에 따른 비실명 내부고발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무
2. 제3조에 따른 내부고발자의 인적사항 기재 생략에 관한 사무
3. 제4조에 따른 신원관리카드 열람에 관한 사무
4. 제5조에 따른 내부고발자의 비밀보호에 관한 사무
5. 제6조에 따른 신변안전조치에 관한 사무
6. 제7조에 따른 내부고발자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 대한 의견 제시에 관한 사무
7. 제8조에 따른 포상 추천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
8.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무
9. 제11조에 따른 내부고발자구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
10. 제12조에 따른 내부고발 관련 협조자에 대한 보호조치 및 지원행위에 관한 사무

제14조(서식 등)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 등에 관한 사항은 차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칙 <제30831호, 2020. 7. 14.>

이 영은 2020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정보 공개지침]

[시행 2021. 12. 1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예규 제31호, 2021. 12. 14. 일부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운영지원담당관), 02-6320-0250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보공개의 원칙) ①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청구가 없더라도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공개여부는 객관적으로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3조(정보공개책임관) 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의 정보공개책임관은 정책기획관이 맡는다.

②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에 관한 주요사항을 총괄·조정하고 교육·지도, 운영실적의 평가 등 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공개 운영 및 관리체계) ①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배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은 운영지원담당관실에서 담당하고 공개 여부의 결정·통지, 불복 대응 등은 해당 정보를 관장하는 소관부서에서 실시한다.

② 각 부서의 장은 소관부서별로 생산된 결재문서 중 부분공개 및 비공개된 문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각 부서별로 정보공개담당자를 지정하여 정보공개업무가 다른 업무보다 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행정정보의 사전공표) 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구체적인 공개의 범위 및 방법을 정하여 정례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국민의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처장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 ② 처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공표 대상의 목록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여야 하며 그 목록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공표방법) ① 홈페이지에 '정보공개'란을 설치하고, 그 하위메뉴인 '사전정보공표'란에는 수사처에서 생산한 문서와 보고서 등 공개 가능한 정보를 게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게재함에 있어 해당 정보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게재한다.

③ '사전정보공표'란에 정보의 게재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하며, 각 부서 정보공개담당자는 공표목록을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 운영지원담당관실에 요청한다.

④ 운영지원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에 자료의 등록·수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공표부서) ① 행정정보의 공표는 그 사무를 처리하는 해당부서가 수행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책기획관이 공표부서를 지정한다.

제8조(정보목록 등의 작성·비치) 각 부서는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문서제목, 생산연도, 업무담당자 등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한다. <개정 2021.12.14.>

제9조(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수사처 비공개대상 정보의 세부기준은 정책기획관이 별도로 정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정책기획관은 제1항의 세부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정책기획관은 공개청구된 정보가 제1항에 포함된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으면 비공개 대상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2조제1항에 의거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심의회를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3인은 정부위원으로 2인은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정책기획관이 되며, 정부위원은 수사기획관 및 운영지원담당관으로, 민간위원은 법 제12조제3항에 의거하여 처장이 위촉하는 외부 전문가 2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12. 14.>

③ 심의회 간사위원은 운영지원담당관으로 한다. <개정 2021.12.14.>

제11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보의 소관부서가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의 심의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심의
3.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12조(심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 위원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 심의회는 구두회의로 진행하고, 필요시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구두회의시 간사는 심의 내용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⑤ 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운영을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지원담당관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공개청구서의 접수) ① 운영지원담당관실의 정보공개담당자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처리부서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처리주체는 원칙적으로 해당부서가 맡는다.

제14조(정보공개의 처리) ① 제1항에 따라 청구서를 이송받은 처리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지체없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내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된 사실과 그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공개방법) ① 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시청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 및 정보공개시스템에 의한 전자파일의 교부에 의한다.

② 공개 청구된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16조(정보공개 편의제공) 정보공개 전담자는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운영지침, 정보공개청구서 양식, 행정정보의 공표목록 등을 홈페이지 ‘정보공개’란에 게재하거나 사무실에 비치한다.

제17조(정보공개 교육 및 점검) ① 정책기획관은 연 1회이상 전 직원에 대하여 정보공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책기획관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를 확인·점검하고, 정보공개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 관련시스템을 정비하여야 한다.

제18조(정보공개운영실태 점검) 운영지원담당관은 연 1회 이상 수사처의 정보공개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수수료 징수 및 감면)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적 형태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법 제15조제2항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영 제17조제5항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의 감면비율은 총수수료의 50 퍼센트 감액률을 적용한다.

③ 우편요금은 정보공개청구서 등에 특별히 우송방법이 적시되어 있지 않는 한 등기발송 기준으로 납부하도록 한다.

부칙 <제31호, 2021. 12. 14.>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

[시행 2021. 11. 2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고시 제2021-1호, 2021. 11. 24. 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사건관리담당관), 02-6320-026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5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부고발자에 대한 비밀보호, 신변안전조치, 내부고발자의 징계권자 등에 대한 의견제시, 포상금·구조금의 지급 등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 업무처리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내부고발자의 비밀보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의 직원(파견자 및 일용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내부고발자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

1. 내부고발자의 성명·연령·주소·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인적사항
2. 내부고발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진술내용 및 증빙자료 등
3. 신변안전조치와 관련된 사항
4. 보상금 및 포상금 신청·지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내부고발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

제3조(내부고발자보호책임관) ① 수사처에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 상담·접수,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내부고발자보호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사건관리담당관 또는 4급 이상 수사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책임관을 지정한다.

③ 책임관은 내부고발자 보호와 관련하여 상담하거나 처리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2장 내부고발자의 비밀보호

제4조(신분공개경위 확인요청의 접수 등) ① 책임관은 내부고발자가 내부고발에 대한 수사·소송 및 내부고발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의 절차에서 내부고발자의 인적사항이나 내부고발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거나 공개되었다는 이유로 처장에게 신분공개경위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신분공개경위 확인요청서(이하 “확인요청서”라 한다)에 신분공개경위확인을 요청하는 사람(이하 이 장에서 “요청인”이라 한다)의 인적사항, 요청사유 및 요청내용 등을 기재한 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② 확인요청서는 방문·우편·모사전송·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다만,

우편·모사전송·전자문서 등으로 확인요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책임관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요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책임관은 확인요청서를 접수 순서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신분공개경위 확인요청서 접수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한다.

④ 책임관은 확인요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고 요청인에게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⑤ 책임관은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비실명 대리의 방법으로 내부고발을 한 사람이 제1항에 따라 신분공개 경위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내부고발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비실명 대리신고 봉인자료 열람동의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내부고발 대리에 관한 위임장

2. 내부고발자임을 확인하는 비실명 내부고발 대리 변호사의 확인서

⑥ 책임관은 제5항에 따라 요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봉인자료(영 제2조제4항에 따라 수사처가 봉인·보관하고 있는 내부고발자의 인적사항, 내부고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리책임자(사건관리담당관실 소속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봉인자료 열람대장에 열람자를 기재한 후 봉인자료 관리책임자의 입회 하에 봉인자료를 열람하여 요청인과 내부고발자의 동일인 여부를 확인한다.

⑦ 책임관은 제6항에 따른 열람 결과 요청인과 내부고발자의 동일인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분공개 확인요청을 종결한다.

제5조(대표자 선정) ① 책임관은 동일한 내부고발로 인한 요청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명을 대표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대표자 선정서를 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② 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대표자가 해당 신분공개경위 확인요청 사건의 처리에 관한 행위를 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1항에 따라 해당 요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하는 서면에 요청인들의 동의서를 붙여 제출하도록 한다.

③ 책임관은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 요청인들이 제1항에 따른 대표자를 통해서 해당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하도록 한다.

④ 책임관은 요청인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처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통보하도록 한다.

⑤ 책임관은 대표자와 요청인들을 상대로 확인요청서 및 대표자 선정서 등의 기재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표자 선정 등이 허위인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대리인의 선임 등) ① 책임관은 요청인이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신분공개경위 확인을 요청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7호서식의 대리인 선임 신고서를 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요청인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요청인이 법인 등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
 3. 변호사
 4.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해당 요청인의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
- ② 제1항의 경우 책임관은 요청인으로 하여금 위임사실과 범위 등을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서면으로 증명하도록 해야 한다.
- ③ 책임관은 요청인이 대리인 선임을 철회하거나 다른 대리인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한다.
- ④ 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이 신분공개경위 확인요청에 대한 사실 관계와 주장, 수사처에서 송달한 문서의 수령 등 일체의 행위를 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대리권의 범위를 명시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대리행위를 하도록 할 수 있다.
- ⑤ 책임관은 대리권에 흠이 있는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대리권을 수여한 요청인이 추인한 경우에는 대리권의 흠이 없어진 것으로 할 수 있다.
- ⑥ 책임관은 요청인과 대리인을 상대로 확인요청서와 대리인 선임 신고서 등의 기재내용 등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위임관계 등이 허위인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보완의 요구) ① 책임관은 확인요청서의 기재 사항이 일부 누락되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확인요청서 등에 의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하지 않는다.

② 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요청인이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차에 한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도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신분공개경위 확인요청의 취소) ① 책임관은 요청인이 신분공개경위 확인요청을 취소하려는 경우 서면으로 이를 제출하게 한다.

② 책임관은 요청인이 제1항의 서면을 제출한 경우에는 신분공개경위 확인요청 사건을 종결 처리한다.

③ 책임관은 요청인이 확인요청서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그 사본을 보관하고 원본은 반환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책임관은 요청인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이 알려지거나 공개된 사실이 명백한 경우 이를 조사·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관은 그 내용을 요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한다.

제9조(비밀보호 의무 위반 등의 조사·확인) ① 책임관은 인권감찰관에게 확인요청서를 인계하고, 인권감찰관은 확인요청서를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조사에 착수한다.

1. 요청인 및 관련자 등에 대한 출석요구, 진술청취 및 진술서의 제출 요구
2. 요청인, 관련자 및 관계 기관·법인·단체에 대한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3. 요청인, 관련자 및 관계 기관·법인·단체에 대한 관련 사실 및 정보에 대한 조회

② 인권감찰관은 내부고발에 따른 수사 또는 형사절차에서 내부고발자의 인적사항 등이 공개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내부고발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신속하게 그 경위 및 비밀보호

의무 위반 여부 등을 조사·확인한다.

제10조(출석 요구) ① 인권감찰관은 요청인 및 관련자에게 제9조제1항제1호의 출석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출석 일시 및 장소 등을 출석일 7일 전까지 문서로 통보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조사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처장은 관련자가 제1항의 출석요구에 따라 수사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출장조사) ① 인권감찰관은 요청인, 관련자,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출장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권감찰관 소속 공무원(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출장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조사관은 수사처 외의 장소에서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한다.

③ 조사관은 수사처 외의 장소에서 진술서 또는 진술조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 내부고발자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정보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한 수사처의 컴퓨터 등 관련 장비를 활용하도록 한다.

제12조(진술서 등의 작성) ① 조사관은 요청인 또는 관련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한 때에는 요청인 또는 관련자로 하여금 별지 제8호서식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고, 증거서류나 참고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진술서에 기재하여 첨부한다.

② 조사관은 제1항에 따른 진술서를 제출받는 때에는 진술인의 인적사항과 취지, 이유 및 구체적인 내용 등을 기재하도록 한다.

③ 조사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진술조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전화 등의 방법으로 진술을 청취하는 등 진술서 제출요구나 진술조서 작성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진술청취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④ 조사관이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진술서나 진술조서 등을 제출받았거나 작성한 경우 인권감찰관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제13조(신분공개 경위 확인 요청의 처리) ① 처장은 확인요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비밀보호 의무 위반자 또는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징계권자에게 해당 위반사실을 통보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인권감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분공개 경위 확인요청을 종결 처리하고, 그 결과를 요청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1. 내부고발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내부고발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내부고발을 한 경우

 나. 내부고발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 등을 요구한 경우

 다.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내부고발을 한 경우

2. 내부고발자가 신분의 공개에 동의한 경우

3. 그 밖에 신분공개 경위 확인요청 내용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처리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요청서의 보완에 드는 기간(보완을 위하여 요청서를 요청인에게 발송한 날과 보완되어 수사처에 도달한 날을 포함한다)
2. 전문가의 자문 등 특별한 추가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드는 기간
3. 요청인의 불출석 등 요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연되는 기간
4. 국내·외국기관 및 재외공관 등에의 조회에 드는 기간

제14조(비밀보호 의무 위반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인권감찰관은 비밀보호 의무 위반자 또는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자의 위반사실 통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신분공개 경위 확인 요청의 내용
 2. 제1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내부고발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여부 및 그 경위
 4. 비밀보호 의무 위반 여부 및 위반사실 통보 필요성
- ② 인권감찰관은 처장이 비밀보호 의무 위반자의 위반사실 통보를 결정하면 해당 정계권자에게 위반사실을 통보하고, 이에 대한 처리결과를 수사처에 통보하도록 해야 한다.
- ③ 인권감찰관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요청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3장 신변안전조치

제15조(신변안전조치 신청의 접수) ① 수사처검사는 내부고발자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내부고발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하여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안전조치"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변안전조치 신청서에 신변안전조치를 신청한 사람(이하 이 장에서 "신청인"이라 한다)과 신변보호가 필요한 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의 인적사항, 신청사유 및 신청내용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사처검사는 접수받은 신변안전조치 신청서를 책임관에게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책임관은 인계받은 순서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의 신변안전조치 신청서 접수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한다.

③ 수사처검사는 긴급한 사유가 있어 구두나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변안전조치의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변안전조치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변안전조치 신청서의 접수방법, 접수증 교부 및 비실명 대리의 방법으로 내부고발을 한 사람의 신변안전조치 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책임관"은 "수사처검사"로 본다.

⑤ 신청인의 대표자 선정, 대리인 선임, 신변안전조치 신청서의 보완 및 신청 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책임관"은 "수사처검사"로 본다.

제16조(신변안전조치 신청 처리 등) ① 수사처검사는 신변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이하 "경찰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서면으로 즉시 요청하고, 그 조치결과를 수사처에 통보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구두나 유선으로 요청하고 사후에 서면으로 알릴 수 있다.

② 수사처검사는 경찰관서의 장이 신변안전조치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어 수사처검사와 협의 후 신변안전조치를 해제하려는 경우 자체 없이 그 사유와 종료기간 및 내용을 통보하도록 해야 한다.

③ 수사처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변안전조치 신청을 종결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1. 해당 내부고발이 제1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해당 신청사항이 내부고발과 관련이 없는 경우
3. 신변안전조치 신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신변보호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4. 그 밖에 신청내용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

④ 신변안전조치 신청의 조사·확인 및 처리기간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의견제시

제17조(의견제시 신청) ① 책임관은 내부고발과 관련하여 발견된 내부고발자의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징계 또는 불리한 행정처분을 받게 될 내부고발자가 영 제7조에 따른 의견제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의견제시 신청서에 의견제시를 신청한 사람의 인적사항, 신청사유 및 신청내용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② 책임관은 의견제시 신청서를 접수 순서에 따라 별지 제14호서식의 의견제시 신청서 접수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의견제시 신청서의 접수방법 및 접수증 교부 등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④ 의견제시 신청인의 대표자 선정, 대리인 선임, 의견제시 신청서의 보완 및 신청 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의견제시 신청의 처리 등) ① 의견제시 신청의 처리기간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시 신청을 종결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1. 해당 내부고발이 제1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해당 위법행위 등이 내부고발과 관련이 없는 경우
3. 의견제시 신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의견제시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4. 그 밖에 의견제시 신청내용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

제19조(징계 또는 불리한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제시)

① 책임관은 내부고발자의 징계 또는 불리한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제시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의견제시 신청의 내용
 2. 내부고발이 제1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위법행위 등이 내부고발과 관련되는지 여부
 4. 내부고발자에 대한 징계 또는 불리한 행정처분의 사유 및 진행단계
 5. 징계 또는 불리한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에 대한 의견제시 필요성 등
- ② 책임관은 처장이 내부고발자 징계권자의 징계 또는 행정처분권자의 불리한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제시 결정을 하는 경우 의견내용을 해당 징계권자 또는 행정처분권자에게 통보한다.
- ③ 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제5장 포상금**제20조(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① 포상금은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여부, 형의

선고, 형의 종류와 경중 또는 기간과 금액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한다. 이 경우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포상금을 산정한다.

1. 영 제8조제1항 본문 및 이 지침 별표 1의 포상금 지급 기준 중 포상금 산정 관련 사항
2. 영 제8조제2항 및 이 지침 별표 1의 포상금 지급 기준 중 포상금 감액 관련 사항
3.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지급제한 사항
4. 영 제9조에 따른 구조금 및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포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지급 및 신청
여부

제21조(포상금의 신청)

① 책임관은 내부고발자가 영 제8조에 따른 포상금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에 신청인의 인적사항, 신청이유, 영 제9조에 따른 구조금 및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포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수령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1.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2. 내부고발 내용 및 관련 수사·소송 등에 관한 자료 사본

3. 그 밖에 포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 ② 책임관은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접수 순서에 따라 별지 제16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
접수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신청서의 접수방법 및 접수증 교부 등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④ 포상금 신청인의 대표자 선정, 대리인 선임, 포상금 지급 신청서의 보완 및 신청 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의견청취) 책임관은 제21조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신청인 또는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장 구조금

제23조(구조금의 지급 항목) ① 처장은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진찰·입원·투약·수술 등의 비용
 2. 전직·파견근무·신변안전조치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3. 내부고발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4. 파면·해임·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5. 그 밖에 내부고발로 인하여 발생한 중대한 경제적 손해
- ② 처장은 영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11조에 따른 내부고발자구조심의위원회의 심의 전에 구조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내부고발로 인하여 파면·해임·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2. 신청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처장이 긴급한 피해의 구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나 비용 지출은 내부고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에 한정한다.
- ④ 내부고발자는 제1항 각 호의 지급사유가 있는 때에는 처장에게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 ⑤ 내부고발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제1항 각 호의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을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그 금액의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4조(구조금의 신청) ① 책임관은 내부고발자가 영 제9조에 따라 구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구조금 지급 신청서에 신청인의 인적사항, 내부고발 내용, 내부고발로 인한 피해 또는 지출비용, 영 제8조에 따른 포상금 및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포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수령 여부, 구조금 지급신청 금액 및 신청인이 구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1.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2. 신청인이 구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예금통장 사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제2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그 밖에 구조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 ② 책임관은 구조금 지급 신청서의 접수 순서에 따라 별지 제18호서식의 구조금 지급 신청서

접수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구조금 지급 신청서의 접수방법, 접수증 교부 및 비실명 대리의 방법으로 내부고발을 한 사람의 구조금 지급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구조금 신청인의 대표자 선정, 대리인 선임, 구조금 지급 신청서의 보완 및 신청 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구조대상가액 등) ① 제23조의 구조금 지급항목에 따른 구조대상가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다만, 외국에서 치료를 받은 비용은 국내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치료를 하는 경우 그에 상당한 비용으로 한다.

 가. 진찰료

 나. 일반병실의 입원료 및 환자 식대. 다만, 진료상 필요로 일반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에 입원한 경우나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 처치·투약·수술 등 치료에 필요한 비용

 라. 의지(義肢)·의치·안경·보청기·보철구 그 밖에 치료에 부수하여 필요한 기구 등의 비용

 마. 호송·전원·퇴원 및 통원에 필요한 비용

2. 전직·파견근무, 신변안전조치 등으로 인하여 거주지 등을 옮기는 데 소요된 이사비용(이사화물 포장 및 운반 비용, 이사과정에서 발생한 본인 및 가족의 숙박비,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중개보수 등 직접적·간접적으로 이사에 필요한 비용). 다만, 이사과정에서 발생한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의 숙박비 상한액을 준용한다.

3. 그 밖에 영 제11조에 따른 내부고발자구조심의위원회가 내부고발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물리적 피해를 입었거나 이로 인한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제1항의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불특정 다수인 간의 거래에서 자유롭게 형성되는 시장거래 실례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에 따른다.

제26조(구조금의 산정기준 등) ① 구조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25조의 지급사유별 실제 소요된 비용 중에서 별표 2의 기준을 고려한다.

② 별표 2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제25조제1항제1호의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5조의 요양급여의 산정에 준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③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사비용은 내부고발을 한 후 1년 이내에 거주지 등을 옮기는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내부고발을 한 후 1년이 지나서 신분이 노출되거나 수감되었던 피고발인이 출소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책임관은 구조금을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제25조에 따른 구조대상가액 산정

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조금의 산정기준 적용

3. 영 제8조에 따른 포상금 및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포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지급대상 여부

⑤ 구조금 지급 신청에 대한 검토, 의견청취 등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제7장 내부고발자구조심의위원회

제27조(내부고발자구조심의위원회) 영 제11조에 따른 내부고발자구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포상금 및 구조금 지급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 및 구조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포상금 및 구조금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
4. 긴급 구조금의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포상금 및 구조금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제28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9조(간사) ①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책임관이 간사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 상정되는 의안을 작성하고 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한다.

1. 회의의 일시·장소 및 공개여부
2. 참석위원 및 배석자 명단
3. 상정된 의안 및 심의결과
4. 그 밖에 주요 논의사항

제30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내부고발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1조(서면의결)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하게 할 수 있다.

1. 신속한 포상금 또는 구조금 지급결정이 요구되는 등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3. 안전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제3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위원회의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친족 또는 동거인이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증언·감정·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
-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하는 자가 있는 경우 간사는 그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기피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그 사유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기피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도 통보한다.
- ④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지체 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위원은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공정한 심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30조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33조(이해관계인 등의 출석요구) ① 위원회는 제27조에 따른 심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이나 포상금 및 구조금 지급대상자, 이해관계인, 관련 기관의 공무원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대상자는 위원장이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신청인 등에게 출석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개최일부터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위원 등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장 포상금 및 구조금의 지급절차

제35조(포상금 및 구조금의 지급 결정 기간) ① 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포상금은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 구조금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을 기초로 하여 포상금이나 구조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② 처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제36조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책임관은 그 내용을 별지 제19호서식의 포상금 결정 통지서 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구조금 결정 통지서에 따라 지급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한다.

② 책임관은 제37조에 따른 포상금 또는 구조금의 지급 가능시기를 확인하여 수사처 재무관에게 해당 포상금이나 구조금 지급을 의뢰한다.

- ③ 포상금이나 구조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신청서 등에 기재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 ④ 구조금 수령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구조금을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제37조(포상금 및 구조금의 지급시기) ① 포상금은 영 제8조에 따라 내부고발로 인하여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② 구조금은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지급한다.

제9장 보칙

제38조(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 관련 문서의 편철) 책임관은 내부고발자의 보호 요청 관련 문서를 접수하거나 작성한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의 조사기록 표지와 별지 제22호서식의 조사기록 목록을 작성하여 관련 문서를 편철·관리한다.

제39조(보호상담 등) ① 책임관은 내부고발자가 내부고발로 인한 비밀보호, 신변안전조치, 의견제시, 포상금 또는 구조금 등에 관하여 방문, 우편, 전화, 전자문서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조치사항 등을 확인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을 하는 때에는 상담요청자의 신분이나 상담내용의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해야 한다.

제40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 내부고발자 보호 및 포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업무와 관련된 수사처의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정한 업무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직근상급자에게 알리고 해당 업무를 회피하여야 한다.

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친족 또는 동거인이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② 제1항의 수사처 직원은 지연이나 학연 등으로 공정한 업무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근상급자의 허가를 얻어 해당 업무를 회피할 수 있다.

제41조(포상금 및 구조금의 지급예산) ① 포상금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다음연도 예산에서 지급할 수 있다.

- ② 구조금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결정이 있는 당해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한다.

제42조(내부고발 관련 협조자의 보호) 영 제12조에 따른 내부고발 관련 협조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업무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2021-1호, 2021. 11. 24.>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 관련 조서·신원관리카드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시행 2021. 11. 2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고시 제2021-2호, 2021. 11. 24. 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사건관리담당관), 02-6320-0264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내부고발자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는 서류 작성의 요건·방법·절차 및 신원관리카드의 작성·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부고발자”란 고위공직자범죄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에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는 등 수사의 단서를 제공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저지른 사람이 속하거나 속하였던 기관·법인·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
 - 나.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저지른 사람이 속하거나 속하였던 기관·법인·단체 등과 협약·계약 등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
 - 다.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저지른 사람이 속하거나 속하였던 기관·법인·단체 등의 지도 또는 관리·감독을 받는 사람으로서 내부고발로 인하여 해당 기관·법인·단체 등으로부터 불이익한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사람
 - 라. 그 밖에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저지른 사람의 기관·법인·단체 등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고위공직자범죄등 신고로 인하여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사람 등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내부고발자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자
2. “인적사항”이란 성명·연령·주소·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3. “가명조서등”이란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사처검사가 내부고발자의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기재를 생략하고 작성한 조서나 그 밖의 서류를 말한다.
4. “가명진술서등”이란 영 제3조제5항에 따라 내부고발자가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기재를 생략하고 작성한 진술서나 그 밖의 서류 등을 말한다.
5. “비실명 내부고발”이란 영 제2조제2항에 따라 내부고발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로 하여금 내부고발을 대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내부고발 신고 접수) ① 고위공직자범죄등을 내부고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내부고발 신고서와 함께 고위공직자범죄등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사건관리담당관 또는 처장이 지정하는 사건관리담당관실 소속 공무원(이하 “사건관리담당관 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사건관리담당관 등을 제외한 수사처 직원(파견자 및 일용직을 포함한다)은 내부고발 신고를 직접 접수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부고발자가 내부고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口述)로 사건관리담당관 등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내부고발자가 비실명 내부고발을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내부고발 신고서 중 내부고발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은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

④ 사건관리담당관 등은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접수 순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내부고발 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내부고발자에게 교부한 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제13조에 따라 수사처검사에게 인계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인계받은 수사처검사는 내부고발 내용이 고위공직자범죄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부고발 신고가 아닌 일반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즉시 사건관리담당관 등 및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내부고발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내부고발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내부고발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 내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내부고발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내부고발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제4조(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작성) 수사처검사는 신고자에게 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다.

제5조(가명조서등의 작성) ① 수사처검사가 가명조서등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조사 전에 내부고발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게 가명조서등의 취지를 설명하고 그 작성을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한다.

② 내부고발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 수사처검사에게 가명조서등으로 작성해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 수사처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명조서등을 작성해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수사처검사가 가명조서등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가명조서등 부작성사유 확인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④ 수사처검사가 가명조서등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진술조서에 가명조서등을 작성하는 취지를 기재해야 한다.

⑤ 가명조서등을 작성할 경우 내부고발자 등으로 하여금 서명은 가명으로, 간인 및 날인은 무인으로 하게 하며, 이 경우 가명으로 된 서명은 본명의 서명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6조(가명진술서등 작성) ① 내부고발자는 수사처검사의 승인을 받아 가명진술서등을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가명진술서등을 작성하는 경우 수사처검사는 별지 제7호서식의 가명진술서등 승인확인서를 작성하여 그 가명진술서등의 끝부분에 편철한다.

③ 가명진술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7조(신원관리카드의 작성) 수사처검사가 가명조서등을 작성하거나 가명진술서등의 작성을 승인한 경우에는 이에 기재하지 아니한 인적사항 등을 별지 제8호서식의 내부고발자 등 신원관리카드(이하 “신원관리카드”라 한다)에 등재해야 한다.

제8조(신원관리카드 관리자 지정 등) 쳐장은 신원관리카드 등 서류를 관리하기 위하여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가명조서등 또는 가명진술서등의 작성을 승인한 수사처검사를 신원관리카드 관리자로 지정한다. 다만, 내부고발자의 비밀보호 등을 위하여 사건관리담당관 등으로 하여금 신원관리카드 관리자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인계) 수사처검사가 사건을 이첩하는 경우에는 신원관리카드를 밀봉하여 사건기록과 함께 송부하고, 사건이첩서 비고란에 “신원관리카드 있음”을 명기해야 한다.

제10조(신원관리카드 작성 사건 공소제기 시 유의사항) ① 수사처검사는 가명조서등 또는 가명진술서등을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판카드의 표지 상단에 “신원관리카드 작성 사건임”이라는 고무인을 날인하고, 공판카드 증거관계란 및 증거목록의 비고란에 가명조서등 또는 가명진술서등의 작성사실을 간략히 기재해야 한다.

② 수사처검사는 제1항의 경우에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서류(진단서, 감정서 등)를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 그 인적사항을 가리고 사본한 후 이를 증거로 제출하고, 원본은 수사기록에 편철한다. 이 경우 공판카드 증거관계란 및 증거목록의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제11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①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신원관리카드의 열람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의 내부고발자 등 신원관리카드 열람허가신청서에 따른다.

② 신원관리카드 관리자가 제1항의 열람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수사 또는 공소담당 수사처검사의 의견을 청취한 후 내부고발자가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열람을 허가하여서는 안 된다.

③ 신원관리카드 관리자는 제2항의 열람허가 여부를 별지 제10호서식의 내부고발자 등 신원관리카드 열람허가신청 결과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④ 신원관리카드의 열람은 수사처 내에서 신원관리카드 관리자의 면전에서 해야 하고, 수사 또는 공소담당 수사처검사가 신원관리카드를 열람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열람 주체 및 일시를 신원관리카드 관리자에게 즉시 통지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열람이 있는 경우 신원관리카드 관리자는 열람 주체 및 일시를 별지 제11호서식의 내부고발자 등 신원관리카드대장에 기재한다.

제12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불허에 대한 이의절차) ①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의 내부고발자 등 신원관리카드 열람신청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신원관리카드 관리자는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열람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열람허가 여부의 통지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내부고발자 등 신원

관리카드 열람불허 이의신청 결과통지서에 따른다.

제13조(신원관리카드 등의 승계) 인사이동 등으로 신원관리카드 관리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내부고발자 등 신원관리카드 인수대장에 인수일시, 인수자 성명, 인수 대상 목록 등을 기재한다.

제14조(재판과정에서 증인소환장을 받은 수사처검사의 의무) ① 재판장 또는 판사가 가명조서등 인적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내부고발자등을 증인으로 소환하기 위해 증인소환장을 수사처검사에게 보낼 경우, 소환장을 받은 수사처검사는 신원관리카드 관리자에게 신원관리카드 열람을 요청하여 그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증인에게 출석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수사처검사는 제1항에 따라 증인이 출석할 경우, 증인에게 법원에 피고인이나 방청인을 퇴정시키거나 공개법정 외의 장소에서 증인신문을 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15조(증인신문 절차 등) ① 수사처검사는 제14조에 따라 출석한 증인의 경우 공판조서에도 해당 증인의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할 것을 재판장 또는 판사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수사처검사는 제14조에 따라 증인이 출석한 경우 신원관리카드 관리자로부터 신원관리카드를 대출받아 공판정에서 재판장 또는 판사에게 이를 제시하여 신원을 확인하게 하고, 그 후에는 지체 없이 신원관리카드 관리자에게 신원관리카드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수사처검사는 증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증인이 요청하는 경우 법원에 피고인이나 방청인을 퇴정시키거나 공개법정 외의 장소에서 증인신문을 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수사처검사는 이외에도 출석한 증인의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6조(신원관리카드의 보존 및 폐기) ① 신원관리카드 관리자는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보관함에 신원관리카드를 보관해야 한다.
② 신원관리카드 등 서류의 보존기간은 원 사건기록의 보존기간으로 한다. 다만, 원 사건기록의 보존기간보다 신변안전조치의 기간 및 포상금 지급신청 기간이 장기인 경우에는 그 종료일까지 보존한다.
③ 신원관리카드 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서류의 보존기간이 만료된 경우 처장의 허가를 받아 폐기한다. 이 경우 처장은 관련 사건 수사 및 재판 계류 여부, 열람신청 등 각종 처리의 완결 여부를 확인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18조(내부고발 관련 협조자에 대한 준용) 내부고발에 대한 수사·소송 등에서 고위공직자범죄등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에 필요한 진술을 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 대한 가명조서등, 가명진술서등 및 신원관리카드의 작성·관리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2021-2호, 2021. 11. 24.>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본 안내서에 인용된 내용 등은 고위공직자범죄등 관련 법규와 부패방지 및 공익신고 관련 법규 및 매뉴얼, 기타 참고자료 등을 참고하여 작성한 것임
- ※ 향후 법규 개정과 공직 및 사회여건 변화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임

고위공직자범죄

내부 고발 안내서

발행일 2022년 7월

발행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진욱

발행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주소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종합청사

홈페이지 www.cio.go.kr

디자인·인쇄  02-6952-0551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